

I. 영 국

1. 코넥션즈의 개요
2. 버밍햄 · 솔리홀 코넥션즈센터 조직도
3. PA의 역할
4. 민간부문과의 협약
5. 블랙컨츄리 사례

I. 영국

1. 코넥션즈의 개요¹⁾

1) 코넥션즈란

(1) 코넥션즈의 개념

영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넥션즈 사업은 코넥션즈 서비스, 코넥션즈 카드, 코넥션즈 파트너십, 개인상담자(Personal Advisers), 코넥션즈 디렉터의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코넥션즈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보와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도 제공할 수 있다.

(2) 코넥션즈가 하는 일

- 코넥션즈는 진로, 교육, 훈련, 고용, 건강, 주거, 법률, 자원봉사 그리고 청소년들이 알기를 원하는 관심거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 코넥션즈는 직업훈련과 전일제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들을 격려한다.
- 코넥션즈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코넥션즈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지지 및 제공한다.
- 코넥션즈는 진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1) <http://www.connexions-direct.com>(2005.06.09)

(3) 코넥션즈가 일하는 방법

모든 청소년들은 PA(Personal Advisers)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ers)들은 학교, 대학교, 코넥션즈 사무국, 지역사회 등의 토대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조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네트워크에 연결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해 준다.

2) 코넥션즈의 5대 사업

(1) 코넥션즈 서비스

코넥션즈는 영국에 살고 있는 13-19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청소년들의 욕구가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의 어려움이나 무능력에 처해있는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지지를 제공한다. 코넥션즈는 현대적인 대중 서비스이며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코넥션즈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지역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코넥션즈 카드

코넥션즈 카드는 영국내에 있는 16-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넥션즈 카드는 학습, 직업기초훈련, 자원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모아진 포인트는 할인을 받거나 비매품을 교환하는데 사용 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코넥션즈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매장에

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매장 유리창에 코넥션즈 카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 특별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3) 코넥션즈 파트너십

코넥션즈는 47개의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으므로 코넥션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조언자(PA)

코넥션즈의 PA들은 코넥션즈 파트너십 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PA들은 학교, 대학교, 일, 청소년 개인 또는 가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일들에 관여하여 정보와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PA들은 필요하다면 특별한 지지가 필요한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의뢰할 수도 있다.

(5) 코넥션즈 디렉터

코넥션즈 디렉터는 청소년에게 질 높은 정보와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는 코넥션즈의 한 부분으로써, 비밀스런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의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넥션즈 디렉터 조언자들은 일주일에 7일을 서비스하며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8am to 2am)까지 상담을 하는데, 이들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 주되 절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코넥션즈 디렉터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화가 걸려 오면 조언자들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된다. 청소년들은 전화, 조언자 online, email, text 등을 통해 코넥션즈 디렉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디렉터 조언자들은 청소년에게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절대로 물어서는 않으며, 청소년 개인 또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디렉터 조언자는 청소년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특별한 조직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청소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코넥션즈의 10가지 세부사업 분류

코넥션즈의 세부사업으로는 진로, 학습, 건강, 주거, 자유시간, 노동, 돈, 관계, 권리, 여행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진로

교육기간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모든 일들은 청소년이 즉시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된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영국의 코넥션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9살이 되면 10살과 11살이 되었을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도와주고, 11살이 되면 12살부터 16살까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16살이 되면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정보와 교육과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6살 이후의 진로에는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를 도와주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정보와 도움도 주고 있다.

6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2) 학습

청소년은 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만일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다양한 결정을 하는 것들에 직면해 있다. 학습을 위한 코넥션즈의 사업을 살펴보면, 학습에 필요한 자원들을 소개하고,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와 배울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격요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기술과 학습을 위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욕구에 맞는 학습과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학습에 있어서 생겨지는 학년차를 극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가정교사와 Prince's Trust, 그리고 에든버러의 공작(Duke of Edinburgh) 등이 있다. 이 중에서 Prince's Trust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rince's Trust란,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돕는 영국의 자선단체로써 훈련, 멘토링, 재정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4 - 30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력과 삶의 변화(전환)를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이 초점을 두는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부적응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Prince's Trust는 0800 842 842라는 무료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있는 지역의 Prince's Trust 협회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며, 지역에 있는 Prince's Trust 협회 직원은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곳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와 조언을 말해줄 것이다.

(3) 건강

청소년들 모두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건강에 대한 코넥션즈의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한 삶, 건강 이슈, NHS와 청소년, 건강한 성, 정신건강, 상담, 중독과 의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 건강한 성과, 상담, 그리고 중독과 의존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강한 성 : 임신

청소년들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음을 늘 지각해야 한다. 임신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위기일 수 있으며, 100%의 피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NHS Direct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www.advicenow.org.uk 웹사이트에서는 젊은 아빠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조언도 주고 있다.

만일 임신을 했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② 상담 : 자살충동 및 기타 상담

모든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조금씩 자살을 느끼지만 자살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느끼는 것들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나 자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인 또

는 누군가가 자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 코넥션즈 센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와 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다. 삶의 문제, 특별히 해결해야 할 것, 결정, 공포, 스트레스, 분노, 우울, 낮은 자존감, 중독, 학대, 분리, 이혼, 갈등, 관계, 정신적 ■ 감정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등에 대해 상담자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줄 것이다. 영국 각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나 조연자들은 활용 가능한 상담훈련을 받은 자들이며, 다음의 기관들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다.

- Childline : www.childline.org.uk/Suicide.asp
- Young Minds : www.youngminds.org.uk/youngpeople/index.php
- Samaritans : www.samaritans.org/
- CALM(Campaign Against Living Miserably) : www.thecalmzone.net

③ 중독 및 의존 : 알콜, 약물, 담배

지나친 음주는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행동상의 변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알콜에 의존하게 되어 점점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될 수 있다. 영국은 법적으로 18세 이상이 되어야 술을 살 수 있다. 건강전문가들은 알콜수치가 남자의 경우 하루 3-4 unit를, 여자의 경우 하루 2-3 unit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만일 청소년 자신이나 또는 가까운 누군가가 너무 많은 음주를 했거나 또는 알콜중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알콜이나 음주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약물은 불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한다. 약간의 약물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마약흡입이나 주사투여 등을 하게 되고, 대마초나 본드 등을 피우게 되기도 한다. 약물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친구들의 압력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약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관련이 되게 되는데 만일 약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GP에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GP는 약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지와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담배 또한 끊을 수 있는 방법과 지지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은 영국내에 코넥션즈와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중독 및 의존과 관련된 기관들이다.

- www.talktofrank.com/azofdrugs/A/Alcohol.aspx
- www.alcoholics-anonymous.org.uk/ef9doc1.html.
- www.nhsdirect.com/en.asp?TopicID=14
- www.turning-point.co.uk
- www.bbc.co.uk/radio1/onelife/health/index.shtml?drugs#topics
- www.givingupsmoking.co.uk/Young_people__smoking/
- www.quit.org.uk/teenager.htm

④ 주거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거나 집이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를 위한 코넥션즈 사업에는 집 옮기기, 집을 나와서 공부하기, 주거와 무능력한 청소년, 집없는 청소년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집없는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거나 때로는 가정으로부터 쫓겨남으로써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홈리스가 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또는 위기주거시설이나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된다. 이럴때 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항상 도움

10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코넥션즈는 청소년들이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또는 집을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고, 집을 임대하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상의 문제들에 대한 도움도 제공한다.

만일 주거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들은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Housemate : <http://www.housemate.org.uk/>
- Shelternet : <http://www.shelternet.org.uk/>
- ChildLine : <http://www.childline.org.uk/Suicide.asp>
- Samaritans : <http://www.samaritans.org/>
- <http://www.getconnected.org.uk/>
- <http://www.crisis.org.uk/>
- <http://www.centrepont.org.uk/>
- <http://www.safeinthecity.org.uk/>
- <http://www.foyer.net/>
- <http://www.citizensadvice.org.ukw/>
- www.bbc.co.uk/radio1/oneline/housing/buying/buy_intro.shtml
- www.fish4.co.uk
- www.accommodationforstudents.com
- www.student-accom.com
- www.StudentPad.co.uk
- www.housingnet.co.uk

⑤ 여가시간

청소년들은 성장해가면서 공부나 일 또는 두 가지 모두 때문에 점점 더 여유로운 여가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코넥션즈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스포츠, 관심분야의 레저, 사회성과 조직성을 배우고 즐기도록 하며, 자발적이고도 개인적인 발전을 꾀하며, 만일 자신이 무능력하다면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실시한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동전화(휴대폰)나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스포츠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조직을 통해서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와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들은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www.bbc.co.uk/motoring/ontheroad/.
- www.aaroadwatch.ie/tips/.
- www.millysfund.org.uk/
- www.met.police.uk/campaigns/mobile_phones2.htm.
- www.animalark.co.uk/.
- www.rspca.org.uk/servlet/Satellite?
- www.allaboutpets.org.uk/aboutus.html.
- www.scouts.org.uk/wps/portal.

- www.girlguiding.org.uk/Default.asp.
- www.mvonline.gov.uk
- www.vso.org.uk/volunteering/youth/wy_eligibility.asp

⑥ 노동

노동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청소년은 올바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데, 일거리를 찾는 곳에는 많은 도움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코넥션즈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을 얻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의 종류와 자원, 직업을 얻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임시적 또는 계절별로 하는 일,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 노동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넥션즈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격과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⑦ 돈

세상에 널린것이 돈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돈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코넥션즈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자기용돈을 관리하는 법, 학생과 돈의 관계, 자신이 무능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돈을 관리하고 은행거래를 하며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청소년의 최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코넥션즈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십대에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국고보조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부하는 기간 동안 관할지역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준다.

만일 이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들은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www.dfes.gov.uk/financialhelp/index_flash.htm
- www.support4learning.org.uk/money
- www.youthinformation.com/infomenu.asp?shdID=39
- www.fsa.gov.uk/consumer/
- www.lowpay.gov.uk/
- www.childcarelink.gov.uk/index.asp
- www.skill.org.uk
- www.after16.org.uk/pages/money.html

⑧ 관계

청소년의 삶에서 관계란 다양한 형태로 맺어지게 되는데 부모, 다른 가족구성원, 친구, 학교친구, 직장동료나 파트너 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코넥션즈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이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방법과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파트너와의 생활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청소년들이 맺어야 할 관계 기술들을 가르친다.

사회생활이란 청소년들이 적절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종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물리적·정서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며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 사별의 경험이 있을 경우 이들의 정서적 충격과 심리적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생활이란 훈육을 빙자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간병이 필요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무능력과 같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이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들은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www.the-childrens-society.org.uk/youngcarers/
- www.samaritans.org.uk.
- www.carersonline.org.uk/
- www.there4me.com/home/index.asp
- www.rd4u.org.uk/phone at 0808 808 1677.

⑨ 권리

청소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지혜로운 시민이 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넥션즈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이 passport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기회평등, 범죄와 법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교육시키고 알려주

는 일을 한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에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법적인 부분의 권리에 대한 도움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도움을 준다.

교육, 직업, 훈련, 주거, 물건이나 서비스, 시설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죄를 범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며 17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부모나 대리인, 양육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정보들을 준다.

만일 이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 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들은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www.after16.org.uk/pages/law1.html
- www.disability.gov.uk/
- www.bcodp.org.uk/
- www.dialuk.info/
- www.youreable.com/
- www.radar.org.uk/
- www.crae.org.uk/
- www.citizensadvice.org.uk/
- www.clsdirect.org.uk/
- www.cre.gov.uk/
- www.eoc.org.uk/
- www.rizer.co.uk/

⑩ 여행

청소년 시기 동안에 학교나 대학교에서 여행을 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다른 지역을 가보는 것 등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청소년이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여행한다는 것은 청소년 자신에게 자유와 독립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코넥션즈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의 여행을 도와주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여행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 여행 시간표 짜는 것, 만일 청소년이 여행을 하는 일에 무능력하다면 이를 도와주는 일 등을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코넥션즈는 청소년에게 운전면허증이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차를 사거나 소유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도 주고 있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지역이나 여행전에 점검해야 할 건강, 음식, 여행지역의 문화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여행지에서 이용할 교통시설이나 교통편 또는 이동 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세움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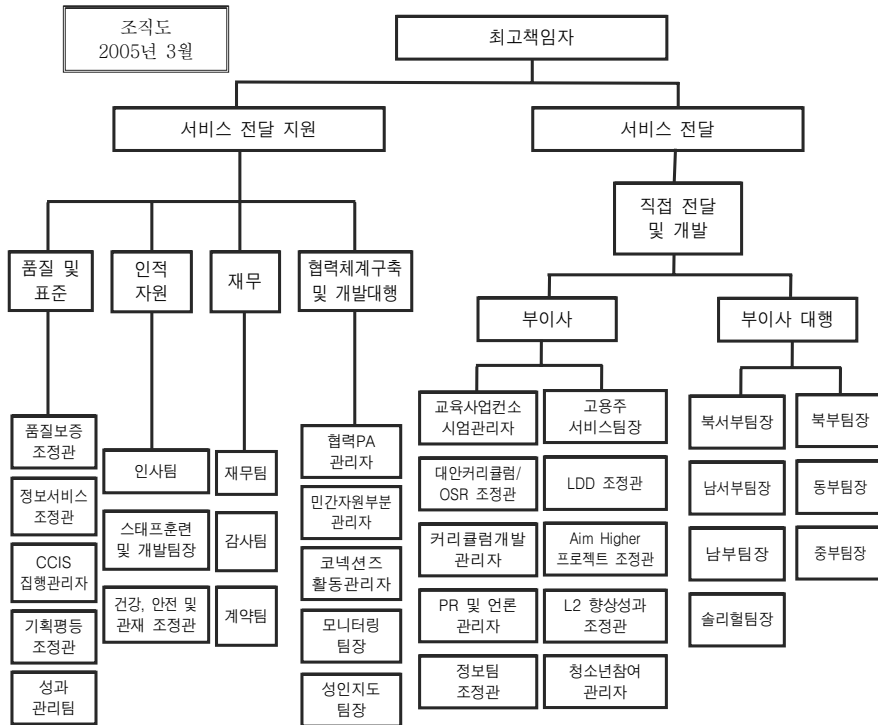
만일 이와 관련된 도움이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의 PA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전화번호부를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코넥션즈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사이트들은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 www.dvla.gov.uk/
- www.fco.gov.uk/travel/
- www.dh.gov.uk/PolicyAndGuidance/HealthAdviceForTravellers/
- www.suzylamplugh.org/worldwise/

- www.nhsdirect.nhs.uk/en.asp
- www.upmystreet.com
- www.thetrainline.com
- www.pti.org.uk.

2. 버밍햄 · 솔리홀 코넥션즈센터 조직도2)

핵심가치 실행 제1단계 커뮤니케이션 계획



<그림 1> 버밍햄 · 솔리홀 코넥션즈센터 조직도

2) Organisation Chart(2005). Communications Plan for Phase 1 of Core Values Implementation.

3. PA의 역할

1)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를 위한 인증서³⁾

(1) Section 1 : 코넥션즈 소개

이 책자의 목적은 코넥션즈 서비스나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의 역할을 위한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 인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있다. 또한 코넥션즈 Direct와 코넥션즈 Car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서를 소개하는데 있다.

이 책자는 다음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 1 : 들어가는 말

- 이 책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과정 2 : 코넥션즈와 청소년

- 코넥션즈 전략 소개와 8가지 코넥션즈 원칙의 개요

과정 3 :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의 역할

-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의 역할과 기능 요약, 몇 가지 기법 수록,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과정 4 : 코넥션즈 파트너십과 채용

- 코넥션즈 파트너십의 채용이나 구성에 대한 개요

3) Connexions(2001).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 Introduction to Connexions.

과정 5 : 코넥션즈 -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설명과 코넥션즈 Direct와 코넥션즈 Card에 대한 설명

과정 6 : 인증서

-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 인증을 위한 간략한 소개

(2) Section 2 : 코넥션즈와 청소년

코넥션즈 전략의 목적은 성장 과도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안내와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점진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코넥션즈 전략은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다.

- 과거의 경우 청소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봉사로 인한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봉사없이 표면적으로 얻게 되는 청소년들의 ‘주인의식’은 결과적으로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그것은 청소년이 원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전달의 실패, 분산, 서비스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험은 자원이 부족할 때 더 높아진다. 서비스 책임자들은 주요 목표나 우선시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소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넥션즈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일관된 지원과 조정을 꾸준히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코넥션즈 서비스의 목적은 서비스의 분열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있다.

청소년은 지금 코넥션즈 서비스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코넥션즈 전략의 목적

- 코넥션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일관된 지원과 조정을 약속한다.
- 서비스의 분산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 성취를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두 가지 현행과제를 정책의 최종목표가 되도록 한다.

서비스의 주된 클라이언트는 영국에 있는 13-19세의 모든 청소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될 청소년은 성인으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위험이 큰 청소년이 될 것이다.

② 코넥션즈 전략의 구상

-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의 전문적인 책무성을 소개한다.
- 코넥션즈 Service National Unit(CSNU) 를 통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제공(추진)한다.
- 코넥션즈 파트너쉽을 통해서 지역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한다.

③ 코넥션즈의 8가지 주요 원칙 :

코넥션즈 전략은 8가지 주요 원칙의 토대 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를 파악한다.

- 야망을 키워라 - 모든 개인의 포부를 높여라
- 개인의 욕구를 발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라
-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야기해라(설명해라) -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 포함시켜라 - 청소년을 교육, 훈련, 예방의 주류에 놓고 그들을 지역 사회의 변두리에서 이동시켜라
- 파트너십을 가져라 - 홀로 일을 하는 기관보다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 하는 기관이 더 성공한다.
- 지역사회에 개입해서 주민을 부흥(일신)시켜라 - 지역사회 멘토의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s가 지역복지, 건강, 예술, 스포츠, 네트워크 조성 접근의 중개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일신시켜라
- 기회를 확대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해라 - 모든 청소년의 참여와 성취의 수준을 높이고, 유용한 영향을 미치며, 적절하고 질적인 예방과 기회의 인식을 고취하라
- 실천에 기초한 증거 - 새로운 개입은 면밀한 조사와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코넥션즈의 주요 원칙들은 코넥션즈의 생각과 실천을 알려준다. 이것들은 인증 프로그램의 구성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3) Section 3 : 코넥션즈 파트너십과 재원

① 파트너십

코넥션즈 파트너십은 지역내에서 코넥션즈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세워

졌었다. 이러한 파트너쉽은 광범위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직업회사
- 약물추진팀
- 고용서비스
- 건강청
- 지역교육청
- 경찰과 청소년 범죄팀
- 학교와 대학
- 사회적 서비스
- 자발적(임의적)이고 지역적인 구역
- 청소년 서비스

파트너쉽은 지역내에서 코넥션즈 서비스의 채용과 계획을 전략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한다. 파트너쉽은 Local Management Committees(LMC)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은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조직하고 전달하도록 한다. 파트너쉽의 조직 구조의 한 부분인 LMCs는 지역청의 경계에 주요 토대를 두고 있다.

청소년은 Local Management Committees(LMC)의 회원인 personal advisers의 채용으로 코넥션즈의 발전에 기여하며 직접적인 개입도 하고 있다.

② 채용

다음은 코넥션즈 서비스의 자원이 되는 것들이다.

- 청소년의 지원과 안내를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자원들

- 지나간 2000년도를 점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교육과 고용 분야의 안과 밖)들
- 유럽 사회재정자원을 국가나 지역협회가 관리

코넥션즈 서비스 재정 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코넥션즈 파트너십의 실천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의 근거에 의해 자원을 얻게 될 것이다.

【 코넥션즈 Service National Unit로 부터의 국가적 자원 】

이 자원에는 최근의 직업서비스와 새로운 예산집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넥션즈 파트너십은 이러한 자원을 각 지역에 즉시 전달하는 노선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2000년도를 보내면서 코넥션즈 서비스 전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두었던 재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다. CSNU로 부터의 국가 재정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재정이 £320m였고, 2002-2003년에는 £420m으로 올랐다.

【 지역 파트너로부터의 자원(현물 또는 현금) 】

지역 파트너들은 최근에 그들이 13-19세의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자기 개발의 기회, 지원, 안내를 청소년이 확산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코넥션즈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서비스와 교육복지 서비스를 하는 지역청의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Young Persons Advisers의 자원은 Children Act 2000의 실행을 지원하게 될 예산에서 지원이 되며 이것은 청소년 범죄팀의 부서와도 관련이 된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자원들은 코넥션즈 파트너십에 반드시 의뢰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도 청소년에게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 수준에 맞게 조정이 될 것이다.

【 유럽지역의 사회적 자원과 다른 외부적 자원 】

유럽의 사회적 자원이 지역 기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코넥션즈 파트너쉽을 통해서만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파트너쉽은 발전기금이나 복권과 같은 다른 곳으로부터 재원을 얻게 될 것이다.

(4) Section 4 :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역할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는 8가지 주요 코넥션즈 원칙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새로운 전문가이다.

- 교육
- 건강
- 사회복지
- 교정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목적은 상처입기 쉬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을 제공하는데 있다. 코넥션즈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주요한 차이는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를 통해서 일관된 지원과 조정을 제공하고, 지금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를 접하는 것은 모든 코넥션즈 서비스의 주요 책임(의무)이며 핵심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틀이 중요한 고리가 된다.

①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역할

청소년과 함께 할 때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역할 :

- 청소년과 함께 계약하고 청소년의 바램과 욕구 찾아내기
-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청소년에게 권한 부여하기
-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 교육체계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내에서 청소년의 이익 옹호하기
-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지원하기
- 변화를 확신하면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
- 청소년을 독립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하기
- 청소년이 그들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자원 중개하기
-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 :

직접적인 것을 통해 :

- 청소년과 직접 계약하기
- 욕구 확인, 문제의 우선순위 정하기, 변화를 위한 활동계획세우기에 대해 청소년과 함께 하기
- 개인적으로 의뢰된 것에 대응하기
- 긍정적인 변화를 확신하면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

간접적인 것에 의해 :

- 변화를 위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과 연계하여 일하기
- 공공서비스 기관들, 자발적인 자원들,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찾아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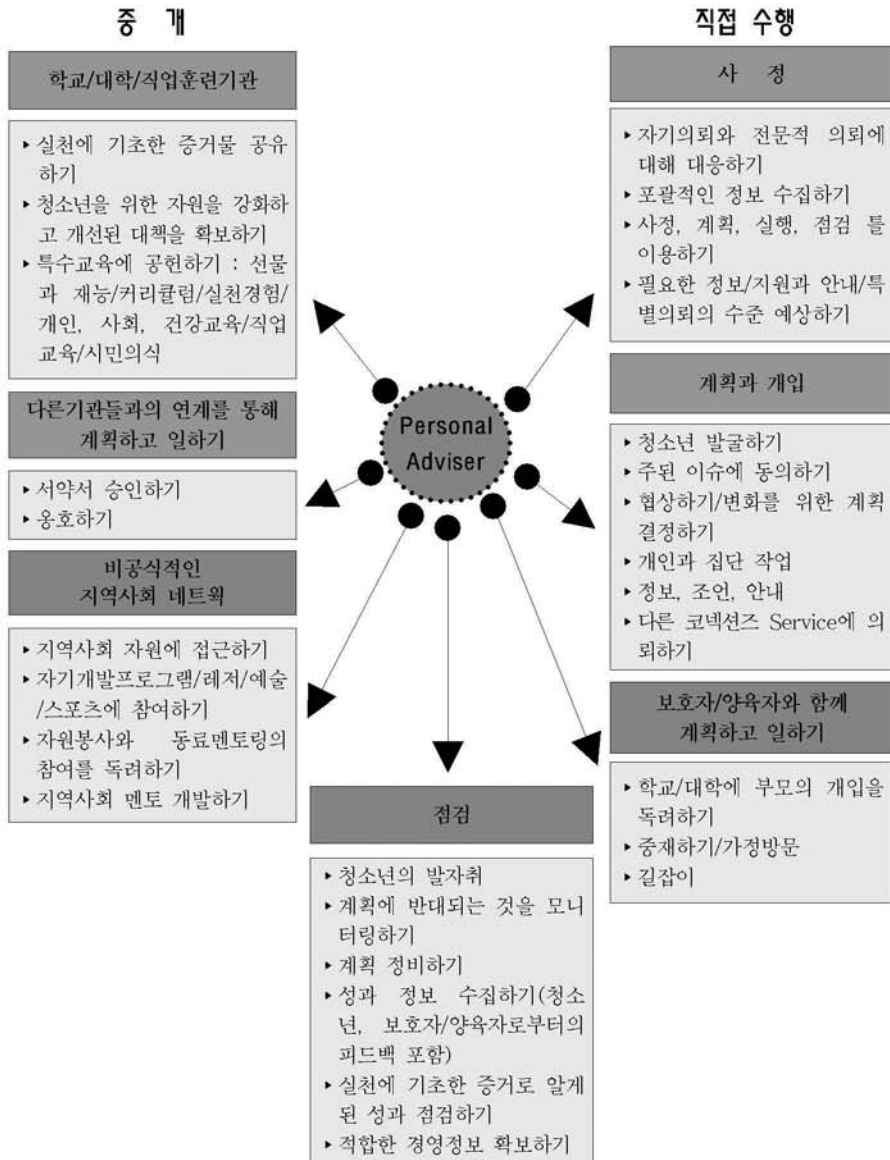
- 서비스의 차이, 대책의 부재, 필요한 자원의 부재를 확인하거나 또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확보하기
- 청소년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인 실천으로의 증거를 협상의 토대로 활용하기

변화를 확신하면서 계획하고 일하는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성장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역할은 코넥션즈 전략의 성공을 위해 중추적이고도 독특한 것이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역할은 광범위한 상담, 깊이 있는 정보수집, competence mapping exercises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었다.

②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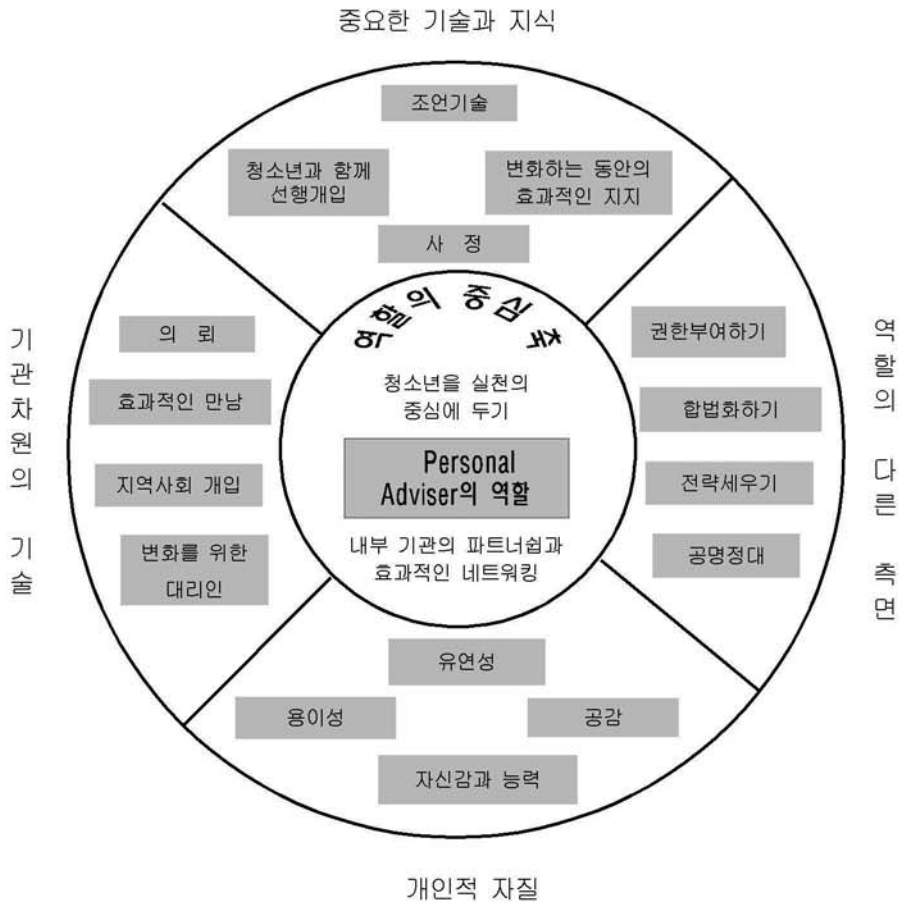
다음의 모형은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주요 요소이다 :



<그림 2>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주요 요소

③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기술

다음의 도형은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에게 필요한 기술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3>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기술

④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직업 특성

아래의 내용은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에게 있을 수 있는 직업 특성을 보여준다.

가능한(있을 수 있는)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직업 특성

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목적

청소년들이 배움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확신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훈련이나 고용기회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확실히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다.

책무성 :

- ① 훈련과 고용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범주내에서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사정하고, 의뢰를 한다.
- ② 청소년과 함께 계약하고,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배움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적절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자기개발기회를 확대한다.
- ③ 훈련과 고용 기회의 교육 범위에서 청소년과 계약하기 위해 보호자, 양육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한다.
- ④ 배움의 장벽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자기개발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조직망에 접근한다.
- ⑤ 법적 기관과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확립한다. 그래서 청소년이 배움의 장벽을 극복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적합한 접근을 하도록 상호조정 한다.
- ⑥ 배움의 장벽을 극복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범위에서 고용, 훈련시설, 지지교육을 활용한다.

- ㉔ 계획의 성취를 확신하기 위해 청소년 개개인과 함께 하는 일을 검토한다.
- ㉕ 전문적인 실천의 질적인 발전을 확신한다.

(5) Section 5 : 코넥션즈 - 광범위한 서비스

코넥션즈는 모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단순한 정보에만 접근할 것이다.

청소년 개인과 함께 일을 할 때 Personal Adviser 수준에서의 개입은 개인적인 욕구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과 같다. 코넥션즈 서비스는 광범위하다. 그래서 13-19세 사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코넥션즈 서비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코넥션즈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개발기회에 접근하고, 지평을 넓히고,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서비스, 스포츠, 예술, 재창조적 활동과 같은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 코넥션즈 서비스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코넥션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듣게 될 것이다.
- 코넥션즈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 코넥션즈 서비스에 스스로 접근하는 권리를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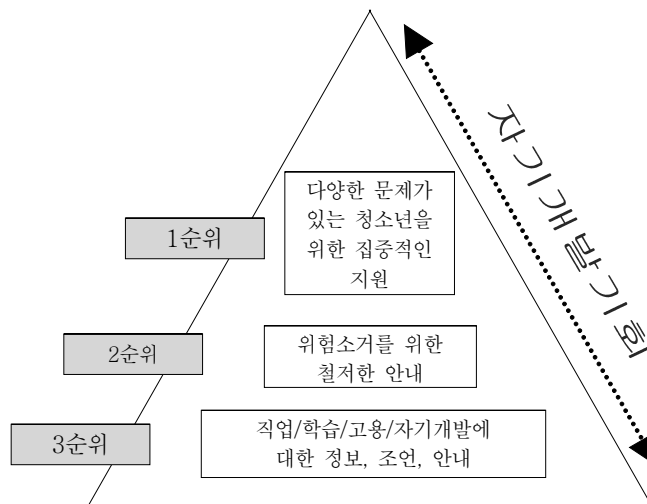
코넥션즈 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선택하지 않는 몇몇 청소년들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정보가 필요한데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

-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을 것이다.

- 청소년과 함께 만날 것이다.
- 청소년의 욕구 또는 어려움을 사정할 것이다.
- 효과적인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도록 청소년을 지원할 것이다.

소수의 청소년은 좀 더 복잡한 욕구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이때 Personal Adviser의 일은 전문적인 사정과 지원을 약속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변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Personal Adviser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청소년이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 다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코넥션즈 위기서비스 모델은 적절한 서비스 대응이 어려운 청소년의 세가지 범주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4>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개입 수준

<그림 4>는 코넥션즈가 광범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Personal Adviser 개입의 세 가지 단계는 서비스를 계획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청소년 시기의 경험과 성인으로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 시기의 도전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유형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청소년을 지원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코넥션즈 Service National Unit(CSNU)는 콜센터와 on-line을 이용하는 코넥션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코넥션즈 Direct’ 서비스로 불리워졌다.

① 코넥션즈 Direct

코넥션즈 Direct의 개념은 “모든 청소년의 참여와 효과적인 학습 그리고 성인으로의 변화 과정을 위해 정보, 조언, 안내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넥션즈 Direct의 콜센터와 웹 기술은 코넥션즈 서비스에서 정보, 조언, 안내를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콜센터 직원은 지역 파트너쉽으로부터 배치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2002년 9월 말에 7가지 제안이 테스트 되었다.

- ① 24시간 작업하기 : 일주일 내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 ② 콜센터 조직 : 서비스를 위한 가장 적합한 구조와 조직. 예를 들어, 국가센터, 지방센터, 지역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한다.
- ③ 전달하는 서비스의 정도 :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코넥션즈 Direct 서비스
- ④ 직원 관리 : 이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 ⑤ 의뢰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과 시스템 또는 부각

되는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 ⑦ 콜센터 관리 모델 : 어떻게 콜센터 서비스를 관리할 것인가?
- ⑧ 콜 과정과 정보 추적 : 주변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최선의 실천을 하고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코넥션즈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울 것이다. 게다가 코넥션즈 Direct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청소년을 격려하고, 청소년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코넥션즈 카드는 이것을 도와준다.

② 코넥션즈 카드

코넥션즈 카드의 목적은

- 청소년에게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고
- 청소년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 노력하는 청소년에게 보상을 하는데 있다.

코넥션즈 카드는 청소년과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 코넥션즈 카드의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학습에 참여하는 16-19세의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카드의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코넥션즈 카드 웹사이트에 의하면 코넥션즈 카드는 학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 기능의 다양한 이용과 가격인하의 매력
- 여행과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저렴하게 공급
- 참여하는 청소년만이 코넥션즈 카드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잇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은 끈기와 성취에 대한 더 나은 보상이 될 것이다.

- 웹사이트를 통한 구직
- 재정적인 지원을 연결 - 코넥션즈 카드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수당을 제공
- 학습, 조언, 정보에 전체적으로 접근하도록 청소년의 생각을 현실화하기
- 학습과 좋은 기회를 위해 'smart' 패스포드를 제공. 'smart' 패스포드는 2만명의 청소년이 사용할 것이고,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격려하는 더 나은 인센티브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다.

(6) Section 6 : 인증서

과정을 이수한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는 다양한 기술, 능력,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를 위한 인증서의 목적은 Personal Adviser로서의 역할을 위한 실천가로 준비시키는데 있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를 위한 인증서는 청소년 법무부서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DfEE로부터 위임받는다. 그리고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첫째 자격은 건강이다.

몇몇 관계자들이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와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인이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에 감사하다. 많은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의 일부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익한 토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보완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안에서 다른 실천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같다.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를 위한 인증서는 역할에 적합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아래의 5가지 모듈은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주요 요소와 코넥

션즈를 대표하는 내용이다.

- ④ 청소년과 함께 의뢰, 사정, 계약하기
 - ⑤ 청소년, 보호자, 양육자와 함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일하기
 - ⑥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지역사회로부터 최상의 대책을 확보하기
 - ⑦ 실천에 기초한 증거물, 녹취록과 대화
 - ⑧ 환경속의 실천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개선하기
- 그리고 또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는 계속해서 훈련한다.....

2) 버밍엄 및 솔리힐 코넥션즈 서비스 개인 상담가(PA)의 역할 (임무)⁴⁾

(1) 핵심목표

청소년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인 생활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전

‘청소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3) 본 문서의 활용

이러한 책임은 개인 상담가(Personal Advisor, 이하 PA)가 직면할 수 있는 이슈에 근거하고 있다. 본 문서에는 22개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나,

4) Connexions(2005). Birmingham & Solihull. Personal Adviser Role.

이 목록이 이슈의 전부는 아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의문사항이나 특수한 담당(caseload specific)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슈에 관해서는 일선 관리자와 접촉하길 권장한다.

22개의 박스에 도전하기에 앞서, 아래의 핵심요소(Key Elements)을 숙독하기 바란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PA가 되기 위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PA 업무의 토대를 형성하며, 8가지 코넥션즈 원칙, PA 실무강령, 직무기술서, 윤리강령 및 책임성, 다양성의 존중, 성실성, 포괄성(개방성), 혁신, 협력성 및 수혜자 중심 서비스와 같은 조직의 핵심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문서는 조직의 기존 정책 및 절차를 폐기,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PA는 일부 박스에서 조직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참고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PA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모든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은 PA에게 있다.

특정 이슈를 살펴보면, 지침에 대한 설명(guidance notes)이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PA의 핵심적 역할

이 항목의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PA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지적하는데 있다. ‘기본’ (basic) 또는 ‘확장’ (broad)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이 용어들은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PA가 자신의 개인적 한계에 (이러한 한계가 기술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지식과 관련된 것이든)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약물남용 문제에 관한 기본지식’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마약 및 약물 남용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PA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PA가 이용할 수 있는 진단, 인쇄물, 소책자 형태의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PA의 업무 중 약물남용 사례와 접하게 되었

을 경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5) 특수한 담당

이 항목의 목적은 특수한 담당 사례에서 PA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적시하는데 있다. 이는 PA가 적절한 관련 수준의 교육훈련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 담당에 배정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PA가 처리할 의사가 없는 특수한 추가사항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직업과 관련된 다른 경로 및 선택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직업 지도사(Career Guidance) 자격을 취득했는가? 본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심층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PA에게 내부 의뢰를 하는 방법 또는 조정관과 접촉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6) PA 역할 이외 사항

이 항목의 목적은 PA에게, 이들이 취급하는 사례, 업무 장소, 소속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관없이 PA가 취해서는 안될 조치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찾아 줄 책임을 수락하거나 이를 선도"라는 표현은 PA가 스스로에게 특정 학생을 위하여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을 조직할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기관에 법정 책임이 부과된 것이며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 오해 및 수혜자에 대한 열악한 서비스를 야기할 수 있다.

(7) 의뢰 합의의 상대방

이 항목의 목적은 PA가 해당 이슈에 관하여 어디에서 조언 및 지침을

구할 수 있으며 의뢰가 필요할 경우 그 대상 단체 및 기관이 어디인지를 지적하는데 있다.

(8) PA 역할의 핵심요소(상세한 설명은 첨부 A를 참조)

- ① 청소년과 효과적인 업무 협력 관계 구축
- ②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 ③ 기관간 공조 업무 수행 및 복수 분과간 업무 수행
- ④ 사정, 계획, 집행 및 검토 (공통 평가 체계)
- ⑤ 정보 수집 및 교환
- ⑥ 부모,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 ⑦ 평등 및 다양성 제고
- ⑧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기 수준을 평가
- ⑨ 서비스 제공상의 격차에 집중
- ⑩ 양질의 서비스 표준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핵심 3,4, 5단계 및 커리 클 지원	■ 기본정보 제공 및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방향 제시 ■ 그룹워크. 예: 16세 이후 옵션, 기회균등, 18세 이후 옵션 ■ 학교/중등학교 스탠프 및 기타 관련자와 연계. 예: ESW, 연계 PA ■ 적절한 KS4 제공을 찾도록 지원 ■ 청소년의 EMA 평가를 지원 ■ 사후점검 및 추적 (접촉 전략)	■ 옵션 선택에 근거한 그룹워크 ■ 옵션간의 균등활용 ■ 자유수업(drop-in session)을 통한 학생 면담 ■ 직업진로계획/의사결정 수업 ■ 경력관련 학과배치 선택에 대한 지도	■ 특정 과목의 장단점에 대한 세부적 분석의 제시 ■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과배치 및 이슈 ■ 건강 및 안전상의 확인 필요한 일체의 학과배치 및 조직	■ 학년 주임 ■ KS4 조정관 ■ 부서장 ■ ESW ■ BSS ■ Pupil Connect ■ 대안적 서비스 제공 지침
조언 및 지도	■ 적절한 방식으로 내/외부 지원 기관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보유 ■ 청소년과 공동으로 이슈를 검토 ■ 청소년과 공동으로 목표 확인, 청소년을 위하여 모든것을 해주는 것이 아님. ■ 공정한 조언 및 지도 ■ 16세 이후 옵션 및 HE에 대한 폭넓은 이해 ■ 틀에 박힌 선택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	■ 중요한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을 제공 ■ 청소년이 다른 직업진로 및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 ■ 직업 분야에 대한 세부적 지식	■ 청소년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 ■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청소년의 적성/수락가능성에 대한 결정 ■ 욕구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을 파악하는 것 ■ 개인 기술서(personal statement)를 작성하는 것. 예: 진도파일	■ 6학년 주임 ■ 욕구에 따른 일단의 기관 ■ 지도교사(후견인, tutor)
직업/ 과정/ 훈련 지원에 대한 조력	■ 청소년의 CV를 산출 및 지원서작성에 조력 ■ 어디에서 직업을 찾을지에 관한, 그리고 구체적인 취업기회에 관한정보 제공 ■ 인터뷰 준비 ■ 상황에 따른 계획수립 조장 ■ 청소년의 지원과정 지원 ■ 교통편 지원 및 관련 문제 파악. 예: 노선 및 운행시간표 ■ 인터뷰시 청소년 지원/동반 ■ 사후점검 및 추적 (접촉전략)	■ 구직활동(여행) - 즉, 직접방문 및 직업박람회 - 중인청소년과 동행 ■ 인터뷰에 동행 ■ 자신에 대한자각, 기회에 대한 자각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집중수업	■ 청소년의 신원보증인으로 행동하는 것 ■ 청소년에 대한 신원보증 ■ 청소년에게 어떤 직업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야기하는 것 ■ 교통 문제 또는 자금조달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것 ■ 구직과정을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넘겨받는 것	■ 훈련 서비스 제공자 ■ 고용주 ■ 각급 학교/중등학교 ■ 학생 서비스 센터 ■ 직업센터 ■ 기관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LDD (LDD 전략에 따라 좌우된다.)	■ LDD가 있는 청소년 파악 ■ 다음 단계 옵션 선택을 지원하고, 선택된 옵션의 실행을 촉진 ■ APIR 평가들을 활용하여 9년차 검토에 참석 ■ 이행계획의 시행을 조정 ■ 주거 배치와 관련된 LSC 서류 작성 ■ 직업 중심학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추가적 학습/사회적 욕구 평가서를 작성 ■ 관련 정보제출. 예: 연례보고서/사회복지국에 대한 이행계획서/등재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6세 이후 서비스 제공 ■ 제140항 실행계획수립 ■ 이행 검토에 참석	■ 완전한 APIR 평가 ■ 기술 및 동기부여 제고를 위한 집중적 활동 ■ 가족과 협조	■ 기본 기술에 대한 평가자 또는 LDD 전문가가 되는 것 ■ 이행계획의 작성 ■ 상담자(Counselor)가 되는 것	■ SENCO ■ 사회 복지국 ■ Enable ■ 코백션즈 LDD 조정관
가족 문제	■ APIR 과정의 일부가 되는 이슈 및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 ■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실천전략의 도출을 위해 청소년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 ■ 적절한 의뢰. 예: 아동보호관련 이슈인 경우, 전문지원서비스 ■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위험요인의 평가 ■ 청소년의 정서적 활력 고양 ■ 긍정적인 장래계획의 이용. 예: 현 상황에서 탈출 ■ 청소년을 대신하여 이들을 옹호	■ 일선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적인 방식으로 가족과 협력	■ 친척/가족 상담자로 행동하는 것 ■ 청소년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 가족과 지나치게 '편안/친숙한' 관계가 되는 것	■ 부모 ■ 가족 지원 ■ 친척 ■ CAB ■ 사회 보호 및 보건국 ■ St. Basil 가족 화해 서비스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를 상대방
괴롭힘	■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괴롭힘 방지 정책 및 절차 숙지 ■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토론하도록 청소년들을 설득 ■ 괴롭힘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해 청소년과 협력 ■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조직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신하여 이들 청소년을 옹호 ■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고 이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확인 (예: 학습 지도자) (의뢰 실시) ■ 당신의 활동/센터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시행 ■ 동의를 있을 경우, 청소년을 적절한 서비스에 의뢰 (예: 동료지원그룹) ■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위험요인을 평가 ■ 긍정적인 장래계획을 활용. 예: 현 상황에서 탈피 ■ 미해결된 문제 및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일선 관리자에게 통보		■ 개인 안전이 위협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괴롭힘의 가해자에 직접 개입 ■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	■ 학년 주임 ■ 교목팀 ■ 적절한 경우, 관계자 이외의 사람 ■ Time for You (관련 상담 서비스) ■ 교장
출석률 저조 및 학생 신분 상실	■ 청소년의 출석률 파악 ■ 청소년의 무단결석 사유를 검토하고 이들과 함께 그 사유를 논의 ■ 출석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조치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해 청소년과 협력 ■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을 확인하고 이들과 연계. 예: ESW, 학습지도자 ■ 옵션에 대한정보 제공 ■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비 및 옹호 활동 ■ 학교측과의 가교역할 수행 (출석률 저조의 경우)	■ 옵션 및 의뢰 절차에 대한상세 정보 제공	■ 부모/청소년에게 학교를 떠날 것을 권고하는 것 ■ 결석의 목인 ■ 책임의 수락 또는 청소년이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 ■ 감시/경찰에 출석	■ ESW ■ Pupil Connect ■ 학습지도사 (mentor) ■ 교목팀 ■ 대체커리큘럼조정관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행동의 문제	■ 행동상의 문제 및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청소년과 개선전략/조치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 ■ 학교/훈련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청소년을 옹호 ■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활동가와 연계 ■ 위험요인평가-관찰기록지에 기록 ■ 행동 개선을 위한 전략을 검토 - 이는 다른 절차/기관에 대한 옹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	■ 분노 관리 훈련/활동을 운영	■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과 또는 그러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특정인을 목표로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을 감내하는 것	■ 학년주임 ■ SENCO ■ CAMHS ■ Pupil Connect ■ ESW ■ 학습 지도사
성취도 향상	■ 동기부여적 면접 기법/해법 중심적 기법 활용 ■ 열의를 고취하고 정형화된 방식에 도전 ■ 청소년과 함께 그 효과 및 결과를 주목 ■ 장기 계획수립 ■ 청소년이 문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들과 함께 목표를 수립 ■ 청소년의 사고변화를 지원 ■ 청소년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			■ 학년주임 ■ 대체 커리큘럼 조정관 ■ 청소년 서비스 ■ 개인 발달프로그램 ■ Enable
자부심 결여	■ 그 원인 탐색 ■ 자부심 제고를 위해 설계된 활동에 대한 지식 및 그에 대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참여 ■ 지역적 활동에 대한 지식 구축 ■ 자부심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중개 ■ 적절한 서비스로의 의뢰 ■ 적극적인 긍정의 표시 및 자부심 향상을 격려	■ 자기분석을 요하는 활동의 제공	■ 일체의 부정적인 측면과 결부시키는 것	■ 양호교사 ■ 개인 발달프로그램 ■ 청소년 서비스 ■ 상담자 ■ 의사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숙박 (주거) 상의 문제	■ 청소년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취할 것 ■ 독립적인 생활의 장 단점을 토론 ■ 다른 기관의 제시 ■ 절차 및 청소년의 권리를 설명(노숙자 훈련의 지침에 따라서) ■ 핵심 활동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집 증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업무 관계를 구축 ■ 청소년의 각종 급부에 대한 접근을 지원 ■ 특히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 아동보호사안으로 보고 ■ 필요한 경우, 합숙소 / 근린 관련 사무소까지 동행 ■ 긴급주거지원절차를 준수	■ 정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옹호자(대변자) 역할 수행 ■ 청소년의 주거욕구 평가 ■ 정착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인 지원제공 ■ 청소년의 정착계획 지원	■ 숙박(주거) 시설의 물색 ■ 주거상황에 대해 요청 받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것 ■ YOT를 위한 "보석 및 재송치" 사례 ■ 직접 이사에 참여 (육체적 노동)	■ 학생 서비스 ■ 주택국 ■ Foyer(숙박시설) ■ 합숙소/피난시설 ■ St. Basil's ■ The Link ■ 인보시설 (Neighborhood Office) ■ 남부 버밍엄 노숙자 프로젝트
정신 건강	■ APIR에 따라 기관에 의뢰. 일체의 판단이나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 ■ 판단 및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를 기록.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사안으로 보고		■ 정신건강문제의 성격 및 심각성을 평가 ■ 다른 서비스의 격차를 보전 ■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른 GP/전문가와 논의 ■ 상담자가 되는 것	■ 양호교사 ■ 사회 복지국 ■ 상담 서비스 ■ MIND GP ■ ED:IT ■ CAHMS (16) ■ 성인서비스(17-19) ■ LDD 대상 성인 서비스 (25 - LDD) ■ CPN
불안	■ 대체전략 및 실행계획 개발(이슈와 관련이 있는). 예: 불안 검사의 경우,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도움, 올바른 교정전략에 대해 논의. 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항목을 참조 ■ 의뢰기관의 파악		■ 상담자 또는 보건담당자의 역할 수행 ■ 상담 또는 특정한 건강/의학적 조언	■ Connect 2 디렉토리 해당 조직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일반 건강	■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및 지표 확인 (APIR 이용) ■ 의뢰에 대한 사후 추적 ■ 최신의 편견없는 일반적 정보 제공 ■ 청소년의 GP/치과보험 등록 지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건강상태에 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구체적인 건강 또는 의학적 조언	■ 양호교사 ■ GP ■ NHS Direct ■ 일차적 보호위탁 (Primary Care Trusts)
임신	■ 청소년과 이용가능 기관에 대해 논의. 최초 청소년과 동행 가능 ■ 최신의 편견없는 정보 제공 ■ 전문 기관에 대한 지식 ■ 필요한 경우 동행. 조직의 성 건강정책에 따른다(현재 개발 중). ■ 청소년의 탁아서비스 탐색에 노력 ■ 지원기관 안내. 예: 탁아 서비스 ■ 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검토	■ 조직의 성 건강정책 (현재 개발 중)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경우 임신 테스트 시행 ■ 임신 테스트까지 청소년을 지원	■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 ■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 ■ 이례적인 상황에서 개선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절 (termination) 을 보호자 역할을 수행 ■ 임신 테스트 ■ 육아 -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 ■ 조직의 성 건강 정책을 언급 ■ 탁아 서비스의 탐색	■ 임신 상담 서비스 ■ 양호교사 ■ GP ■ Brook
성건강	■ 최신의 편견 없는 정보제공 ■ 전문 서비스로의 의뢰 ■ 성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 일반적인 성 건강상의 문제를 이해 ■ 지원 기관승인 ■ 당신의 소속기관의 정책 숙지 (예: 종교 학교)	■ 성 건강 검진 ■ 조직의 성 건강 정책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경우 콘돔 배포	■ 판단을 내리는 것 ■ 의학적 조언을 하는 것	■ GUM 클리닉 ■ 양호교사 ■ GP ■ Open Door ■ Brook ■ NHS 드롭-인 (drop-in) 센터 ■ 청소년 서비스
약물 남용	■ 최신의 편견 없는 정보 제공 ■ 약물남용 담당자/기관에 의뢰 ■ 약물남용 사유확인 ■ 약물남용 문제에 관한 기본지식 ■ 관련 지원기관의 파악	■ 약물 검사 ■ 전문 지원서비스 제공. 예: NIAH Pas	■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 ■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 ■ 마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 GP ■ HIAH ■ 양호교사 ■ 약물담당계 (Drugline) ■ Welcome ■ FRANK ■ 청소년 서비스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비행 (범죄)	■ 관련 기관(예: YOS, 경찰, YOIs)과 공조하여 업무 수행 ■ 효과적인 의뢰실시 / 핵심 활동가(담당자)의 동의 확보 ■ 비행 사유의 확인 (APIR) ■ 청소년과 함께 비행 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토론 - 현실 ■ 의뢰기관에 대한 이해 ■ 비행 행동의 합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 장기적 직업계획 수립 ■ 최종/중간ASSETs에 기여, 특히 교육, 훈련 및 고용과 관련하여	■ 판단을 내리는 것 ■ 단속(poicing) / "보호" (babysitting) ■ 비밀정보의 고지 및 비밀준수의무의 위반(일반적 예외사항으로) ■ 소송 대상 청소년의 '적격의 보호자' (Appropriate Adult) 역할을 수행하는 것 ■ 법정 YOS 책임을 부담하는 것 ■ 성격증인(character witness)이 되는 것	■ YOT ■ PAYP ■ 청소년 서비스 활동
직업/ 대체 커리 클 기회	■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원, 사례 대상 청소년 방문 ■ 취업준비를 위하여 청소년과 함께 집단 활동 수행 ■ 배치 선택에 대한 조력 ■ 대체 커리클의 필요성 확인 ■ 정기적 검토 ■ 청소년이 직업맞보기/경험 활동을 조력 ■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진 위험을 통보		■ 배치 및 대체 커리클을 조직하고 탐색하는 것 ■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청소년을 돌보는(babysitting) 것 ■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	■ 직장 내 직업 조정관 (배치 가능성) ■ 교내 직업조정관 ■ 대체 커리클 조정관
부모와 사별/ 상실	■ 다른 기관의 파악 및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파악 ■ 공감 및 이해하는 자세 ■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영향 인정		■ 상담 지원 제공 ■ 상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	■ 전문기관. 예: Cruse, Edwards Trust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학대/아 동보호	■ 사례 공개를 진지하게 고려 ■ 청소년이 아동보호 정책 및 절차, 비밀 유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 세심, 정확하고 역사적이며 사실에 근거한 기록으로서, 개인적 판단이나 의견이 배제된 기록 ■ 조직의 지침에 따라 의뢰 실시 ■ 계선 관리자/기타 관리자와 함께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이슈(정보요청 아동보호사례회의, 전략회의 및 핵심집단 참여를 포함)를 논의 ■ 법률 및 실제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정보를 유지 ■ 공개 가능한 대상사례 파악	■ LDD 서비스수혜자에게 아동보호관련 이슈를 설명 ■ 회의 참석 또는 법정 출두를 요청받은 경우, 계선 관리자로 부터 조언을 구함	■ 공개 사례를 조사하거나 보다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사를 행하는 것 ■ 코백선즈 아젠다에서 일탈하는 것 ■ 소송절차 및 사건에서 적격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 다른 전문가를 보호하는 것 ■ 청소년과의 관계악화를 염려하여 정보를 자신에게 국한시키는 것 ■ 피의사실 또는 공개에 대한 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공개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 사회 복지국 ■ 아동보호 전담교사 ■ 경찰 ■ 보호담당계 (Careline) ■ PAC
수용 시설 수용 희망자/ 난민	■ 최신의 편견 없는 정보 제공 ■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 서비스 관련 일정 지식 ■ 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입법에 대한 파악. 예: 수용시설 수용희망자와 난민간의 차이 ■ 청소년이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언어 서비스 회선 (Language Line) 이용 방법에 관한 지식 ■ 인터뷰시 수용시설 수용희망자/난민과 동행	■ 수용시설 수용희망자/난민을 위한 집중 지원 ■ 교육, 훈련 및 직업과 관련된 자격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심층적 지식 ■ 구직, 인터뷰 기법 및 CV 작성에 대한 조력 ■ 훈련 서비스, 초급대학 또는 종합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에 조력 ■ 도시간 난민지원 그룹에 참여 ■ 주류 PAs를 위한 지식원(source of knowledge)의 역할 ■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 예: 주택, 사회보장	■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 수용시설 수용희망자/난민을 위하여 직접 숙박시설을 탐색하는 것 ■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수용시설 수용희망자/난민의 신원 보증인이 되는 것	■ Wardlow Road ■ 인보시설 ■ Midland 난민 센터 ■ 적십자 ■ 난민평의회 ■ 비동반 소수자와 친구되기 프로젝트 ■ 직업센터 플러스

이슈	PA의 핵심적 역할	사례고유사항	PA 역할 이외의 사항	의뢰 합의 상대방
서비스의 질	■ PA의 역할과 관련된 양질의 서비스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 다음은 그에 이다.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할 책임을 지는 것 ■ 이러한 평가결과를 자신의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평가 및 반영을 토대로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자신의 업무 및 조직의 자기평가를 위한 지속적 토대에 대한 그 영향과 관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것. ■ 조직 전반의 양질의 서비스관련 실무그룹 및 PA 역할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 ■ 청소년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조장하고 이를 수용하며, 계획 수립 및 실무 도입을 위해 이를 활용할 것 ■ 지원 및 감독, 핵심 단계 관찰 세션/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양질의 서비스관련 프로젝트/실무그룹의 구성원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 회의 참석 및 기여 ■ 자신의 팀을 대표하고 자신의 팀에서 일어난 일을 피드백 ■ 과업집단에 조력 ■ 올바른 실무의 공유 및 제고를 위해 조력을 제공 ■ 양질의 서비스관련 활동을 평가, 발전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	■ PA가 속해있는 팀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것 ■ PA 역할을 벗어난 특정한 양질의 서비스관련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 조직목표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팀 과 운영/일선관리자간에 합의된 바에 따름.

별첨 A

1. 청소년과 효과적인 업무 협력 관계 구축

- 청소년에게 신뢰를 약속하고 1대1 개입 및 집단 개입을 통해 당신 자신과 청소년 간에 신뢰를 발전 정보, 조언, 지도 및 지원 제공
- 모든 개입조치에 있어서 그 지원 또는 욕구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non-judgmental) 태도로 업무를 수행
-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 및 발전 기회를 확인하고, 발전을 위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
- 이탈 및 동기 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탈의 징후에 적절히 대응
- 모든 수준에서, 특히 목표설정 및 의사결정 수준에서 현실에 입각한 논의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

2.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원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소개를 주선하고 청소년의 명시적 동의를 근거로 이들 기관 등에 배경 정보를 제공
-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을 대신하여 이들 청소년을 옹호

3. 기관간 공조 업무 수행 및 복수 분과간 업무 수행

-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 및 동료들로 구성된 내부 네트워크와 공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적절한 기여를 제공

4. 사정, 계획, 집행 및 검토

- 당면 이슈, 관심사, 기대 및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1대1 방식으로 청소년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청소년과의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평가
- 청소년과 함께, 정의된 목표, 목적 및 실행계획에 비추어 성과 및 진도를 검토하고, 장애 검토를 위하여 이를 수정
- 목표 대비 참여 및 진척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

5. 정보 수집 및 교환

- 비밀 유지 및 청소년의 개인 정보 관리 (자료보호요건 및 동의원칙에 따라)
- 적정한 시간에 업데이트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 청소년 및 이들이 이용 가능한 옵션과 관련하여, 정보를 확인, 수집하고 검토

6. 부모,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 부모 /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을 파악
- 청소년의 부모 / 보호자 / 가족과 정기적인 접촉을 확립, 유지하고, 이들이 청소년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 격려

7. 평등 및 다양성 제고

- 기회의 균등 및 가치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를 실천
- 반-억압적 행동을 촉진하고 이를 실천

8.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평가

- 보안 및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 및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청소년의 건강, 안전 및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 보장
- 조직 내에서 그리고 당신의 업무장소, 센터 또는 기관에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스태프를 파악

9. 서비스 제공상의 격차에 집중

- 서비스 제공상의 격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파악
- 당신이 기관, 센터 또는 업무장소에 대한 연계 PA(Link PA)인 경우, 서비스 제공상의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책임을 부담

10. 양질의 서비스 표준

- 최고 수준의 전문적 실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서비스 전달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 청소년 및 협력단체와 실무 활동의 윤리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 자신의 발전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

3) APIR - 개인상담가용 지침서⁵⁾

(1) 서론

버밍엄 · 솔리힐 코넥션즈(Birmingham & Solihull Connexions)는 청소년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코넥션즈 APIR 체계(framework)를 이행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문서는 개인 상담가들에게 버밍엄 · 솔리힐 코넥션즈의 협력 지역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APIR을 적용할 것인가에

5) Connexions(2005). Birmingham & Solihull. Assessment, Planning, Implementation & Review(APIR) Guidelines for Staff(Personal Advisers).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서는 코넥션즈 APIR 체계: 개인 상담가용 지침서 문서들과 연계하여 숙지해야만 한다. 이 지침서는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코넥션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개인 상담가에게 적용된다.

코넥션즈 서비스에 의해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해온 APIR은 코넥션즈 서비스와 협력단체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발달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정(assessment)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지도(guidance) 모형에 있어서 청소년 업무에 관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실천은 사정(査定)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APIR 체계에 구현되어 있으며 모든 개인 상담가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을 반영한다. 이 체계는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사정(査定), 계획, 집행 및 검토 과정
- 18개 요인
- 기록관리표 작성용 키트 및 기록관리표
- 제반 양식

APIR 체계의 18가지 요인은 모든 개인 상담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대1 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 상담가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최초 접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체계에 포함된 18가지 요인은 기존의 사정 모형, 특히 결핍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사정 체계(사회 복지국) 및 청소년 정의 위원회(Youth Justice Board) ASSET 모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모형은 포괄적인 연구 및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APIR은 위 모형들에서 알려진 연구와 실습에 대해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범위로 진행해 왔다. 이는 코넥션즈 체계는 실천에 기반한 증거의 순환 사이클이 그 출발점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과 용어 공유를 통해 협력과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 용어 공유는 특정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이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2004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APIR은 개인 상담가가 코넥션즈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도와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체계를 개인 상담가의 실무 속에 각인시킴으로써 버밍엄·솔리힐 코넥션즈는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조치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그 진척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소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OfSTED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APIR은 청소년을 위한 ‘공동 사정 체계’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 그린 페이퍼(Green paper)의 ‘모든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Every Child Matters)라는 권고 결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 과정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세우고 그 과정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버밍엄·솔리힐 코넥션즈는 APIR의 내용과 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에 실무중심적인 방법론을 강조함으로써, 해결 중심 상담(Solution Focused Counseling)을 채택하고 있다.

안젤라 테일러 (Angela Taylor)

서비스 전달 담당 이사(Director of Service Delivery)

(2) 상이한 ‘욕구수준’이란 무엇인가?

개인 상담가는 반드시 청소년을 대상 모든 업무에 대해 APIR 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체계는 청소년 개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 아래의 표는 ‘욕구수준’의 정의에 관한 버밍엄·솔리힐 코넥션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욕구수준	정의	예
최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학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청소년	이들은 <i>다음 특징의 일부 또는 전부를</i> 가지고 있다. ■ 학업 성적 우수자일 가능성이 높음. (예: 5개 GCSE 등급에서 C 이상) ■ 중요시기에 일반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함. ■ 자신의 장래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육 및 직업관련 문제에 관한 정보와 조언 및 지원이 필요함. ■ 각급 학교의 직업/개인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 및 조언을 통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11세 학생, 양호한 'A' 수준의 잠재력, 'A' 수준의 과목선택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원함. ■ 16세의 구직청소년, 현대 직업훈련 제도의 훌륭한 후보자. 결원이 생긴 일자리를 원함. ■ 출장연회 분야의 직업과정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컬리지 지원자.
지원 이 집단에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학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들이 주요전환 시점에서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i>다음 특징의 일부 또는 전부를</i> 가지고 있다. ■ 학업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을 성취했지만, 5개 GCSE 등급에서 A-C의 성적을 얻을 수 없음. ■ 16세 이후의 학업이나 훈련을 할 때 유급의 위험이 있음. ■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직업 또는 직업훈련장소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동기의 결여 ■ 학습곤란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기준 이하의 성취를 보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음. ■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하의 취약집단 항목 참조)	■ 10세 학생, 양호한 GCSE 잠재력 보유, 학업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가정 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큼. ■ 컬리지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생각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않음. ■ 학습곤란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 올바른 선택과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지원이 필요. ■ 실업상태의 청소년, 단기간 고용/직업훈련 이력이 있음.
집중 일부 청소년들은 개인 상담가 등으로부터 장, 단기 간에 걸친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i>다음 특징의 일부 또는 전부를</i> 가지고 있다: ■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학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우에 따라서 매우 적은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음. ■ 다른 분야의 성취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 ■ 낮은 수준의 읽기 및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임. ■ 퇴학 또는 출석저조로 인하여 교육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음. ■ 자부심이 낮고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타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경질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주요 전환시점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의: 보고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집중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 출석을 저조, 행동상의 문제, 경찰의 주의대상 등 모든 사항이 교육/학습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 실업상태의 청소년, 아무런 학업 성취 없음, 현재 친구 집에서 기숙. ■ 학습곤란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합숙 FE 과정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열악한 가족의 지원

(3) 어떻게 청소년의 욕구수준을 파악할 것인가?

개인 상담가(Personal Advisor)는 청소년의 욕구수준(이에 따른 지원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자 및 여타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① 취약집단

특정 청소년 집단이 취약하고 그래서 강한 지원이 요구되는 욕구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아래와 같은 청소년이 이에 포함된다.

- 소년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위기에 놓인 청소년
- 청소년 부모 / 임신한 청소년
- 현재 아동보호대상 등록자
- 보살핌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난민 / 수용시설 수용 희망자
- 떠돌이 아동
- 노숙자 / 위기 청소년
- 청소년 가장
- 일시 정학 / 퇴학 청소년
-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청소년

또한 이들은 다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약물사용
- 건강상의 문제
- 가족해체
- 학교 출석의 문제

- 영어가 제2 외국어인 경우
- 학습곤란 및 장애

개인상담가는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하여 선부른 가정을 한다거나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 생각하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된 학생이나 보호대상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집중적 지원 및 완전한 APIR 기록관리 표 키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각급 학교 및 컬리지(College)에서 활동하는 개인 상담가의 경우: 청소년의 욕구 정도를 파악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담가 자신과 학교 측 그리고 기타 적절한 전문가 간의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년 협의하는 협력서에 개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업무공조는 학교 또는 컬리지에 개인상담가와 다른 주요 구성원이 포함된 안내 포럼이나 안내 지원 팀을 설치할 경우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포럼이나 지원팀이 없는 곳에서는 개인상담가는 어느 학생이 집중적, 지원적, 그리고 최소 욕구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필요가 있다. 개인상담가는 코넥션즈 조정관, 교목회장, 학생복지 담당 부서장, SENCO, 학년주임, EWO, 양호교사, 진로 상담가, 학습 지도사 등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의뢰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학년집단에 대한 정보는 매 학년 초에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8학년 동안 학생에 대한 정보는 여름 학기 중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집해야 한다. 이후 해당 학생들이 KS4를 마칠 때까지 이 정보는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② 욕구수준의 기록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모든 청소년의

욕구수준을 이들의 관찰기록지(Insight) 컴퓨터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록은 반드시 취합된 새로운 정보 및 업무 활동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욕구수준에 관한 정보는 ‘개인 환경’ (Individual Circumstances) 항목의 지원 정보와 함께 ‘지원 수준’ (Support Level) 항목에 기록되어야 한다.

(4) 어떤 조치를 언제 취해야 하는가?

2004년 4월부터 모든 코넥션즈 서비스 및 개인 상담가에 대하여 APIR 체계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지침은 버밍엄 · 솔리힐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APIR 체계는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APIR의 과정 - 평가, 계획, 집행 및 검토
- 18가지 요인
- 기록관리표 키트 (원형 또는 차트)
- 각종 서식 (예: 기록관리표, 실행계획)

모든 개인 상담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1대1 개입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본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다만 각 요소가 적용되는 정도는 해당 청소년의 욕구수준에 따른다.

체계의 적용 :

이러한 모든 조치가 항상 아래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한번의 개입(Intervention)에서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원적 및 집중적 범주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욕구 수준	서비스 수준	APIR - 반드시 시행해야 할 조치
최소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접근: 예, 코넥션즈 다이렉트, 정보 접근. ■이 범주의 청소년들은 적절한 학교안내서를 언급한다거나, 소책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구두 조언 등 최소한의 도움만이 필요하다. ■검토는 단지 해당 청소년이 개입조치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한 경우 정보 및 조언을 얻기 위해서 다시 개인상담가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구두확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APIR 과정 적용 ■18개 요인을 숙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개입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와 조치에 대한 결과 기록
지원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행계획과 함께 주요시점에서의 적절한 1대1 개입조치. ■여러 차례의 개입조치를 통하여 18개 요인 중 관련성 있는 요인을 탐색.	■APIR 과정 적용 ■18개 요인을 숙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개입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기록 ■해당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기록관리표 키트를 사용하여 6주 이내에 기록관리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 ■적절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찰기록지에 기록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조치 이후 추가 증거와 함께 진척사항 및 결과를 기록
집중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절한 1대1 개입조치, 여기에는 18개 요인을 포괄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완전한 기록관리와 포괄적 사정이 포함된다. ■개인상담사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실행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그 진척사항을 관찰기록지에 기록한다.	위와 동일한 조치 이외에도: ■기록관리 키트를 사용하여 원 또는 막대 차트 형태의 완전한 기록관리 작성 - 최초 개입조치 후 6주 이내에는 적어도 해당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포함된 기록관리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완전한 기록관리표는 12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 특정한 개입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어떠한 조치가 합의되었고 취해졌으며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관찰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5) 어떤 청소년에게 APIR이 사용되는가?

코넥션즈 표적집단(즉, 13-19세까지의 청소년. 단 학습곤란 및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24세까지)에 속하는 모든 청소년은 지명된 개인상담가에게 배정된다.

이러한 담당 상담가 배정은 개별 책임 담당배정(Responsible User

Caseload)이라고 지칭된다. 담당 상담가 배정은 개인 상담가의 역할 및 배치(예: 학교, 지역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담당배정에 대한 개인 상담가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접촉 전략(아직 초안 단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IT 시스템을 추적(tracking)하고 업데이트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 담당배정(active caseload)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적극적 담당배정은 관련된 운영 서비스 전달 모형 및 개인 업무계획(아직 초안단계)에 맞추어 특정 시점에서 현재(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개인 상담가의 책임 개별 담당배정이다.

개인 상담가로서 상담가는 모든 책임 개별 담당배정에 대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욕구수준을 확인하고 검토하지만 적극적 담당배정의 경우에는 APIR 체계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이 어떤 개인 상담가에도 ‘개별 책임’ 담당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청소년은 특정 개인 상담가의 개별 책임 담당배정 또는 적극적 담당배정에 적절하게 배정될 필요가 있다. 개인 상담가의 관리자 또는 개인 상담가의 조정관이 이러한 배정에 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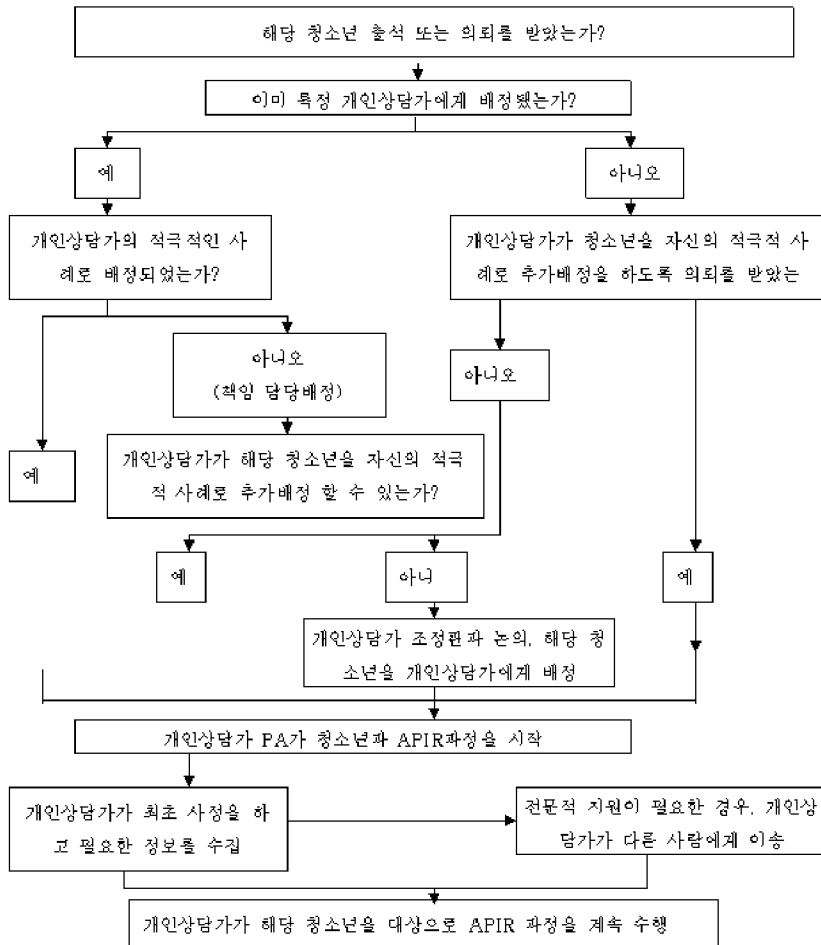
위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조하라. 이 흐름도는 누가 APIR 과정을 주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개인 상담가들이 누가 APIR 과정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개인 상담가의 조정관/관리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APIR에 관한 책임을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 개인 상담가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인 상담가에게는 소속 조직 또는 의뢰를 통한 전체 협력단체의 다른 개인 상담가의 전문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관찰기록지에 기록해야 하는가?

해당 청소년을 담당하는 개인 상담가(들)의 이름이 관찰기록지의 담당배정 항목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누가 책임 상담가 (Lead PA)이고 누가 해당 청소년의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특정 청소년이 어떤 개인상담가의 책임 개별 담당배정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청소년의 시스템상 배정은 지명된 다른 개인상담가 또는 운영진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언제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6) ‘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코넥션즈 개인 상담가에 의한 사정(assessment)이라 함은 특정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생활로의 이행을 이끌어 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한곳에 취합하고 상황에 대한 이들의 견해 및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면담하며, 학습 참여에 대한 능력 및 장애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2001:15 APIR 공문[diploma] 폴더)

사정은 의뢰 이후 APIR 과정의 출발점이다. 사정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사정을 통해 특정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출발점이 결정되며, 이후 발생하는 진전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정은 청소년이 성인 생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 계획, 집행 및 검토를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욕구에 관한 개괄적인 그림을 그려 내는 데에 이용된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부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청소년은 반복된 최초 사정의 대상이 되거나 거듭된 동일한 정보 제공을 요청 받아서도 안 된다. 한 개인의 학습 및 지원 욕구는 의뢰 시점부터 다양한 원천의 광범위한 정보 취합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그 사용이 적절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합의된 도구를 이용하여 현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과 1대1 상호작용

- 리커트 척도
- Kudos/CID
- 해결 중심 상담
- 기본 기술 사정

- 기타 자가 사정 도구
- KS4 사정

◆ 협력 단체 또는 동료로부터 나오는 2차 사정 정보. 예를 들어:

- ASSET (청소년 정의 위원회)
- 각급 학교, 칼리지 또는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자
- 결핍 아동 및 가족 사정 (사회 복지국)
- 개인 교육 계획 (보호 대상 청소년)
- 보호탈피를 위한 진로 계획(보호 대상 청소년)

청소년의 가족 또한 해당 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APIR 기록관리표의 18개 요인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개인 상담가의 지식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가적 판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정이 계속되면서, 보다 많은 지원 욕구가 확인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러한 욕구는 해당 청소년의 관찰기록지의 기록 및 APIR 기록관리표에 업데이트된다.

왜 반드시 청소년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 해당 청소년의 현재 욕구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입조치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개인상담가와 청소년 모두가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조치가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누구 책임을 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특정 청소년의 변화 지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관찰기록지 내에 포함된 정보가 최신의 것이며 적합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 정부를 위한 관리정보 생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가의 개입조치와 관련하여 그 증거추적(evidence trail)이 이용 가능하도록

내가 만약 다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 상담가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예를 들어, 사회 복지국, YOS)

모든 코넥션즈 개인상담가는 코넥션즈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는지 또는 파견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APIR 체계를 수행하고 이를 완수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관리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부 개인상담가,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 담당팀과 사회 복지 팀에 소속된 코넥션즈 개인상담가의 경우, 이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핵심적 사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 ASSET 및 경로계획)

이러한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모든 관련 사정계획이 APIR 과정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상담가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ASSET는 경로 계획과 유사한 기록관리표 일부 사항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상담가는 동일한 사항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다. (실행계획 샘플 사본을 보라.)

개인상담가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개인상담가를 위해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더더욱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루어진 장소 및 수행된 사정의 유형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을 개인상담가가 청소년과 함께 작성한 코넥션즈 실행 계획서 상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찰기록지에 추가적인 문서작업/사례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기재하고, 누군가가 하더라도 개인상담가의 담당 청소년에 대한 사후추적 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 상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담당자를 파악하여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당자는 개인상담가거나 또는 소속된 조직의 개인상담가의 동료 중 한 사람(일선 관리자)이 될 수도 있다.

사정결과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해당 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정은 관찰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수혜자 이력사항(Client History) 의 사정 항목에도 기록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통 사정 체계(Common Assessment Framework)란 어떤 것인가?

‘모든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 사정 체계’ 를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아동들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통 사정 체계(이하 CAF)는 현재 개발 중이며 2006년까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버밍엄(Birmingham) 및 솔리힐(Solihull)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보습학교(Extended Schools)를 대상으로 예비적인 CAF를 실시할 예정이다.

CAF는 APIR에 사용된 요소와 매우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CAF 에서 얻어진 정보가 APIR 사정에 유입되거나, 또 반대로 APIR 사정 정보가 CAF 사정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모든 코넥션즈 개인상담가는 CAF 과정에 도움을 주고 일부 사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 경우에도 APIR을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

CAF에 대한 지역 및 다(多)-기관 교육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보습학교 소속 개인상담가는 CAF 예비 시행으로부터 유용한 경험을 얻게 되고, 이는 전체 개인상담가에게 CAF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다른 사정 체계 및 도구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사정 도구/ 체계	결핍아동 및 가족 (NAF)	ASSET	Rickter 위원회	제140조 및 14+ 이행검토	주민F.E. 등록	CAF
APIR 요인						
교육 및 등록						
■ 참여	?	V	?	?	?	V
■ 학업성취	v	V	?	v	v	V
■ 기본기술	v	V	?	v	v	
■ 핵심기술	v	V	?	v	v	
■ 생활기술	v	V	?	v	v	V
■ 기대	?	v	?	v	v	v
개인건강						
■ 신체적 건강	V	V	V	V	V	V
■ 정서적 안녕	V	V	V	V	V	V
■ 약물 사용 문제	?	V	V	?	?	v
가족 및 환경						
■ 부모/보호자의 능력	v v	V	X	?	V	V
■ 가족사 및 가족기능수행	v v	v v	?	v		V
■ 사회 및 지역사회	v	v v	?	?	V	
■ 주택	v	v	v	?	?	v
■ 소득	v	v	v	?		
사회적 발달 및 행동 발달						
■ 정체성 및 자아상	V	v v	v v	V	V	V
■ 태도와 동기	V	v	?	?	?	?
■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V	v v	?	?	v	v
■ (재)범죄의 위험	?	v v v	x	x	x	

v = 정보 제공 예정

vv = 매우 연관성이 높은 정보

? = 가능한 정보

X = 정보 없음

(8) 어떻게 그리고 언제 APIR 기록관리표(profile)를 작성하는가?

- ‘집중적 욕구 (Intensive needs)’ 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기록관리표 작성용 키트를 사용하여 완전한 기록관리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최초 개입조치 후 적어도 6주 이내에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포괄하는 부분적 기록관리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완전한 기록관리표는 12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 ‘지원적 욕구’ 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유용한 경우, 기록관리표 작성용 키트를 사용하여 기록관리표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점이 APIR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처는 해당 청소년 자신이다. 청소년에게 관여하고, 이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정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며, 청소년에게 사정 결과에 대한 보다 큰 주인의식(ownership)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 ① 책임 개인상담가(Lead 개인상담가)가 청소년과 함께 기록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코넥션즈 개인상담가가 책임 개인상담가가 아닌 경우, 책임 개인상담가는 기록관리표가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그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요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② 기록관리표는 선형(막대)이나 원형 둘 중의 한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③ 보장정보 및 기록관리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관찰지록지에 저장되어야 한다.
- ④ 개인상담가는 또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출처에는 코넥션즈,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국, 교육국, 보건국, 주택국, 경찰, 사회 보장국, 민간자원부문, YOT 청소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⑤ 개인상담가는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 (즉, 일반적인 5점 척도상 지점), 해당 청소년과 이해를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⑥ 개인상담가가 청소년과 입장공유((즉, 일반적인 5점 척도상 지점)에 실패했을 경우, 개인상담가는 이것을 추가적인 증거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상담가는, 실제적 도움이 되는 청소년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청소년을 격려하여 상담이 청소년 자신의 학습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⑦ 기록관리표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드러나게 한다. 실행 계획은 개인상담가의 아젠다가 아닌 바로 청소년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⑧ 개인상담가가 실행계획에 대하여 청소년과 입장공유가 안될 때, 개인상담가는 이를 추가적인 증거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상담가는, 실제적 도움이 되는 청소년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청소년을 격려하여 이러한 개입이 청소년 자신의 학습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⑨ 기록 - 위에서 언급된 수단으로부터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 수집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분명하게 관찰기록지의 이력 페이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9) 실행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 ① 일단 청소년과 함께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그 상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관찰기록지에 입력해야 한다.
- ② APIR 실행계획의 인쇄물 사본 보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제시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본을 보안이 취약한 장소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사본을 사무실에 놓아두는 경우, 그 장소는 보안이 잘 된 장소이어야 한다.(즉, 문서를 작성한 개인상담가 외에 그 누구도 사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개인상담가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본을 휴대하는 경우, 사본을 트렁크에 넣고 열쇠로 채워야 한다.
 - 비록 서류가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야간 내내 서류를 차 안에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서 사본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③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획서 사본을 분실한 경우, 개인상담가는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분실 사실을 직속 일선 관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통지를 받은 관리자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담당 부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소년이 출력된 인쇄물을 선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상에서 실행계획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명심할 점은 해당 청소년이 개입 조치 종료시점에 자신을 대상으로 세워진 실행 계획서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 ⑤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a) 개입조치의 종료 시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일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거나 해당 청소년을 위한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

- b) 개입조치가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일련의 개입조치의 일부인 경우
- c) 그룹워크와 같은 상황에서 코넥션즈와의 후속적 접촉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사본을 우리와 함께 완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서 인쇄물 사본을 해당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 a) 긴급조사
- b) 일회성 안내
- c) 전화조사

그러나, 모든 정보는 관찰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 실행계획에 관한 유용한 힌트

- 개인상담가가 실행계획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충분하게 참여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라 -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상담가는 청소년에게 특정한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은지를 질문할 수 있다. 아니면 청소년에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는 그림이나 상징을 이용할 수 있다.
- 설령 개인상담가가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상담가에게 실행계획 일정 측면의 발전, 진행정도 또는 장애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질문, 즉 "1-10점의 척도 위에서 너의 발전 정도를 얼마라고 평가할거지?" 또는 "만약 네가 골을 향해 달려가는 축구 선수라면, 상대진영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 개인상담가는 세션의 종료 시점에 청소년에게 실행계획서 사본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작성된 내용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라.

- 청소년과 함께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낮은 기대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어, 청소년이 직업을 갖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 직업 중심 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라.
- 실행계획 속에 코넥션즈 서비스를 완벽하게 포함시켰는지 확인하라 - 개인상담가는 개인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자원봉사, 취미 및 여가활동,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 등) 모두 포함시켰는가?

(10) 검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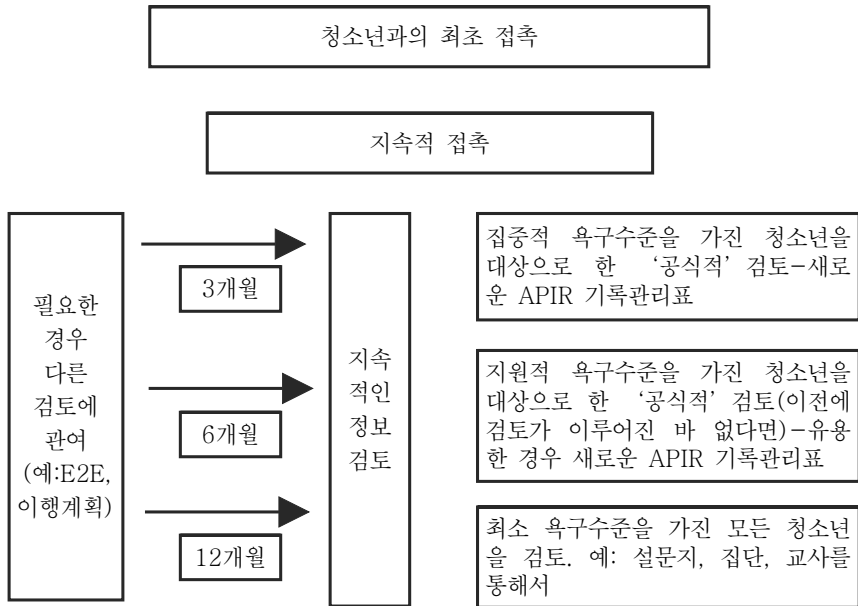
검토(Review)는 APIR 체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이다. 앞선 사정, 계획 및 집행은 청소년에 대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효과적인 것이 된다. 검토는 개인상담가로 하여금 청소년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특정한 주요시점에서, 합의된 실행계획에 비추어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사정 기록관리표를 업데이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의 목적은?

검토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 성취한 발전 및 향후 요구되는 조치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검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합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이 검토사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검토를 막론하고, 모든 검토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범위를 재조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검토는 비록 기록관리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APIR 기록관리표의 18개 요인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그림 5 > APIR 기록관리표

주의: 부모, 보호자 및 핵심 관련자와 같은 기타 개인이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 모든 검토사항은 반드시 관찰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11) 비밀유지 및 정보공유란?

- 스스로에게 개인상담가가 어디까지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라. 그러나 개인상담가가 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 민감한 정보를 관찰기록지에 기록하기에 앞서, 청소년으로부터 명시적인 구두 동의를 얻으라. 정보의 어떤 특정 부분이 동의를 얻은 부분이며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인지를 명확히 하라. 새로운 정책의 일환인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이용하라.

- 청소년은 우리가 자신들과 접촉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시스템에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 제한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장래에 다시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 청소년은 우리가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소년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우리들의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당 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
- 청소년과 최초 접촉 기간 동안, 스텝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집된 정보의 유형 및 목적
 - 이러한 정보가 유지, 보관되는 방법 및 자신들의 개인기록에 대한 접근권
 - 타인과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및 그 이유,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및 필요치 않은 경우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권리’ (You and Your Information)라는 소책자
-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상담가가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할 것임을 해당 청소년에게 반드시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아동보호문제와 관련된 경우
 -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 긴급한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잠재적 또는 실제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
 - 법정 규정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
- 청소년은 자신들의 개인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서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혜자 자신에 관한 기록의 영

구적 사본이 서비스 수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관리자가 모든 서면 요청서를 취급한다. 청소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정보 수정 또는 삭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청소년에게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해당 청소년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 청소년이 대응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는 자료 보호 관리자(Data Protection Controller)인 Lisa Whiston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내용은 간략한 요약에 불과하며, 스태프는 자신들이 청소년 개인정보 기록 및 공유를 위한 정책 및 절차(Policy and Procedure for Recording and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Young Person)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APIR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및 지원은?

모든 개인 상담가 및 이들의 관리자는 APIR 1일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전체적인 코넥션즈 교육훈련 체계의 제 2단계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 특히 사회복지국, 청소년 범죄국, 청소년 서비스국 및 주요 민간자원단체 소속의 동료들에게 유용하다.

본 1일 과정은 APIR 체계, 진행과정 및 APIR 기록관리표를 소개한다. APIR 폴더 및 본 지침서가 이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APIR 체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도구 및 지식을 개발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마련될 예정이다. 훈련은 해결 중심 상담, 실행계획수립, 면접기법, 리커트 척도, 제140조 사정, 인간 중심적 계획 및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인 관찰기록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훈련은 개인개발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 이하 IDP) 과정의 일환으로 개인 상담가 및 이들의 관리자간에 합의되고 논의될 것이다.

내년에는 또한 APIR 기록관리표에 관한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이 워크숍은 개인상담가 및 그 관리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친숙해지며, 올바른 실무 관행 개발 및 품질 수준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워크숍은 팀 단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무자에 의해 주도된다.

4) 자료 보호 및 정보 공유 정책 및 협약서⁶⁾

어떠한 협약서가 있는가? 상대방은? 체결 시점은?

BSCS가 그 협력단체와 체결한 다양한 협약서가 존재한다. 협약의 대다수는 아래의 당사자들과 체결된다.

- 버밍엄 지역 교육청
- 버밍엄 YOT
- 서부 미드랜즈 경찰청
- Clarify with Brain Martin

(1) 자료 보호 지침 / 요점

법조문에 규정된 8가지 원칙은 상당히 길지만, 정보 담당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는 자료보호법: 자료 관리자를 위한 간이 지침(The Data Protection Act: A brief guide for data controllers)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한 바 있으며, 이 책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약술하고 있다.

6) Connexions(2005). Birmingham & Solihull. Assessment, Planning, Implementation & Review(APIR) Guidelines for Staff(Personal Advisers).

개인자료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 가능한 8가지 올바른 실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자료는

-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충분,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자료 주체의 권리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적절한 보호수단이 없는 경우, 국가간 이전이 금지된다.

개인 자료는 특정 개인에 관한 사실 및 의견 모두를 망라한다. 여기에는 또한 해당 개인에 대한 자료 관리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 본 소책자의 사본 및 1998년 자료보호법에 규정된 8가지 원칙에 관한 전문은 아래의 기관 또는 주소에서 구할 수 있다. 정보 담당 커미셔너실, 웹사이트 www.dataprotection.gov.uk 또는 1998년 자료보호법 - 법률 안내서 (ISBN No. 1 870466 23 3)

(2) 비밀유지지침

청소년 개인 정보 기록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절차는 서비스 수혜자 동의와 관련하여 스태프 구성원이 취해야 할 절차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서비스 수준 계약

버밍엄 솔리털 코넥션즈 서비스는 지역 내 각급 학교 또는 칼리지와의 협력계약 체결을 포함하여 많은 조직과 서비스 범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코넥션즈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코넥션즈와 각급 학교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고, 비밀유지 및 정보공유에 관한 특정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3) 정보 동의 및 기록

청소년 정보 기록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절차 초안은 서비스 수혜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스태프 구성원이 취해야 할 절차에 잘 나타나 있다. (제 4항은 필요한 동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4) APIR체계의 적절한 개인별 적용방법

아래에 제시된 3가지 사례는 의무적 요건 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된 3가지 일반적인 지원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APIR 과정을 이용하는 실무의 예를 제시하고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 문제를 예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실무 사례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사례들이 모든 개인 상담가들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 사례연구 1 - 미나(Meena): 17세 중등학교 6학년 학생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자가 의뢰	■ 미나는 자유수업시간 중 학교소속 개인 상담가를 내방, 의사가 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 ■ 개인상담사(PA)는 미나에게 비밀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주지시켰고, 미나는 관련 사항을 이해했으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서 양식에 서명했다.
사정	■ PA는 CCIS에서 미나에 관한 기록부를 발견했으며, 이는 미나가 자신의 A 수준 옵션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내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미나가 양친과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나는 GCSE 10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PA는 기록부상의 정보가 여전히 최신의 것인지, 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미나가 방금 전 AS 수준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훌륭했다는 점이다. 미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으며 지역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사정	■ PA는 사정기록관리표의 18개 요인을 유념하고 있으나, 현재 미나의 경우에는 심층적인 사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PA는 사정기록관리표 작성용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정 기록관리도 작성하지 않는다. ■ 두 사람은 미나가 의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서 미나가 예상하고 있는 바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 미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운 공부에 파묻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생각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록부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나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모두는 의대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PA는 미나의 욕구수준이 (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 ‘최소’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계획	■ PA는 미나에게 의학 과정이 있는 대학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온라인 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아울러 학교 도서관의 직업색션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두 사람은 또한 의학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나가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 지역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같은 -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PA는 이러한 활동을 사후점검하기 위하여 미나에게 병원연락번호를 준다. ■ 미나는 추가적 정보에 대한 접근에 동의하며, 일단 이러한 정보 검색을 해본 이후 PA를 면담하기 위해 다시 들리는데 동의한다. ■ PA는 이 경우 미나에게는 공식적인 실행계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PA는 컴퓨터에 노트 형식으로 합의된 조치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사본 1부를 미나에게 제공한다. ■ 미나가 가고 PA는 다음 번 미팅 이전에 신속히 CCIS상의 기록부를 업데이트한다. PA는 대화의 핵심내용을 기록하고 합의된 조치는 굵은 점을 찍어 표시한다.
집행	■ 미나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일정한 정보에 접근한다. 집에서 미나는 부모와 함께 관련정보를 살펴보고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에 접근한다. 미나와 그녀의 부모는 미나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3곳에 대하여 합의한다. ■ 미나는 일주일 후 PA를 다시 방문한다. 미나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내린 결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검토	■ PA는 미나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이 -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보다 폭넓은 생활에 관한 것이든 - 있으면 다시 방문하라고 이야기해준다. PA는 이 것이 현재 미나에게 필요한 지원의 전부라는 사실에 만족한다. ■ 미나는 PA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나간다. PA는 대화의 핵심사항 및 결과를 다음 번 미팅 이전까지 CCIS에 기록한다.

요약: 이 경우, 미나의 욕구수준은 (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 ‘최소’ 수준이었다. 이 사례에 나타난 PA와 미나의 경우, 전체 APIR 과정은 1주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졌다. PA 업무는 두 차례의 짧은 대면적 미팅과 기록 업데이트에 소요된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례연구 2 - 칼튼(Carlton) : 13세, 9학년 학생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의뢰	■ 칼튼은 학년주임에 의해 학교 PA에게 의뢰되었다. 의뢰서는 칼튼에 대한 우려를 상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지난 수 개월간 칼튼의 지각과 불규칙적인 출석과 관련되어 있다. 칼튼은 의뢰사실을 알고 있으며, PA를 만나보는데 동의했다.
사정	■ 칼튼과의 미팅에 앞서, PA는 칼튼의 학적부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칼튼이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3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칼튼은 능력과 열정을 두루 갖춘 좋은 학생이었으며, 음악과 드라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PA는 칼튼과 미팅 시간을 정한다. 칼튼이 코넥션즈와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PA는 코넥션즈가 무엇이고 PA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비밀준수 규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칼튼은 PA와 같이 일을 진행하기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하고 기록부가 CCIS상에 기록되는 것에도 동의한다. ■ PA는, 사정 기록관리표의 18개 요인을 엄두에 두고, 몇 가지 가벼운 예비질문을 던지면서 긍정적인 참여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우선, PA는 칼튼의 우수한 학과 성적과 음악 및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칼튼은 학교 음악클럽에 소속된 적이 있었으나 이 활동은 불행히도 담당교사의 전근과 함께 끝이 났다. ■ 미팅이 끝나갈 무렵, PA는 칼튼에게 자신이 의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칼튼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 몇 차례 지각한 것 때문일 것이라고 답변한다. PA는 칼튼이 왜 지각을 했는지를 밝히고자 시도했으나, 그의 답변은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PA가 더욱 상세한 내용을 밝히려 하자, 칼튼은 입을 다물고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PA는 칼튼에게 그의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은지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칼튼이 이에 동의한다. ■ PA는 보다 긍정적인 문제로 대화를 전환하고 칼튼에게 드라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 PA는 칼튼에게 미팅이 10분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밖에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다. 칼튼은 없다고 대답한다. ■ 지금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PA는 칼튼의 욕구수준이 (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 ‘지원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계획	■ PA가 드라마 그룹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것과 칼튼이 3일 이내에 다시 PA를 찾아오겠다는 것에 서로 동의한다. ■ PA는 대화의 주요 사항과 대화의 결과를 기재한다. 이 기록은 금일 업무종료시점에 기록시스템에 추가될 것이다.
집행	■ PA는 드라마 그룹에 관한 세부 정보를 얻고, 이를 칼튼에게 제공할 준비를 갖춘다.
사정	■ PA는 칼튼의 학년 담임교사와 이야기 한다. 학년 담임교사는 칼튼이 10학년 남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칼튼에게 질문하자 칼튼은 이를 부인했다고 했다. 칼튼은 3일 후 자신의 다음 번 미팅에 참석한다. ■ PA는 칼튼에게 드라마 그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칼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 ■ 미팅 중간에, PA는 일련의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칼튼이 - 오늘은 대화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 -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PA는 칼튼이 확실하게 총체적인 사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8개 요인의 전 범위를 염두에 둔다. 현재, 18개 요인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PA는 일부 분야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록해둔다.
계획	■ 칼튼과 PA는 일주일 후 다음번 미팅을 갖기로 합의한다. 칼튼은 일주일 후 자신의 다음 번 미팅에 참석한다.
사정	■ 의뢰서로부터 얻은 정보, 학년담임교사와의 논의 그리고 칼튼과 미팅에서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PA는 현재 칼튼의 핵심문제는 그의 자부심과 교우관계 - 칼튼의 출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칼튼의 욕구수준은 여전히 '지원적' 수준으로 분류된다.) ■ PA는 사정기록관리표를 소개하고 다음의 요인에 관하여 함께 논의한다: 정체성 및 자아상,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정서적 안정. 이들은 기록관리표 키트용지 위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부분적인 기록관리표를 작성한다. ■ 논의 도중, 칼튼이 마음을 열고 PA에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 그러나 누가 괴롭히는지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획	■ 칼튼은 PA가 자신을 학교 폭력근절 프로젝트인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Safe and Sound) 프로젝트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6학년 후원자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칼튼은 PA가 자신의 학년담임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PA가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학년주임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는데 만족한다. 이들은 칼튼이 자신이 6학년 후원자와 첫 번째 미팅을 가진후 PA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한다. ■ 이들은 사정결과 및 자신들의 대화중 핵심 사항을 토대로 하여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PA는 컴퓨터 상의 비밀번호로 보호된 구역에 실행계획을 저장하며 사본 1부를 칼튼에게 준다. 칼튼은 실행계획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프로젝트 후원자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집행	■ PA는 칼튼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프로젝트의 팀과 미팅을 준비한다. 칼튼은 이 미팅에 참석하고, 한 명의 후원자에게 배정되어 이들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 PA는 칼튼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린다. 칼튼 엄마는 칼튼이 원하는 바를 지지하고, 그가 자신의 6학년 후원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 동의한다. PA는 또한 학년주임에게 이러한 상황을 피드백한다. 칼튼은 4번째(그리고 현재로서는 최종) 미팅에 참석한다.
검토	■ 자신의 6학년 후원자와 미팅 후, 칼튼은 PA를 다시 방문한다. 칼튼은 보다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PA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6학년 후원자는 모든 훈련을 받았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 시스템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만족한다. ■ 칼튼의 진전사항을 강조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칼튼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들은 함께 사정 기록관리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 이들은 또한 진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칼튼의 실행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진행중인 활동을 개괄적으로 기술했다. ■ PA는 현재 칼튼이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지만, 칼튼에게 필요하다면 어떠한 단계로든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개월 후 ■ PA는 학년주임을 통하여 확인한다 - 칼튼의 정식 등교 및 출석률 모두가 개선되었다. ■ PA는 복도에서 우연히 칼튼과 마주친다. 칼튼은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PA는 필요하다면 재차 자신을 찾아오라는 제안을 한다.

요약: 이 경우, 칼튼의 욕구수준은 (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 ‘지원적’ 수준이었다. 이 사례에 나타난 PA와 칼튼의 경우, APIR 과정의 주요 부분은 2주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나, 칼튼은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프로젝트와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PA는 필요에 따라 그의 진전사항을 관찰할 것이다. PA의 업무는 칼튼과 4차레미팅, 스태프 및 칼튼 엄마와 논의, 그리고 적절한 기록 유지를 필요로 했다.

사례연구 3 - 에드(Ed): 17세, 교육, 직업 또는 직업훈련 중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있음.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의뢰	■ 에드는 따분함을 느끼던 어느 날 오후 지역 청소년 센터에 들른다. 그는 여기에서 지역사회 PA를 만났는데, 그는 우연히도 정보 관련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잡담을 나누다가 PA는 다음 날 코넥션즈센터로 찾아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에드를 설득한다. 에드는 PA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는 것에 동의한다. 에드는 다음 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에 센터를 찾는다.
사정	■ PA는 코넥션즈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자신이 에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비밀유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한다. PA는 꺼리지 않는다면 동의서 양식에 서명해 줄 것을 에드에게 요청했으나, 에드는 자신은 그 어디에도 서명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는다. ■ 이들은 지금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의한다 - PA는 에드와 효과적인 개입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에드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PA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에드는 자신의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시간의 대부분을 여자 친구와 보낸다. 여자 친구는 18세로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에드는 학교를 혐오했고 아무런 수료도 없이 학교를 떠났다 - 실제로 에드는 지난 몇 년간 학교를 많이 가지 못했다. 학교에 가기만 하면, 그는 늘 싸움과 말썽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겪는다. ■ 지금까지 증거를 토대로, PA는 에드의 욕구수준(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은 '집중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	■ 잠시 후 - 에드는 친구 몇 명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 중에 PA를 만나러 다시 오겠는데 동의했다. ■ 에드는 다음 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행	■ PA는 청소년 센터를 통해 에드와 연락을 취했고 청소년 센터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 3개월 이상동안에 걸쳐, 7차례의 미팅약속을 했다 - 에드는 4번 나타났다.
사정	■ 이어지는 미팅 도중, PA는 이야기를 기꺼이 경청해주고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계속해서 에드의 믿음과 존경을 얻는다. 에드는 놀라지만, 자신이 몇 차례 미팅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PA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활동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 3번째 미팅에서 에드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PA가 이야기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4번째 미팅에서 PA는 사정 기록관리표 작성용 키트를 소개하고 이것이 에드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설명한다. 에드는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 종전의 미팅은 당시 에드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는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에드는 지루하고 모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위한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사정	결국, PA는 우선 ‘참여’, ‘성취’, ‘태도 및 동기’, 그리고 ‘기대’의 요인을 에드와 함께 살펴본다. 강점에도 역시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PA는 또한 ‘친교’ 및 ‘약물사용문제’의 분야도 살펴본다. PA는 에드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련의 적절한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의 일부는 제시문 리스트에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일부는 에드에게만 특정하게 관련을 갖는 것이다.) PA는 에드가 지나치게 많은 서류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팅 중에 그저 단순히 받아 적기만을 계속하고 원형 기록관리표 시트에만 집중했다. 에드의 허락을 얻어, 미팅 이후에, PA는 자신이 보다 실질적인 기록 및 증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기록관리표 작성키트를 사용한다. 그는 다음 번 미팅에서 이를 통하여 에드와 이야기를 나눈다. ■ 4번째 미팅에서 18개 요인 중 6개가 논의되었고, 합의되었으며 기록관리표 상에 표시되었다.
계획	■ 부분적으로 완성된 사정 기록관리표를 토대로, 에드와 PA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지역적으로 합의된 양식을 사용) ■ 이들은 에드가 지역 직업훈련소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러 간다는데 합의한다. 이 과정은 건설기술 - 에드가 사정 기간 동안 관심을 표명했던 - 기초 과정이다. ■ 미팅 후, PA는 에드의 모든 기록을 업데이트한다.
집행	■ PA는 인터뷰에 에드와 동행하고 에드는 해당 과정에 입학이 허락된다. ■ 에드는 이 과정에 다니기 시작했고 최초2개월간 출석한다.
평가	■ PA는 에드와 검토 미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소를 방문한다 - 에드는 거기 없었고 지난 4일간 출석하지 않았다.
사정	■ 직업훈련 제공자와 에드에 대해 특정한 사정을 수행했으며, PA는 이를 자신의 사정 기록관리표에 포함시켰다. 사정결과는 에드가 아슬아슬하게 문맹을 벗어났으며, 언어와 계산 기술에 대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5일 후, PA는 가까스로 에드와 연락이 닿아 에드를 만난다. ■ 에드는 훈련과정의 다른 친구 몇 명과 술을 마시러 나갔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하나가 에드를 멍청이라고 불렀고, 에드는 그를 때려눕혔다. 더 이상의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에드는 과정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 이들은 사정기록관리표를 계속 작성한다. 이번에는 ‘기본기술’, ‘핵심기술’, ‘생활기술’ 및 ‘정체성 및 자아상’에 초점을 맞춘다. PA는 사용된 모든 언어가 에드에게 적절한 것인지 확인한다.
계획	■ 에드와 PA는 가장 최근의 사정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에드가 새로운 과정에 자리를 얻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문자해독률, 언어 및 계산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PA와 함께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 에드는 또한 비록 그가 자신의 엄마와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밝힌다. - 결국 PA와 에드는 생활기술 및 독립적 생활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APIR 과정 중 관련부분	조치
계획	■PA는 청소년 센터가 생활기술 및 독립을 위한준비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실행계획에 추가된다.
집행	■PA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소개 받고 이를 에드의 실행계획에 추가한다. (에드의 동의를 얻어서). 에드와 PA는 다음 6주간 주1회씩 만난다. ■이들은 실행계획에 합의된 문제에 관한 활동을 계속 수행한다 ■에드는 기본기술과정에 참석한다. ■이들은 함께 사정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에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평가	6주차 말 ■에드의 허락을 얻어, PA는 과정 지도교사와 이야기를 나눈다.
사정	■PA와 에드는 에드의 사정 기록관리표를 검토한다. 논의를 통하여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호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들은 이미 이루어진 발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새로운 기록관리표를 작성한다. ■새로운 기본기술 사정을 에드 동료를 통해 실시했고, 그 결과는 작지만 꾸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에드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는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획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드와 PA는 자신들의 미팅 회수를 매3주마다 1회씩으로 줄인다 -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이를 더더욱 줄이기 위한목적이다.
집행	■에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정에 참여하고 PA와 함께 생활기술 및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	■PA와 에드는 매6주마다 사정 기록관리표를 검토하며, 발전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를 적절하게 재작성한다. 이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 실행계획을 조정한다. PA는 추가 6개월의 기간 동안 에드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한다. ■에드는 자신의 과정을 이수하고 레벨 1의 NVQ 과정과 연관된 건물의 일자리에 지원한다. 에드와 PA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코백션즈센터를 찾을 수 있다는 동의와 함께 그들의 정기적 미팅을 중단한다.

요약: 이 경우, 에드의 욕구수준은 (의무적 요건에 정의된 바에 따라) ‘집중적’ 수준이었다. PA는 9개월의 기간 동안 일련의 정기적 미팅 및 에드와의 직접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PA는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요한 기록을 유지했다.

(5) 18가지 요인들에 대한 대안표제(alternative headings)와 제시문(suggested prompts)

- 현행 요인 표제: 참여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학습과 여가
- 제시문들:
 -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요?
 - 실외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운동, 음악)? 그 밖에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학교/수업을 빠진 적이 있습니까?
 - 언제 지루함을 느끼나요?
 - 어떻게 긴장을 풀니까?

- 현행 요인 표제: 성과물들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성공
- 제시문들:
 -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당신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행합니까?
 - 성취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현행 요인 표제: 기본 기술들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읽기, 쓰기와 수학
- 제시문들:
 - 당신의 읽기와 쓰기는 어떻습니까?
 - 무엇을 읽습니까?
 -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나요?
 - 당신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나요?
 - 무엇이 당신에게 읽기와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나요?

- 현행 요인 표제: 주요 기술들
- 대체 요인 표제: 주요 기술들
- 제시문들:
 - 당신은 팀의 일원입니까?
 - 만일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나요?
 - 당신은 어떻게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하게 하나요?
 - 당신은 결정을 잘 내립니까?
 - 당신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 현행 요인 표제: 인생 기술들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삶의 기술들
- 제시문들:
 - 당신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 무엇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 당신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 한잔의 차를 끓이거나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 만일 당신이 혼자 산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현행 요인 표제: 소망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소망들
- 제시문들:
 - 미래를 위한 당신의 꿈들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 당신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 당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 현행 요인 표제: 태도와 동기부여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태도
- 제시문들:
 - 매일당신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어떤 일을 해낼 때 당신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일은 끝을 냅니까?
 - 당신은 도전들을 즐깁니까?
 - 필요를 느낀다면, 어떻게 당신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 현행 요인 표제: 정체성과 자아상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나요?
- 제시문들:
 - 무엇이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기운나게 하나요?
 - 당신의 친구들/ 가족/ 다른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나요?
 -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웃나요?
 - 당신은 자신의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 당신 자신에게서 바꾸고 싶은 점이 있다면?

- 현행 요인 표제: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
- 제시문들:
 - (집, 학교, 그밖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 당신은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 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나요?
 - 당신은 친구들과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까?
 -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부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 현행 요인 표제: 부모들/보호자의 포용력
- 대체 요인 표제: 누가 당신을 돌보니까?
- 제시문들:
 - 누가 당신을 돌보나요?
 - 그들에게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습니까?
 - 당신은 그들과 잘 지냅니까?
 -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 현행 요인 표제: 가족사와 기능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가족
- 제시문들:
 - 누가 당신의 가족입니까?
 - 당신의 가족은 이 지역 출신입니까?
 - 당신은 당신 가족의 어떤 점이 좋습니까?
 - 당신은 가족들과 무엇을 하나요?
 - 당신은 가족에 대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 당신은 가족중에 누구를 돌보나요?

- 현행 요인 표제: 주거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집
- 제시문들:
 - 당신이 집으로 여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당신이 잠자는 곳인가요?
 - 누가 거기서 당신과 함께 사나요?
 - 당신이 사는 곳이 좋습니까?
 - 집에서 바꾸고 싶은점이 있다면?
 - 차라리 다른곳에 살고 싶나요?

- 현행 요인 표제: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요인들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이 사는 곳
- 제시문들:
 - 당신이 이 사는 곳/ 지역은 어떻습니까?
 - 당신은 누구랑 잘 어울립니까?
 - 밤에는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 지역내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고 싶은 모든 장소들에 갈 수 있나요?
 - 그 지역에서 향상시키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현행 요인 표제: (재)범죄의 위험
- 대체 요인 표제: 당신과 법
- 제시문들:
 - 당신의 지역에 범죄가 많습니까?
 -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 당신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쉬운 일인가요?
 - 무엇이 당신이 법을 어기는 것을 막았나요?

- 현행 요인 표제: 약물복용 이슈들
- 대체 요인 표제: 마약과 알콜
- 제시문들:
 - 마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당신의 지역에서 마약이 큰 문제입니까?
 - '마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쉬운가요? (청소년이 정보를 줄 경우에만 사용한다)
 - 당신은 마약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종류?
 - 언제 마약을 사용했으며, 누구와 했습니까? (청소년이 정보를 줄 경우에만 사용한다)

- 현행 요인 표제: 육체적 건강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건강
- 제시문들:
 -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성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 당신은 더 건강해져야 합니까?
 - 누군가가 당신이 날씬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줍니까?
 - 의사/치과의사에게 간 적이 있습니까?
 - 당신은 날씬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약이 있나요?

- 현행 요인 표제: 감정적 웰빙
- 대체 요인 표제: 당신의 감정들
- 제시문들:
 - 당신은 슬프다기보다는 행복한가요 아니면 행복하다기보다는 슬픈가요?
 -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 이런 감정들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 당신은 괴롭히는 것을 본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4. 민간부문과의 협약⁷⁾

1) 코넥션즈 민간 부문 포럼 (CVSF) 의뢰 약정

코넥션즈는 13-19세의 모든 청소년을 (LDD 25세까지) 대상으로 조언, 지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전략의 하나이다. 코넥션즈 서비스는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10대 생활에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단 없는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코넥션즈 민간 부문 포럼(이하 CVSF)은 버밍엄 및 솔리힐의 민간 부문이 코넥션즈의 전략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7) Connexions. Birmingham & Solihull. Connexions Voluntary Sector Forum(CVSF) Terms of Reference.

(1) 목적

- 코넥션즈 전략 형성을 위하여 민간 부문과 코넥션즈 간의 협력을 촉진, 발전
- 버밍엄 및 솔리힐의 민간 부문에 코넥션즈 정책 및 전략적 발전에 관한 정보, 지침 및 지원 제공
- 버밍엄 및 솔리힐의 민간 부문을 대신하여 코넥션즈 위원회 및 지역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이들 위원회를 통한 로비 및 옹호활동 전개
- 버밍엄 및 솔리힐의 민간 대표성 확보
- 코넥션즈 위원회 및 지역관리위원회에서의 대표성 확보
- 포럼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스태프 지원

(2) 연례 사업회의(Annual Business Meeting)

연례 사업회의(Annual Business Meeting)는 매년 3월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포럼, 코넥션즈 및 협력단체 구성원에게 지난 연도의 활동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유권자(선거권자) 내에서 버밍엄과 솔리힐 지역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포럼의 대표자선임. 여기에는 아래의 직위가 포함된다.
- 1년 임기의 의장 및 부의장
- 지역관리위원회 및 코넥션즈 위원회의 포럼 대표자. 임기는 위에 기술한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3) 민간 부문 회의(Voluntary Sector Forum Meetings)

- 이 회의는 연간 최소 4회 이상 개최된다.

- 포럼은 개방적 가입정책을 장려하여 다양한 단체들의 가입을 촉진한다.
-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한다.
- SVSF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경우 분과 그룹이 조직된다. 이러한 분과 그룹은 다음 번 CVSF 총회에 보고한다.
- 가능한 회의는 버밍엄과 솔리힐의 개최장소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 단체당 1명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 특정 구성원이 포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을 대신하여 소속 단체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개인 상담자(Personal Advisor)여서는 안 된다.)

(4) 민간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은 효과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며 유능하고 헌신적인 동시에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① 효과적 (정보 수취 및 이해)

- 관료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정보가 구성원에게 전달된다.
- 포럼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올바른 실무 관행 수립 및 포럼이 작성하는 자료에서 일반 영어의 사용을 추진한다.
- 다른 우선적 수단이 명시되지 않는 한, 구성원에게 그리고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발송하고 수취함에 있어서 e-메일이 활용된다.
- e-메일 회람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정보 및 관점 등의 교류를 권장한다.

② 대표성 (버밍엄 및 솔리힐 민간 부문 및 지역사회 부문에 대한 책임)

- 구성원은 청소년에 헌신하는 버밍엄 및 솔리힐 민간 부문의 대표자이다.

③ 능력 (환경을 이해)

- 포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정보의 의도 및 목적은 구성원들이 포함되고 그 역할의 범위 내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헌신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회의는 예정된 우선적 안건을 처리하며 정해진 시간에 개최하여 정해진 시간에 폐회한다. 또한, 포럼 구성원은 해당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안건이 되는 사항은 포럼의 과업을 진전시킨다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자세로 처리되어야 한다.
- 논평은 현실에 부합되고 간결하며 논의 중인 안건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동료들의 견해 및 의견은 경청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문제 및 결정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재론되지 않는다.
- 구성원들은 반-억압적 실무 강령(anti-oppressive practice

statement)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은 참석할 수없는 경우 사과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성과: 적극적, 포괄적, 참여적 및 건설적

-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⑥ 검토:

포럼은 그 역할을 연간 단위로 검토한다.

(5) 의장의 역할

필요한 경우 의장은 조직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포럼의 효과적 운영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 포럼이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된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 회의를 주재하고 촉진
- 회의간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확보
- 의장을 대리, 보좌하기 위하여 부의장이 선출된다.

(6) 기회균등

CVSF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연령, 사회계급 및 종교나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CVSF는 그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다짐한다.

2) 의뢰서 체크리스트 서식⁸⁾

(1) 코넥션즈에 의뢰 (내부의뢰 포함)

의뢰서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의뢰 사유
- 의뢰기관이 코넥션즈로부터 바라는 사항
- 의뢰 대상자(client)의 기본적 인적 사항
-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 다른 기관의 관여
-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 (스태프 및 청소년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보장 서류 및 정보의 첨부 여부
- 의뢰 대상자 본인의 서명 - 서명이 없을 경우, 의뢰 대상자가 의뢰에 동의했다는 증빙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PAC가 의뢰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증빙의 제공을 요청)
- 명확한 의뢰자(referrer) 세부 인적 사항

(2) 코넥션즈로부터 의뢰 (외부단체로의 의뢰)

의뢰서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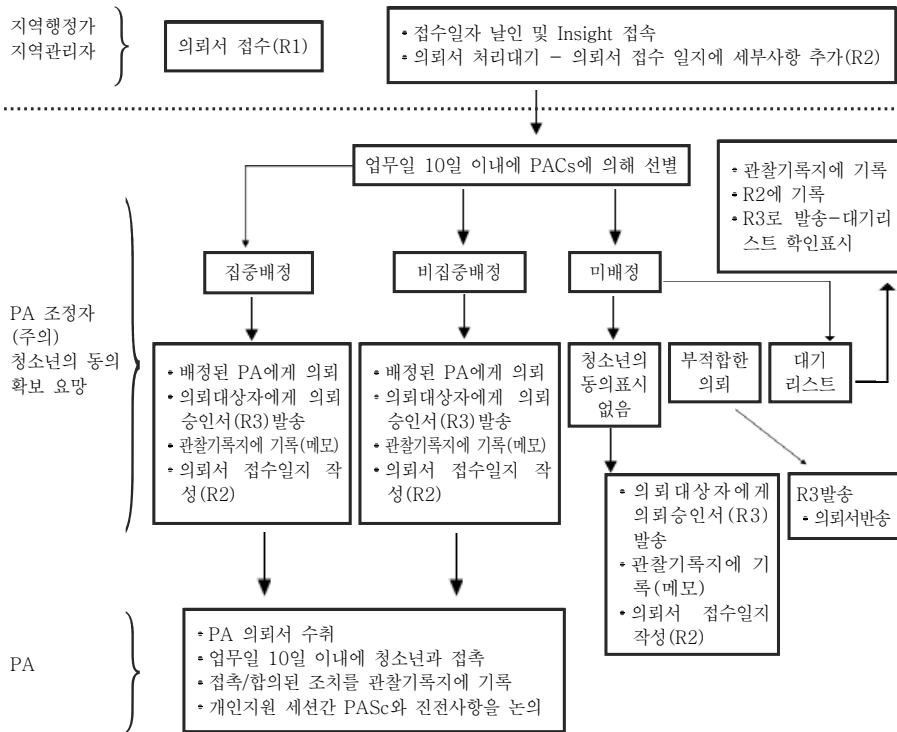
- 의뢰 사유
- 의뢰 대상자 기본적 인적 사항
- 의뢰 일자 및 당신 및 청소년의 서명
- 표면적인 보장 정보만 포함되었는지 여부

당신은

- 조직의 자체 의뢰서양식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 (조직에 의뢰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소년의 욕구를 평가하고 (APIR 평가 체계) 이 정보를 포함시켰는가?
- 스태프 및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켰는가?
- 의뢰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접촉한 ‘자동 발신 통화’ (Call forward) 일자를 관찰기록지에 기록했는가?
- 의뢰서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관찰기록지에 업데이트했는가?

8) Connexions(2005). Birmingham & Solihull. Referral Procedure.

(3) 의뢰접수 흐름도



<그림 6 > 의뢰접수 흐름도

5. 블랙컨츄리 사례

1) 블랙컨트리 코넥션즈 센터 전략서⁹⁾

(Black Country Connexions Connexion Centre Strategy Document)

(1) 목적

문서의 목적은 블랙컨트리(Black Country) 지역 전역에 걸친 코넥션즈 센터 확장을 위한 전략적 체계를 정립하는데에 있다. 코넥션즈 센터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발을 위하여 2001년 다기관 실무 그룹(multi-agency working group)이 통합 설치되었다. 본 문서는 BCCx 관내(Premises) 전략과 함께 숙지되어야 한다.

(2) 개요

코넥션즈 센터는 각급 학교, 컬리지, 주요 도시 및 지역사회에 코넥션즈의 가시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블랙 컨트리 각 주요 지역 소재의 청소년들이 센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향후 3년간 BCCx(이하BCCx)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코넥션즈 센터를 확장하고자 한다.

-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12 내지 16개소의 원-스톱 센터(일괄 서비스 제공 센터, One-stop Center). 센터는 지역 전역에 걸쳐 코넥션즈의 주요 거점을 제공하며 다기관 협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각 지방 자치단체 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 중심가에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BCCx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다.

9) Connexions(2003). Birmingham & Solihull. Black Country Connexions : Connexion Centre Strategy Document.

-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최대 50개소 접촉 센터(Access Points). 센터는 BCCx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접근을 제공한다. 접촉 센터는 각 급 학교, 컬리지,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전문가 프로젝트에 설치된다.
-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100여 개소 이상의 정보 센터(Information Points). 센터는 각 지역에서 BCCx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센터는 통상 청소년 클럽, 지역 회관 및 자원봉사단체 소재 장소에 설치된다.

(3) 코넥션즈 센터의 조직인증

각 지방 자치단체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관리위원회(Local Management Committees, 이하 LMC)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 및 청소년과의 파트너십과 본 전략서와 BCCx 관내(Premises) 전략의 지침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코넥션즈 센터의 조직인증과 함께 센터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코넥션즈 센터의 다른 유형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첨 A에 명시되어 있다.

코넥션즈 센터를 위한 BCCx의 자원배분은 BCCx 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역내 집행은 아래의 절차 및 원칙에 입각하여 LMC가 결정한다.

① LMC가 활용 코넥션즈 센터 운영 적격 확인 절차

1. 잠재적인 코넥션즈 센터의 운영주체가 제안서를 작성

LMC가 각급 단체로 하여금 표준 코넥션즈 센터의 제안서 양식(별첨 A 참조)을 작성하도록 권유한다. 제안서 유치 방법은 LMC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제안서 유치는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BCCx 예산주기를 따라야 한다.



2. LMC가 승인 추천서를 제출

LMC가 (위임을 받은 실무 그룹 또는 LMC 전체에 의하여) 아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제안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안서를 코넥션즈 SMT로 승인을 요청한다. 제안서가 거부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는 지역 코넥션즈 관리 또는 위임 받은 대표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지 받게 된다.



3. SMT가 특정 사안별 평가기준(Specific Thematic Criteria)에 입각하여 추천서를 심사

BCCx 고위 관리 팀(Senior Management Team)의 대표자들은 추천된 제안을 심사하여 제안서가 코넥션즈 센터의 원칙 및 세부규정에 상세히 명시된 사안별 평가기준에 (마케팅, 센터 건물, 서비스 품질 등) 부합되는지를 확인한다. 확인된 문제점은 지역적 해결을 위하여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를 경유하여 LMC로 환송된다. 모든 코넥션즈 센터는 인정된 코넥션즈 센터로서 그 운영을 개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SMT ‘지역사회’ 사안 지도부(SMT ‘Community Theme Lead)로부터 인증서(approval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재정적으로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과 관련된 코넥션즈 센터의 경우 반드시 BCCx 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BCCx 위원회가 최종 승인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재원과 관련된 코넥션즈 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적합성, 다-기관 협력 업무수행 및 브랜딩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BCCx 위원회에 의해 재가된다.

② LMC에 의한 활용을 위한 코넥션즈 센터 조직인증 원칙

- ①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는 지역 사회 전역에 걸쳐 코넥션즈의 존재 및 활동 거점을 제공한다.
- ② BCCx 코넥션즈 센터 자원배분의 주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코넥션즈에 주요 ‘원-스톱’ 센터의 다-기관을 설치하는데 배정한다.

- ㉔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경우, BCCx 코넥션즈는 주요 도시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를 개발하여, BCCx 서비스의 지역 내 제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㉕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는 새로운 다-기관 공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이 하나로 합쳐서 창설한 신규 프로젝트일수도 있고 이미 설립된 기관 공조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일수도 있다. 코넥션즈가 제공하는 재정 및 인적 자원의 주요 부분을 비롯하여 협력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주요재정 및 인적 자원은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코넥션즈와 협력 단체 재정적 기여의 비율은 코넥션즈 BCCx 구내(Premises) 전락서에 명시된 지침의 한도 내에서 각 LMC가 지역별로 결정한다. 목표가 블랙 컨트리전역에 걸쳐 12 내지 16개소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LMC는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개발될 ‘원-스톱’ 센터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BCCx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에 배분되는 자원의 양
 - 협력단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추가 가용자원의 수준
 - 다-기관 공조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분산 및 지역적 요구 정도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포함)
 - 제안된 센터가 특히 다-기관 공조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코넥션즈 ‘원-스톱’ 센터 관련 세부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안된 ‘원-스톱’ 센터의 유지 가능성
 - 제안된 센터가 BCCx의 브랜딩(branding)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접근 가능성 및 접근에 대한 장애 요인과 관련된 청소년들로부터의 피드백

㉔ 코넥션즈 '접촉 센터' 통상 협력 단체의 관내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코넥션즈 '접촉 센터'를 통하여 광범위한 다양성을 갖는 전문가 환경 속에서 (예컨대, 각급 학교, 컬리지,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단체, 직장, 노숙자 보호기관, 직업교육 제공자 등) 코넥션즈 서비스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다. 코넥션즈 '접촉 센터'의 재원 및 인력은 주로 협력단체에 의해 제공될 예정이다.

LMC는 코넥션즈 '접촉 센터'가 그 위상을 확보하고 코넥션즈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동 센터에 대하여 소규모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일회성(one-off) 협력 개발보조금이나 개인 상담가(Personal Advisor, 이하PA) 인력의 시간 할애와 같은 현물(in-kind) 형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체 인력을 협력기관 PA로 훈련시키는 코넥션즈 '접촉 센터'는 현 네트워크로부터의 이점과 확대되는 개인상담가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되는 최상의 실무경험이란 가치보상의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목표가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쳐 최대 50개소까지의 코넥션즈 '접촉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현재 관련된 단체로서 코넥션즈의 개인 상담가를 접촉 할 수 있는 각급 학교, 컬리지 및 기타 단체의 수를 고려해 보면 목표 수치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 각 LMC는 특정 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코넥션즈 '접촉 센터'가 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구로 존속한다. LMC는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 BCCx 코넥션즈 '접촉 센터'에 배분되는 자원의 양
- 협력단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추가 가용자원의 수준
- 다양한 '접촉 센터'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분산 및 지역적 요구 정도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포함)
- 제안된 센터가 특히 자격을 갖춘 개인 상담가 접촉을 비롯하여 코넥션즈 '접촉 센터' 관련 세부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안된 ‘접촉 센터’의 유지 가능성
- 제안된 코넥션즈 ‘접촉 센터’가 BCCx의 브랜딩(branding)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접근 가능성 및 접근에 대한 장애 요인과 관련된 청소년들로부터의 피드백

① 코넥션즈 ‘정보 센터’는 코넥션즈 ‘접촉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협력 단체 (시간제 청소년클럽이나 소규모 청소년 종교시설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 내에서 게시판을 통하여 코넥션즈 정보를 제공한다. BCCx의 배포 능력과 결부하여, 코넥션즈 정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이 주요한 제한 요인이다.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쳐 최대 100여 개소의 코넥션즈 ‘정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잠재적으로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의 수를 감안하면, 목표 수치를 가볍게 초과할 수 있다. 각 LMC는 특정 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코넥션즈 정보 센터’가 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구로 존속한다. LMC는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 BCCx 코넥션즈 ‘정보 센터’에 배분되는 자원의 양
- 협력단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추가 가용자원의 수준
- 다양한 ‘접촉 센터’에 대한 지리적 분산 및 지역적 요구 정도
- 제안된 센터가 특히 정보를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코넥션즈 ‘정보 센터’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안된 ‘정보 센터’ 유지 가능성
- 제안된 코넥션즈 ‘정보 센터’가 BCCx의 브랜딩 요건을 충

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접근 가능성 및 접근에 대한 장애 요인과 관련된 청소년들로부터의 피드백

㉔ 코넥션즈 구내 전략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코넥션즈 센터 개발에 배분되는 재원의 비율
- 코넥션즈 센터의 3가지 유형 사이에 권고되는 비율
- 각 유형의 코넥션즈 센터의 경우, BCCx가 부담하는 코넥션즈 센터 총 운영비의 비중 및 외부 재원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는 비중
- 코넥션즈 센터와 관련된 계약체결, 임대, 소유권 및 법률적 요건

(4) 코넥션즈 센터의 발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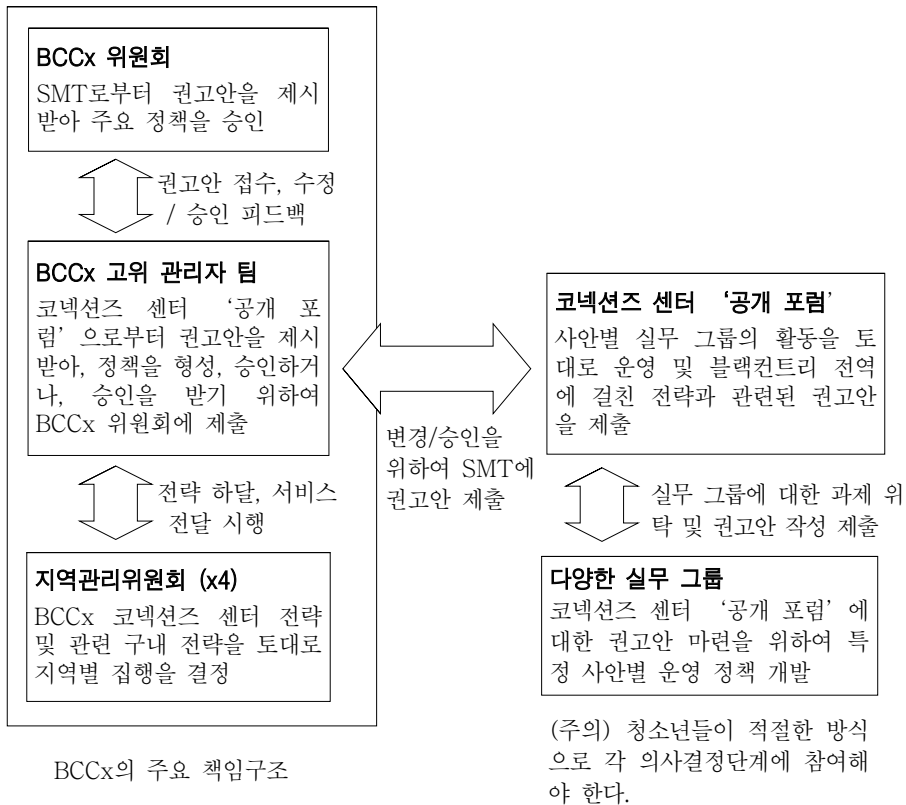
코넥션즈 센터 전략은 BCCx ‘지역사회 핵심 사안 분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 관리자(Senior Manager)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은 여타의 몇몇 핵심 사안 분야에 - 예를 들어, 재정, 구내, 양질의 서비스, 참여 청소년, 마케팅 및 홍보, 교육훈련-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야는 다른 관리자의 책임사항이다. 코넥션즈 센터 ‘공개 포럼’ (Open Forum)은 매 분기별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코넥션즈 센터 개발, 설치의 전반적 진척사항 보고
-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실행사례 제시
- 코넥션즈 센터 서비스 전달의 여타 측면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 제공 (예: 관리정보와 관련된 요구사항, 청소년 현장의 개발 등)
- 운영 실무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회 창출

- 향후 코넥션즈 센터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합의
- BCCx SMT에 대하여 향후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코넥션즈 센터 전략의 권고. [주의] 코넥션즈 센터 ‘공개 포럼’은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나 지역의 자원배분전략을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지역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운영전략은 BBCx SMT에 의해 승인된다. 주요 전략적 정책은 BBCx 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필요가 있다. 실무 그룹은 코넥션즈 센터 운영전략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실무 그룹은 특정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일 수도 있고 다른 핵심 사업 분야의 일부인 기존의 집단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코넥션즈 센터 ‘공개 포럼’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들 실무 그룹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승인을 얻기에 앞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코넥션즈 센터 ‘공개 포럼’에 회부되어 자문을 거치게 된다.

위 과정은 아래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 블랙컨트리 코넥션즈 공개포럼과정

2)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¹⁰⁾

(1) 아동보호정책 성명서

블랙 컨트리 코넥션즈(이하 BCCx) 서비스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요구에 즉시 응답하는 진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BCCx는 청소년^[1]들이 10대에서 성인으로 성장· 발전하는 시기 동안 각각의 청소년들과 함

10) Connexions. Birmingham & Solihull. Black Country Connexions : Child 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s.

10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께 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BCCx는 모든 청소년이 자부심 있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이 취약하게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BCCx 위원회 및 고위 관리 팀은 청소년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태프 구성원[2] 각자가 청소년 보호라는 관련 분야의 기대 및 요구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결의한다.

BCCx는 또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여타 기관이 계약이 완결되기 이전에 현재 기관이 접촉하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바 있는 행동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모든 서비스의 수준 합의(Service Level Agreement)는 또한 위의 정책 및 그와 관련된 절차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이 정책 성명서, 관련 절차 및 실무 강령, 그리고 제공될 교육훈련, 이 모두는 접촉 중인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해서 관리자 및 스태프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명서가 관리자나 스태프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의 결여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위 성명서 등의 성공적인 집행 및 운영은 스태프 구성원이 항상 전문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에 좌우된다. 우리가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우리 조직을 이용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위의 성명서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특정 상담사가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조직의 특성을 악용하여 청소년을 학대할 가능성은 올바른 실천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서 BCCx를 보호한다.

BCCx의 접근방법은 영국 법률 및 지침 그리고 국제협약[3]의 원칙에 근거하며 이를 반영하고 있다.

- 가장 궁극적인 고려사항은 청소년의 복지이다.
- 모든 청소년은 나이, 장애,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정체성과 상

관없이 위해(危害)나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또한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관내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절차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 ① 아동(children)은 12세 이하, 청소년(young people)은 12세 초과 18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다만 본 문서의 목적상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 ② 본 문서의 목적상 스텝(staff)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하를 막론하고 BCCx를 위하여 혹은 그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③ 1989년 아동법 (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8년 인권법
1999년 아동보호법
2000년 형사 사법 및 소송법
2000년 성범죄법 (개정)
아동보호를 위하여 힘을 모읍시다, 보건부, 1999
결핍 아동 및 해당 가족의 사정을 위한 체계, 보건부, 2000
청소년 및 취약자 보호, 이민국, 2000
UN 아동인권협약

(2) 아동보호절차

① 서론

위의 정책 성명서는 스텝 구성원들이 그 활동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BBCx의 입장 및 기대를 규정하고 있다.

본 절차는 위해·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한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해져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의무적인 조치로 간주해야 하며 스태프 구성원이 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관리자는 청소년에 대한 특정스태프 구성원의 행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우려가 보여지는 경우, 경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수행된 조사의 결과 또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결정과는 무관하게 본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스태프 구성원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학대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청소년이 학대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거나 혹은 학대를 받았거나 현재 학대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스태프 구성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행동이 특정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이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BCCx의 관리자는 아동보호의뢰(child protection referrals)가 중요한 조치를 대표하며 특정 스태프 구성원이 그에 대한 재확인, 지원 및 지도를 받기 위하여 팀장 또는 지역 코백션즈 관리자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스태프 구성원에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조치든 간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특정 청소년이 현재 또는 과거에 학대를 받았는지 또는 특정인이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스태프 구성원의 책임사항이 아니다. 비록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스태프 구성원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

고 있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는 매우 복잡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하에서 제시되는 절차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스태프 구성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된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그 실패는 추정된 모든 사건(alleged incident)의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는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 또한 개인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학대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아무런 보고도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또는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BCCx의 운영진은 선의에 입각하여, 특정 청소년이 현재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거나 자신의 동료가 청소년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신고하는 개인을 지원한다. 관련 사건 이후 외부 자문을 요청하는 스태프 구성원은 적절한 외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스태프 구성원은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스태프 구성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 자신이 생각하기에 특정 청소년이 아래에 열거된 자에 의하여 학대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스태프 구성원
 -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 기타 개인
- 특정 청소년이 자신에게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 자신이 BCCx와 관련된 자의 청소년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행

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강령은 실무 강령의 형태로 지침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태프 구성원과 동료의 사실이 아닌 학대 혐의를 잘못 식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올바른 실천 활동은 특정인이 조직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BCCx를 보호한다.

스태프 구성원은 특정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직위에 있는 동안 해당 청소년과 어떠한 형태의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는 보호 권한이 있는 직위에 대한 권한 남용이자 동시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스태프 구성원 각자가 본 정책 및 그에 관련된 절차의 중요성을 확실히 숙지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관리자의 책임이다. 스태프의 개별 구성원 각자가 BCCx의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를 확실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들 스태프 구성원각자의 개인적 책임이다.

- ② 자신이 생각하기에, 특정 청소년이 아래에 열거된 자에 의하여 학대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할 절차

- 스태프 구성원
- 청소년의 가족 구성
- 기타 개인

BCCx는 그 스태프 구성원에 대하여 확립된 우수 실천사례 및 보건부 발행 지침 문서 ‘아동보호를 위하여 힘을 모읍시다’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에 규정된 학대의 정의 그리고 그 표시 및 징표를 근거로 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BCCx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스태프 구성원이 본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각 스태프 구성원 각자의 책임이다.

BCCx의 운영진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학대와 관련된 징표를 반영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인종, 장애 또는 성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대 사실의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숙사 시설(residential institution)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취약하며,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가 ‘일회성’ 사건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태프 구성원,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해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또는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일체의 우려는 본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조치든 간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있다.

스태프 구성원은 결코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태프 구성원은 결코 조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BCCx를 위해 또는 BCCx와 함께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경우

- 해당 청소년에게 우려하는 바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를 알려야 한다.
- 스태프 구성원은 사건의뢰서(Incident Referral Form)라는 의뢰 서식(별첨 참조)을 이용하여 사회 복지국(Social Services)에 당해 사례를 의뢰하고, 지역 SSD로 연락을 취하여 이러한 우려를 담당 공무원(duty officer)**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당 의뢰가 아동보호를 위한 의뢰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해당 청소년에게 담당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사실

을 통지해야 한다. 스태프 구성원은 의뢰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 및 지침을 얻고자 자신의 일선관리자와 해당 사례에 관해 논의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 지체 없이* 팀장에게 우려하는 상세한 이유와 통보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이미 취해진 일체의 조치사항을 알려야 한다.

* 팀장/지역코넥션즈 관리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자신의 팀장/지역코넥션즈 관리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내 동일 직급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팀장은 자신이 보고해야 할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는 해당 사건/상황의 최고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BCCx와 관련된 특정인이 특정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과 관련하여 그 우려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회 보장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으로부터 조언을 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BCCx의 최고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이 파견된 조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경우

- 해당 청소년에게 자신이 우려하는 바와 취하고자 하는 조치를 알려야 한다.

- 사건의뢰서라는 의뢰 서식(별첨 참조)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국에 사례를 의뢰하고, 지역 SSD로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우려를 담당 공무원 **에게 전달함으로써, 의뢰가 아동보호를 위한 의뢰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청소년에게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또한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스태프 구성원은 의뢰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 및 지침을 얻고자

자신의 일선 관리자와 해당사례를 논의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 지체 없이 자신의 팀장*(BCC)/LCM에게 자신이 우려하는 상세한 이유와 통보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이미 취해진 일체의 조치사항을 알려야 한다.
- 또한 해당 조직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신들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 예컨대, 아동보호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교사 (Senior Teacher).
- 이후 팀장은 자신이 보고해야 할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사건/상황의 최고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특정 청소년이 아래에 열거된 자에 의하여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스태프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취할 절차

- 스태프 구성원
-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 기타 개인

청소년들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에게 학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이유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청소년들이 학대 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할 경우, 주변에 알리지 말고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들은 더 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학대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은 자신과 가깝고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 청소년이 자신에게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를 사랑하지만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보기 드문 경

우가 아니며,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보호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청소년들이 두려워하는 교사나 상담자처럼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이든 학대 사실을 밝히는 일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서 스태프 구성원의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 청소년이 자신에게 학대 사실을 밝히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야 할 일:

- 침착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
-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경청할 것.
- 진술된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그 진술이 분명한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확히 밝힐 것.
- 청소년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말해줄 것.
- 자신들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것.

■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담자가 받은 충격이나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
- 더 상세한 정보를 탐문하거나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 가정하거나 추측하는 것.
- 가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 알게 된 사실을 비밀에 붙일 것에 동의하는 것.
-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는 것.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훨씬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기 바란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담당자를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당신이 얼마만큼이나 다를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학대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이들이 일상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은 거의 없으며 그저 단순히 어른들의 기대와 지시에 순응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정 청소년이 스태프 구성원에게 자신이 현재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과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청소년이 진술한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가능한 해당 청소년 자신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앞서 제시된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자신의 관리자에게 제출될 사건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 구성원이 BCCx와 관련된 자의 청소년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행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갖고 있는 경우 취할 절차

스태프 구성원은 청소년을 대하는 스태프 구성원의 행동에 관하여 우려를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우려를 듣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또는 과거의 행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실무강령은 스태프 구성원 및 그 동료가 학대 혐의란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본 강령에 제시된 지침을 무시할 경우, 예컨대 가정방문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우려를 갖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스태프 구성원과 함께 일한 바 있는 사람으로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특정 개인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우려의 원인이 그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그러한 우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작위(non-action)는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1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BCCx의 운영진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들은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BCCx의 운영진은 선의에 입각하여, 특정 청소년이 현재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동료가 청소년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신고하는 개인을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BCCx와 관련된 자의 청소년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행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자신의 팀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팀장은 향후 이 문제를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와 논의해야 한다.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는 SSD로부터 해당 스태프 구성원에 대한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 그 다음 관리자가 제출하게 될 사건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CCx와 관련된 특정인이 특정 청소년에 대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조언을 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BCCx의 최고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BCCx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도 스태프 구성원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상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스태프 실무 강령

본 강령은 스태프 구성원에게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태프 및 동료에게 사실과 다른 학대 혐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올바른 실무 활동은 또한 특정인이 조직내에서 그 역할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들 청소년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BCCx

를 보호한다.

BCCx에서의 올바른 실무 활동은 스태프 구성원의 채용 및 선발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원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적합한지를 조회한다. 고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차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단 스태프 구성원이 적소에 배치되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지침으로 행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언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신의 지역 코백션즈 관리자와 논의를 거쳐 그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한하여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 개인적 안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할 것.
- 청소년과 함께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
- 암시적인 발언이나 차별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
- 언어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게임 (sexually provocative games)에 참여하거나 이를 허용하지 말 것.
- ‘소란스러운 놀이’ (horse play)와 같이 부적절한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
- 편애를 보이거나 ‘말썽꾸러기’ (troublemaker)를 배제하는 일을 피할 것.
- 의뢰자(clients)와 사귀지 말 것
- 아동 학대를 둘러싼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 것.
- 설령 그 대상이 자신인 경우라도, 특정 청소년에 의해 제기된 학대 주장이 보고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스태프에 의한 아동보호관련 사안의 의뢰절차

어떠한 단일 조직 또는 전문가 집단도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전적 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관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BCCx의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는 최고의 실무 활동과 관련된 영국의 법률 및 지침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체계에 부합된다. 이 정책 및 절차는 지역 ACPC에 의해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위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즉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지역 사회 복지국에 연락을 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정상 근무시간 중 - 지역 사회 복지국의 담당 공무원
- 정상 근무시간 외 - 소정의 지역 연락처 상의 비상 임무 팀 (Emergency Duty Team)
 - 아동보호관련 의뢰임을 명확히 진술할 것.
 - 지역 연락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첨부된 별첨을 참조하라.

사회 복지국 담당 공무원은 정규 ACPC 절차에 따라 경찰과 연락을 취하게 된다. 이들은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또는
- 해당 청소년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인 개입 조치가 가능한가?

의뢰를 수행하는 스태프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스태프 구성원 자신의 세부 인적 사항 - 이름, 직함, 연락처 등
- 해당 청소년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사용 언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 우려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 (사건의 경우, 시간, 장소, 현장에 있었던 모든 관련자)
- 정보의 원천
- 해당 청소년이 의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인지하고 있을 경우, 그 부모/보호자의 우려사항에 대한 반응

아동보호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 해당 아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출 받은 사회 복지사의 이름 및 직함을 확보, 기록하여야 한다. 전화의뢰 (telephone referrals)는 48시간 이내에 서면 확인을 받아야한다. 작성 완료된 아동보호 사건 의뢰서가 이러한 확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스태프 구성원이 공식적인 의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상부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된 바에 따라 SSD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스태프 구성원들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공식적인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의뢰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사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어떠한 사항이 기록되는가?
-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누구에 의해 취해져야 하는가?
- 더 큰 우려가 있는 경우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BCCx의 운영진은 아동보호의뢰가 중요한 조치를 대표하며, 특정 스태프 구성원이 그에 대한 재확인, 지원 및 지도를 받기 위하여 팀장 또는 지역 코넥션즈 관리자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스태프 구성원이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3) 블랙컨츄리 코넥션즈 조직구조 및 전략적 책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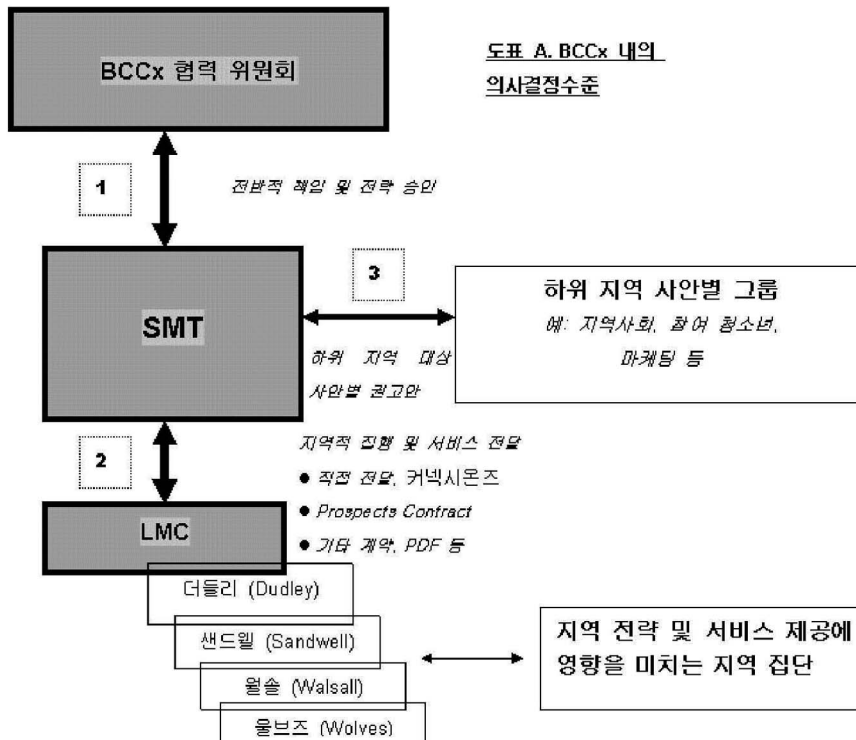
(1) 서론

본 문서의 목적은 BCCx의 의사결정구조를 명확히 하고 조직 고위관리자 팀의 전략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다. 아래 세부사항은 2002년 7월 BCCx 고위 관리자 팀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2) 조직구조

아래의 도표는 BCCx의 협력관계 내에서 운영되는 주요 의사결정수준을 도시한 것이다.

11) Connexions(2003). Birmingham & Solihull. Black Country Connexions : Organisational Structure and Strategic Responsibilities.



<그림 8 > 블랙컨츄리 코넥션즈 조직구조

<그림 8>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3개의 블록은 코넥션즈 서비스 전국 조직(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 이하 CSNU)에 의해 정의된 코넥션즈 협력체계(Connexions Partnership)의 주요 구조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협력 위원회(Partnership Board)는 블랙 컨트리 전역에 걸친 코넥션즈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략적 지시, 우선순위, 자원배분 및 조정에 관한 포괄적 책임을 진다.

협력 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CCx를 위한 단일의 법인체 설립
- 공공 및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사회단체로부터 높은 수준의

참여 확보

-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 보다 혁신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 전달 형태의 개발
- 10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적 변화 및 보다 강력한 협력체계의 추진
- 적절한 구조의 적소 배치 확보
- 이해관계 상충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배제
- 재무관리, 계약체결, 마케팅, 정보 조달 및 분석, HR 관리, 지속적 개선 메커니즘을 비롯한 핵심 기능의 적소 배치 확보
-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수준 계약의 승인

협력 위원회는 산하 집행 팀(SMT)으로 하여금

(i) 동 위원회가 결정했거나 아니면

(ii) SMT가 권고하고 동 위원회가 승인/수정한

전략적 결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책임을 완수한다.

협력 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장에 의해 주재되며, 그 구성원(위원)/이사는 아래에 열거된 분야전반에 걸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리자로부터 선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청소년 서비스 책임자	직업센터 플러스	학습 및 기술
고용주 CEO	보건 당국	이사	위원회 집행자
YOT 관리자	CEO/이사	경찰	보호관찰
교육훈련 제공자	선출된 자원봉사부문 임원	학교 교장	기업체
	각 LMC의 의장		CEO

별첨 A는 현재 BCCx 협력 위원회의 구성원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별첨 B는 SMT와 동 위원회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약서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협력 위원회가 수립한 전략은 고위 관리자 팀(Senior Management Team, 이하 SMT)이라 불리는 집행 팀을 통해 전달된다. BCCx의 SMT

는 최고 책임자(최고 운영자, Chief Executive)가 지휘하며, 코넥션즈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에 필요한 폭넓은 역량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리 분야로부터 선발된 단일의 팀을 구성하고 있다.

SMT는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 최고 운영자
- 양질의 서비스 및 표준 담당 관리자
- 재무 및 계약 담당 관리자
-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 - 더들리
-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 - 샌드웰
-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 - 월솔
- 지역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리자 - 올버햄튼
- 운영이사, Prospects

SMT는 협력 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을 감독하며, 장래의 전략 및 개발에 관하여 협력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SMT는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을 설정하며, 지역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본 운영 틀 내에서 운영된다. 또한 SMT는 (협력 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역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령하고 권고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BCCx의 포괄적인 전략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상세히 명시되며, 이 계획서는 매년 지역 협력단체 및 블랙 컨트리 전역에 소재하는 협력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된다. SMT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협력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첨부 B는 고위 관리자 팀의 현재 구성원 및 이들이 선발 배경이 되는 관리 분야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전략적 개발에 있어서 SMT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하위 지역 실무 그룹이 (또는 기존의 코넥션즈 관련 단체가) 개발되어왔다. 이들 실무 그룹은 장래의 전략 및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에 통합될 수 있는 권고안을 SMT에 제시한다.

별첨 F는 SMT와 하위 지역 사안별 실무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약서

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지역관리위원회(Local Management Committee, 이하 LMC)는 블랙 컨트리의 4개 지방자치단체인 더들리, 샌드웰, 윌솔 및 울버햄튼에 각각 존재한다. 지역관리위원회는 블랙 컨트리 사업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고유한 지역 서비스 전달 체계(Local Delivery Framework)로 전환시키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LM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① 요구되는 것, 현재 가용자원, 서비스에 나타나는 격차에 관한 도표(map)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역 협력단체와 공조
- ② (SMT를 통하여)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요한 자원을 협력 위원회에 권고
- ③ (SMT를 통하여)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계약의 세부사항을 협력 위원회에 권고
- ④ (SMT를 통하여) 협력 위원회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조인
- ⑤ 필요한 경우, 문화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노력
- ⑥ 지역 서비스 전달 및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특히 개인 상담가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서비스 표준의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시정 조치의 확보

LMC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설치된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의 광범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이 일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예비적 아동보호위탁(Children's Trusts)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각 LMC는 13세-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지역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선발된다.

자원봉사단체 소속	고용주	보건
청소년	중등학교(Colleges)	위원회선출직 구성원
학교	종교단체	직업 센터 플러스
D.A.T	청소년 서비스	Y.O.T
기업체	교육훈련 제공자	사회 복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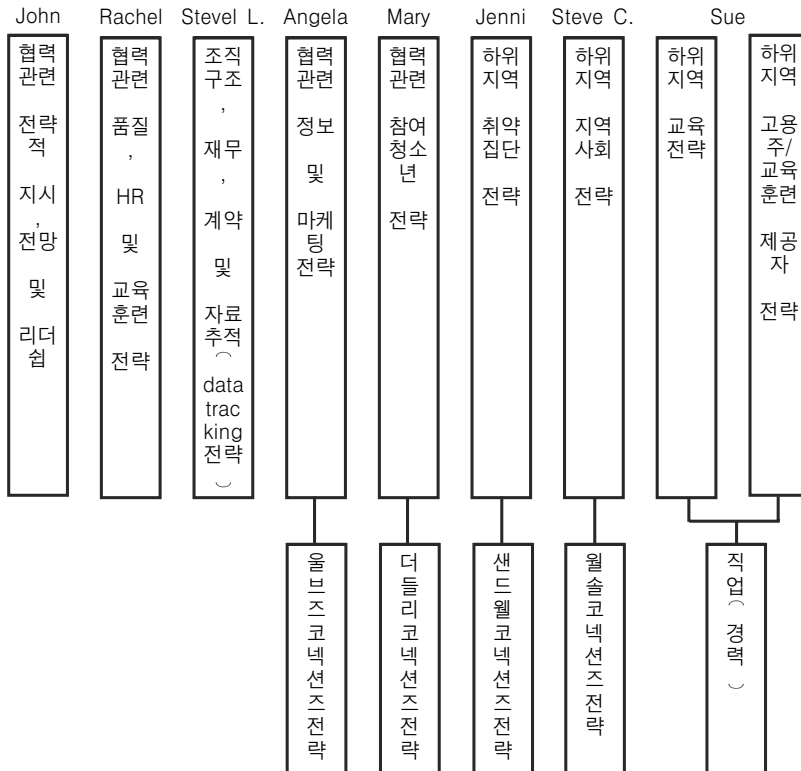
별첨 C는 BCCx 협력체계 내에 속하는 각 지역관리위원회의 현재 구성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과업을 완수함에 있어서 LMC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 실무 그룹이 (또는 기존의 코넥션즈 관련 단체가) 개발되어왔다. 이들 실무 그룹은 LMC에 대하여 권고안/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권고안 및 정보는 LMC가 (SMT를 경유하여) 협력 위원회에 제안하는 지역 서비스 전달 관련 권고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별첨 E는 SMT와 LMC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약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 핵심 사안별(주제별) 책임

아래의 <그림 9>에 제시된 핵심 사안별 책임은 BCCx 고위 관리자 팀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것이다.



<그림 9> 핵심 사안별 책임 분야에 따라 표시된 코넥션즈
고위관리자팀(SMT)

<표 1> 코넥션즈 SMT 핵심사안별 선도과제

핵심 사안 설명	합의된 핵심 사안 내 업무 분장
협력 관련 전략적 지시, 전망, 리더십 JOHN	• 위원회 개발 / • 조직개발 • 전망, 전략적 우선순위, 정신적 기풍 • CSNU / • 하위 지역 전략의 개발 / 발의 • 변화관리 / • 사업계획수립 / • 상설회의
협력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전략 RACHEL	• 성공(양질의 서비스 합격) 기준 • 양질의 서비스 모니터링 / 표준/ 개발 • 최상의 가치 / • 평등 • 서비스 전달 모형 (APIR 포함) • 평가, 연구 / • OFSTED / 검사
협력 관련 HR 및 교육훈련전략 RACHEL	• 보건 및 안전 • HR / 채용, 선발, 유지, 노동조합, JNC • 교육훈련 및 개발 - 내부적 / 협력 관계 활용 • 코넥션즈 프로그램 관련 커리큘럼 개발
조직구조, 재무 및 계약 전략 STEVE L.	• 재무예산, 모니터링, 시스템 / • 협력 계약 • 외부재원조달 / LSC 코넥션즈 • 구내시설 - 법률 및 재정 측면 • ICT 시스템 / • 관리(행정) 시스템
협력 관련 자료 추적 전략 STEVE L.	• 자료 추적 / 자료 매핑 • 관리정보 / • 안내 데스크
협력 관련 정보, 마케팅 및 (핵심 사안 설명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되는) 자료 ANGELA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PR / • 정보 • 코넥션즈 프로그램 카드(Card) • 코넥션즈 프로그램 다이렉트(Direct) / • 출판
협력 관련 참여 청소년 전략 MARY	• 참여 YP 전략 / • BLAST • 동료 교사 팀 (Peer Educator Team) • 법정 청소년 서비스에 따른 업무 수행
하위 지역 교육 전략 SUE	• 각급 학교와의 협력 교육 / • 주임교사 포럼 • 선도 지역사회 개발 (Guidance Community Development) • 보충 커리큘럼 / • BC 중등학교 포럼
하위 지역 지역 사회 전략 STEVE C.	• 코넥션즈센터 전략 / • 자원봉사부문 전략 • 문화적 다양성 집단 / • 재건(regeneration) 전략 • 청소년 리더/도시에 대한 헌신 (Urban Devotion) • 부모 / 보호자와의 협력 / • 이동 청소년 / 통학 버스

핵심 사안 설명	합의된 핵심 사안 내 업무 분장
하위 지역 지역 사회 전략 STEVE C.	• 코넥션즈센터 전략 / • 자원봉사부문 전략 • 문화적 다양성 집단 / • 재건(regeneration) 전략 • 청소년 리더/도시에 대한 헌신 (Urban Devotion) • 부모 / 보호자와의 협력 / • 이동 청소년 / 통학 버스
하위 지역 취약집단 전략 JENNI	• 특별 요구 집단 / LDD 협력체계 • BC 약물 예방 및 갱생 / • DAT 전략 • YOT 전략 / • LCT 전략 / • 노숙 청소년 전략 • 청소년 임신 관련 전략 • 수용시설 수용 희망자 전략 • 범죄 및 무질서 관련 협력체계 / 범죄 및 결속 (cohesion) 전략
하위 지역 고용주 / 교육훈련 제 공자 전략 SUE	• 14-19세 대상 직업 중심 학습 • 노동시장 서비스 전달 / • 학습 게이트웨이 • 현대 직업훈련제도 / • 실업 등록 / 급여 • 결원 서비스 / 취업 준비 • 학습권 / • LSC / 직업 센터 플러스

각각의 코넥션즈 SMT 핵심 사안별 선도과제는 해당 사안의 범위 내에서 하위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할 책임을 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현재 상황과 같이,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을 유지
- 기존의 집단을 보다 큰 핵심 사안 집단에 통합. 이 상위 집단을 통해서 모든 하위 집단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데 모이고 본 회의(main meeting)의 일부가 되는 하위 집단으로 분리된다.

위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 코넥션즈 SMT의 전 구성원은 정책 개발 및 사업 계획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또한 LMC는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지역 코넥션즈 관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적 책임을 진다.

자원의 의미

협력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코넥션즈 전략적 단위로서 각각의 SMT 구성원은 다양한 주요 책임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하위 지역 핵심 사안별 전략에 관한 책임
- 정책 및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책임
- 지역과 관련된 전략적 책임

위에 열거한 핵심 사안별 책임은 SMT 구성원에 부과된 기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구조적 주요 구성부분(building blocks)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해당 책임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MT 구성원의 능력은 시간 및 자원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

다음의 대안들은 SMT 선도과제에 소요되는 자원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 ① 다른 BCCx SMT 구성원과의 공동업무수행
- ② 특정한 SMT 요구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스태프의 충원
- ③ Prospects 스태프 구성원
- ④ 기타 PA/TL 스태프

추가적인 업무에는

- ① SMT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정의하고,
- ② 필요한 자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며,
- ③ 위에 언급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을 재편성(realign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취약한 상태의 청소년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설 명
YOT에 의한 감독	YOT를 통해 자치도시(borough) 수준에서 집권적인 방식으로 확인
청소년 가장 (보호자)	특정한 방식으로 무능력 상태에 처한 성인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 가장 (양육자)	학교 내 개인 상담가는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또는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담당교사와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숙자/합숙소(hostel) 수용	노숙자 상태의 청소년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포함], 합숙소 수용자인 청소년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청소년
10대 부모 / 임신한 여학생	10대인 부모 또는 임신한 13-19세의 청소년
난민/수용시설 수용희망자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への 소속 여부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조직적인 박해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다. 수용시설 수용 희망자는 아직 체류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나 난민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영어 이외의 모국어 사용	청소년이 언어와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약물남용	여기에는 마약 및 알코올 중독, 기타 약물이 포함된다 -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 여부를 불문한다.
출석상의 문제	빈번한 무단결석 또는 허락 받은 결석, 정해진 기간 동안의 정학(fixed term exclusion) 포함
제적	영구제적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	학교 / 중등학교로부터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예: YELLIS]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인상담가가 결정한다.
객지 생활 아동 (traveling children)	객지 생활 아동을 위한 서부 미들랜드 콘소시엄 교육 서비스에 의해 지원을 받는 청소년 [이들의 욕구에 대한 평가에 근거]
학습곤란 및/또는 학습장애	일체의 학습곤란 및/또는 장애, 청소년이 이러한 사실을 진술했는지 여부와 무관
건강상의 문제[약물남용제외]	여기에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관한 진술서를 통해 증명되지 않는 문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행동상의 문제	여기에는 태도 및 행동상의 문제, 낮은 동기부여 및 의사소통, 자신감과 자부심의 결여가 포함될 것이다.

II. 독 일

1. 독일 청소년보호법
2.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

II. 독일

1. 독일 청소년보호법

2002년 7월 23일 제정,
2003년 12월 27일자 법률 제7조 (2)항에 의한 개정,
2003년 12월 29일자 법률 제3조에 의한 개정
2004년 7월 23일자 법률 제2조에 의한 최종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정 의

(1) 이 법률에서

1. <어린이>라 함은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이지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친권자>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민법상의 법규에 따라 감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양육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친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양육의 과제를 떠맡게 된 자 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교육의 범주 내지 청소년 지원의 범주에서 돌보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일반매체물>이라 함은 물체에 저장 운반되는 형태의 문자, 영상 또는 음향매체물로서 유포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이용을 위해

제작된 매체물 또는 재생기에 통합 제작되어 있는 매체물을 말한다. <방송 국가협약> 제2조의 의미에서 방송이라고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도에서 이러한 매체물을 전기 정보통신을 통해 유포, 양도, 제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매체물을 배포, 양도, 제공,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이 법률에서 <텔레매체>라 함은 <텔레서비스법>(전기통신서비스법, TDG)과 주정부간 <매체서비스국가협약>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전송하거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물을 말한다. 첫 문장에서 말한 전송 내지 이용 가능케 한다는 것은 자신 또는 타인의 내용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통신판매>라 함은 제공자와 주문자간에 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또는 기술적 조치나 여타 사전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우편 또는 전자적 배송이라는 상품의 주문 또는 배송의 경로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업적 거래를 말한다.

(5) 이 법률의 제2조-제14조의 규정은 기혼의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조 검사 및 입증의 의무

(1) 이 법률에 의해 양육을 위임받은 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경우 제1조(1)항 4호에 언급된 사람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사개최자 및 업소는 의심스러운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다.

13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2) 이 법률에 의해 연령의 제한을 유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연령을 적절한 방식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다. 행사개최자 및 업소는 의심스러운 경우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법규의 공표

(1) 행사개최자 및 업소는 업소설비와 행사에 관한 아래 제4조-제13조 규정의 법규 그리고 공중에서의 영화 상영의 경우 영화의 나이등급 또는 제14조(7)항에 따른 제공자의 표시를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잘 읽을 수 있는 게시물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2)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나이등급을 게시하기 위해 행사개최자와 업소는 제14조(2)항에서 언급된 등급표시만을 사용해야 한다. 공중에서의 영화 상영행사에 영화를 제공하는 자는 행사개최자에게 영화 상영시 제14조(7)항에 따른 나이등급 또는 제공자 표시에 유의하도록 지적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2)항에 따라 주최고관청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제14조 (6)항에 따른 절차상 표시가 이루어진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예고시나 광고시에 청소년 유해내용을 언급해서도 안되고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방식으로 예고 또는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제 2장 공중에서의 청소년보호

제 4 조 접객업소

(1) 어린이 그리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양육을 위임받은 자가 동행한 경우 또는 5시에서 23시 사이에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기 위한 경우에만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16세 이상인 청소년

년의 경우에도 24시에서 아침 5시 사이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을 위임받은 자의 동행이 없이는 숙박업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가된 청소년지원단체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여행 중인 경우에는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나이트바 또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는 접객업소와 유흥업소의 성격이 강한 접객업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당해 관청은 (1)항의 예외 사항을 인가할 수 있다.

제 5 조 댄스공연

(1) 공중에서의 댄스공연 참석은 어린이 그리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을 위임받은 자의 동행이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24시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2) 댄스 공연이 인가받은 청소년 지원단체가 주최하는 것이거나 예술적 활동 내지 전통의 보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경우 22시까지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24시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 당해 관청은 예외 사항을 인가할 수 있다.

제 6 조 도박장

(1) 어린이와 청소년은 공중 도박장 또는 주로 사행행위에 이용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공중에서의 보상을 내건 게임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가는 민속축제, 전통사격대회, 대목에 열리는 특별시장, 특별한 계기에 서는 장 또는 유사 행사인 경우에 그리고 값이 적은 상품의 형태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 7 조 청소년 유해행사 및 업소

공중에서의 행사 또는 영업장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유해한 경우, 당해 관청은 행사주최자 또는 업소로 하여금 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 연령층의 제한, 이용 시간대의 제약 또는 여타의 제한을 부과하는 형태로 내려질 수 있다.

제 8 조 청소년 유해장소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장소에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당해 관청 내지 기관은 위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해 관청 내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1. 문제의 장소를 떠나도록 조치하고
2. 제8차 사회법전 제7조(1)항6호의 의미에서 양육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관하거나, 양육을 위임받은 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관청의 보호에 넘겨야 한다.

심각한 경우 당해 관청 또는 기관은 청소년관청에 청소년 유해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주류

(1)接客업소, 상점 또는 기타 공중의 장소에서는

1. 증류주, 증류주를 함유한 음료, 적지 않은 량의 증류주를 함유한 식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내주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되며
2. 다른 주류는 어린이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내주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

(2) 친권자의 동행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1)항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공중의 장소에서는 주류를 자동기계장치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자동기계장치(자판기)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경우
2. 영업장에 설치되었으며 아울러 기술적 수단이나 상시적 감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류를 꺼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

(4) <주세법> 제1조(2)항과 (3)항에 따른 주류는 단지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제공 금지, 청소년보호법 제9조>라는 적시한 형태로만 상거래에 유통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제품의 포장에 상표 또는 상품명과 동일한 글자체 그리고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표기되거나 상표 내지 포장에 없는 경우에는 유통 표시와 같이 표기하고 병 형태의 경우에는 전면부 상표가 있는 부위에 부착한다.

제 10 조 공중에서의 흡연, 담배류

(1)接客업소, 상점 또는 기타 공중의 장소에서는 어린이 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내주어서도 안되고 이들의 흡연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2) 공중의 장소에서 담배는 자동기계장치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자동기계장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위치한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어린이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2. 기술적 수단 또는 상시적 감시를 통해 어린이와 11세 미만의 청소년이 담배를 꺼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

제 3장 매체 분야 청소년보호

제 3-1장 일반매체물

제 11 조 영화상영

(1) 공중에서의 영화 상영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은 해당 영화가 주의 최고관청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제14조(6)항에 따른 절차상 이들에게 관람이 허용된 경우, 또는 제공자에 의해 <정보제공프로그램> 내지 <학습프로그램>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계몽, 학습, 교육용 영화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2) (1)항과는 달리 12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관람이 가능하며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영화의 공중 상영에는 친권자의 동행이 있는 경우 6세 이상의 어린이도 입장이 허용된다.

(3) (1)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공중 영화상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드시 친권자 또는 양육의 위임을 받은 자의 동행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1. 6세 미만의 어린이
2. 상영이 20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6세 이상의 어린이
3. 상영이 22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
4. 상영이 14세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

(4) (1)~(3)항의 규정들은 녹화 및 재생의 형태를 막론하고 공중에서의 영화 상영에 적용된다. 이 규정들은 영화에 앞서 나오는 광고 부분과 부속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비상업용으로 제작되어 비상업용으로 활용되는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담배나 주류를 광고하는 광고영화 내지 광고물은 (1)~(4)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18시 이후에만 상영이 가능하다.

제 12 조 영상물 또는 게임물

(1) 내용물이 녹화된 비디오카세트 그리고 여타 유포에 적합하며 화상기에 재생하거나 화상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저장매체물(영상매체물)은 문제의 영상물이 주의 최고관청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제 14조 (6)항에 의한 절차상 해당 나이등급에 허용되며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공자에 의해 <정보제공프로그램> 내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정보제공,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해

서 공중의 장소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2) (1)항에 따른 표시는 영상매체와 포장에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 최고관청은 다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표시의 내용, 형태, 색상 및 부착에 대한 상세한 규정
2. 영상매체 내지 포장 부착에 있어 예외사항 인가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배포하는 텔레매체 사업자는 기존의 표시를 자신의 제공물에서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제14조 (6)항에 따른 절차상 주의 최고관청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또는 제14조 (7)항에 따라 제공자에 의해 제14조 (2)항에 의한 아무런 이용 허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영상 매체 내지는 '청소년 이용불가'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매체는

1.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는 제공, 양도 내지 이용에 내주어서는 안되며,
2. 영업공간 이외의 소매점, 가판점 또는 고객이 보통 잘 이용하지 않는 판매대 또는 통신판매에서 제공, 양도되어서는 안된다.

(4) 내용물이 녹화된 영상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동기계장치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즉

1.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의 장소
2. 영업 방식이나 기타의 방식에 의해 직업상 또는 영업상 이용되는 공간 이외의 공간, 또는
3.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구, 복도 등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전적

으로 제14조 (2)항 1-4호에 따라 등급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매체를 제공하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제14조 (2)항 1-4호 의해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연령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의해서는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5) 영상물 및 게임물의 초록 편집물을 담은 영상매체는 제공자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이러한 초록 편집물이 청소년 유해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확인받은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 한해서 (1)항-(3)항과는 무관하게 정기 인쇄물 형태로 배포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정기 인쇄물에는 물론 영상매체물에도 배포에 앞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2)항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주의 최고기관은 개별 제공자에 대해 첫번째 문장에 의한 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 13 조 화상게임기

(1) 공공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도박의 성격이 없는 전기 화상게임기에서의 게임은 해당 프로그램이 주의 최고관청 내지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제14조 (6)항에 따른 절차상 해당 연령층의 이용이 허가되고 아울러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의해 <정보제공프로그램> 내지 <학습용프로그램>으로 표시가 이루어진 정보제공, 교육, 학습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해서만 친권자 또는 양육을 위임받은 자의 동행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허용될 수 있다.

(2) 전기 화상게임기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즉

1.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공공의 장소
2. 영업상의 방식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직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되

는 공간 이외의 공간

3.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구, 복도 등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아울러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14조(7)항에 따라 <정보제공 계몽프로그램> 내지 <학습용프로그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3) 화상게임기에 표시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12조 (2)항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제 14 조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의 표시

(1)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임성있고 사회성있는 인격체로 발달하는 것 또는 이러한 인격체로 교육하는 것을 저해하는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은 해당 연령층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주의 최고관청 내지 자율규제단체는 (6)항에 의한 절차에 의거하여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에 대해 다음의 등급표시를 한다.

1. <나이제한 없이 이용 가능>
2. <6세 이상 이용 가능>
3. <12세 이상 이용 가능>
4. <16세 이상 이용 가능>
5. <청소년 이용 불가>

(3) 한 매체물이 주의 최고관청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의해 해당 법조항에 의한 절차에 의거하여 제15조 (2)항의 1-5호에 적시된 내용을 가진 매체물이거나 제18조에 의한 목록표에 등재된 매체물인 경우에는 등급표

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의 최고관청은 제15조 (1)항의 위반을 보여주는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당해 형사소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 영상물 또는 화상게임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18조에 의한 목록표에 등재된 매체물의 하나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등급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목록표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의심스러운 경우 주의 최고관청 내지 자율규제단체는 (6)항에 의한 절차에 의거하여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결정을 유도한다.

(5) 영상물과 화상게임기를 위한 영화프로그램의 표시는 공공의 영화 상영이라는 형태의 상영 행위에도 적용되며 아울러 이러한 용도를 위한 내용이 동일한 영화에도 적용된다. 공공 상영을 위한 영화의 표시는 영상물과 화상게임기를 위한 내용이 동일한 영화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4)항이 준용된다.

(6) 주의 최고관청들은 경제계 단체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이러한 단체들의 지원받는 자율규제단체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의 이용 허가 및 표시를 위한 공동의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 한 주의 최고관청이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별도의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러한 합의의 범주에서 결국 자율규제단체에 의한 이용 허가와 표시는 곧 바로 모든 주의 최고관청들에 의한 이용 허가와 표시에 해당한다고 정할 수 있다.

(7) 정보제공, 교육 또는 학습 목적의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또는 교육을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자에 의해 <정보제공프로그램> 내지 <학습용프로그램>으로 표시되는 것이 허용된다. 주의 최고관청은 개별 제공자 또는 특정 영상물 및 게임물에 대해 제공자의 표시를 배제할 권리 그리고 제공자에 의해 사전에 이루

어진 표시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영화, 영상매체 또는 화상게임기가 표시된 영상물 내지 게임물 외에도 문자, 영상, 음향의 형태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발달 내지 교육을 저해하는 제목, 부가물 또는 다른 내용의 묘사를 포함한 경우, 이러한 점은 표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어야 한다.

제 15 조 청소년유해저장매체

(1) 제24조 (3)항 첫번째 문장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가 고시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1.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제공, 양도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진열 내지 기타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영업공간 외부의 소매점, 가판상 또는 고객이 잘 이용하지 않는 다른 판매대에서 또는 통신판매의 형태로 또는 상업적 대여도서관의 형태 내지 독서서클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양도하는 행위
4.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고 이들이 들여다 볼 수 없는 판매상을 제외한 곳에서 상업적 대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양도하는 행위
5. 통신 판매의 형태로 이러한 매체를 도입하는 행위
6.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해당 상거래의 거래 행위를 벗어나 일반매체 및 텔레매체의 배포 형태가 이러한 매체물을 제공, 예고 또는 찬양하는 행위
7. 이러한 매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의 1-6호의 의미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러한 매체물

을 제작, 구입, 제공, 보관 또는 도입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일반매체물은 유해매체물 목록에 등재되고 고시될 필요가 없이 (1)항의 제한을 받는다.

1.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 조, 제131조, 제184조, 제184a조 또는 제184b조에 언급된 내용을 담은 것
2. 전쟁을 찬양하는 것
3. 죽어가거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처한 사람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보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실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4.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부자연스럽게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로 묘사한 것
5.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발달 내지 교육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분명한 것

(3) 목록에 등재되어 고시된 매체물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매체물은 목록에 등재되고 고시될 필요가 없이 (1)항의 제한을 받는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상업적 광고의 목적으로 인쇄되거나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5) 상업적 광고에서는 일반매체물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닌 텔레매체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절차가 미결이었다는 점이 적시되어서는 안된다.

(6) 공급을 허가받은 사업자는 판매상에게 매체물의 양도에 앞서 (1)항 1-6호에 의한 배포의 제한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제 3-2장 텔레매체

제16조 텔레매체를 위한 특별 규정

제18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된 텔레매체물에 관한 규정은 주의 법률로 유보된다.

제 4장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

제17조 명칭 및 관할권

(1) 연방심의기구(연방청)는 연방정부에 의해 설치된다. 이 기구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2)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등재 그리고 이 목록에서의 삭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1) 책임성과 사회성을 가진 인격체로 청소년의 발달 내지 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매체물 및 텔레매체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특히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폭력 행위, 범죄 또는 인종차별주의를 충동하는 매체물이 여기에 속한다.

(2) 목록표는 4개의 부분으로 운영된다.

1. A부분(일반매체물 공개리스트)에는 B, C 또는 D 부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매체물이 등재될 수 있다.
2. B부분(절대 배포금지의 일반매체물 공개리스트)에는 D부분에 속하지 않으며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서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 조, 제131조, 제184조, 제184a조 또는 제184b조에 언급된 내용을 지닌 매체물로 평가되는 일반매체물이 등재된다.
3. C부분(비공개 매체물 리스트)에는 단지 제23조 (3)항 두번째 문장에 의해 목록표 등재의 고시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인해 A부분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매체물과 D부분에 속하지 않은 모든 텔레매체물이 여기에 속한다.
4. D부분(절대 배포금지의 비공개 매체물 리스트)에는 단지 제23조 (3)항 두번째 문장에 의해 목록표 등재의 고시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인해 B부분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매체물 그리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서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 조, 제131조, 제184조, 제184a조 또는 제184b조에 언급된 내용을 가진 매체로 평가받은 텔레매체가 여기에 속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체물이 목록에 등재되어서는 안된다.

1. 단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내용을 이유로
2. 예술, 학술, 연구 및 강의에 기여하는 경우
3. 묘사방식이 크게 이의를 제기할 정도가 아닌 매체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4) 별로 의의가 경미한 경우에는 매체를 목록에 등재하는 것에서 제외

할 수 있다.

(5) 법적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 조, 제131조, 제184조, 제184a조 또는 제184b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가진 매체로 확인된 매체물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6) 텔레매체는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되는 청소년보호 담당 중앙 감독기관에서 목록 등재 신청을 한 경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이러한 목록 등재 신청이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하거나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실제 판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된다.

(7) 유해매체 목록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매체물은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목록 등재는 25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8) 제14조 (2)항 1-5호에 의해 표시가 이루어진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되는 청소년보호 담당 중앙 감독기관이 텔레매체에 대해 사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등재를 위한 (1)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가 사전에 텔레매체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면,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되는 청소년보호 담당 중앙 감독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등재를 위한 (1)항에 의한 전제조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1)항이 적용된다.

제19조 인적 구성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인, 각 주정부에서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들 그리고 연

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임명하는 또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적어도 1명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각 주정부는 (1)항에 의한 자신의 임명권을 주의 최고관청중 하나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은 다음의 분야에서 각 사회그룹의 제안에 의해 추대될 수 있다.

1. 예술
2. 문학
3. 서적상 및 출판협회
4. 영상물 및 텔레매체 사업자
5. 민간 청소년지원단체
6. 공공 청소년지원단체
7. 교사단체
8. 교회측, 유대인단체 그리고 공법상의 다른 종교단체

서적상 및 출판협회 그리고 영상매체 및 텔레매체 사업자 그룹에는 저장이나 재생의 방식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매체물의 활용과 배급 분야에서 유사한 활동을 벌이는 그룹들도 해당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구성원들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서의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임명한 기관에 의해 조기에 해임될 수 있다.

(4)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지시에 구속받지 않는다.

(5)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위원장 1인, 주정부에서 파견한 위원 3인 그리고 (2)항에서 언급한 그룹에서 추대된 위원 1인을 포함해 12명이

구성원이 출석하여 결정을 내린다. 소집된 위원이나 그 대리인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9명 이상의 구성원 출석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항의 1-4호에서 언급한 그룹에서 추대된 위원이 2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6) 유해매체 목록 등재 처분을 위해서는 결정에 참석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 구성원 2/3의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5)항 두번째 문장에 따른 출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록 등재를 의결하려면 최소한 7표가 요구된다.

제 20 조 추천권이 있는 단체

(1) 제19조 (2)항에 의한 추천권은 다음 각 분야의 내부에서 각 열거된 단체들에 의해 한 명의 위원과 대리인을 추천하는데 행사된다.

1. 예술 분야의 경우
 - 독일문화위원회
 - 독일 연방문화교육자단체
 - 예술가조합
 - 독일연방그래픽디자이너협회
2. 문학 분야의 경우
 - 독일저술가협회
 - 자유독일문인연합
 - 독일작가단체
 - 독일펜협회본부
3. 서적상 및 출판협회
 - 독일서적상연합회
 - 독일 기차역서점 연합회

- 독일 서적, 신문, 잡지도매상연합회
- 독일 신문발행인 연합회
- 독일서적상연합회-출판위원회
- 독일서적상연합회내 신문사연합회
- 4. 영상물 및 텔레매체 분야의 사업자
- 5. 연방비디어연합
- 6. 독일오락용소프트웨어단체
- 7. 독일영화산업중앙협회
- 8. 연방정보산업, 통신 및 뉴미디어 단체
- 9. 독일멀티미디어단체
- 10.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단체
- 11. 독일자동판매기연합회
- 12. 독일비디오상연합회
- 13. 민간 청소년지원단체에서는
 - 연방자유복지연합회
 - 독일연방청소년클럽
 - 독일스포츠청소년
 - 연방어린이청소년보호연합체
- 14. 공공 청소년지원단체 분야에서는
 - 독일시군자치체협의회
 - 독일도시협의회
 - 독일 도시 및 자치체연합
- 15. 교사단체 분야에서는
 - 독일노조연합 내 교육학술노조
 - 독일교사연합회
 - 교양 및 교사연합
 - 카톨릭독일교사단체

16. 제19조 (2)항 8호에 언급된 공법상 단체에서는

독일개신교협의회

독일주교회의 대표

독일유태인중앙협회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각 단체는 한 사람의 위원과 한 사람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1)항에 언급된 한 단체가 여러 명의 위원을 제안한 경우에는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한 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2) 제19조 (2)항에 언급된 단체들 대신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단체들을 통해서도 위원과 대리인을 추천하는 일이 가능하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매년 1월에 연방공보를 통해 6주 내에 이러한 제안을 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된 추천 인사들 중에서 단체별로 한 명의 위원과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때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비중이 낮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되지 않는 단체의 제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공동의 제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세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한 분야에서 이름이 적시된 단체들의 제안이 숫적인 면에서 불충분할 경우,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다수의 위원과 다수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섯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제 21 조 절차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일반적으로 심의 신청을 위해 활동한다.

(2) 신청의 권한은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주의 청소년담당 최고관청들, 주정부들의 협의로 설치된 청소년매체보호 중앙감독기관, 지자체

청소년관청이 갖고 있으며, 목록표에서의 삭제 신청 그리고 한 매체물이 목록에 등재된 매체물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아님을 확인받는 신청의 권한은 (7)항에 언급된 인사들도 갖는다.

(3) 목록표 등재 또는 삭제가 명백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4)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2)항에 언급된 관청이나 인가받는 민간 청소년지원단체가 활동의 계기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대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절차의 실행이 적절하다가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활동한다.

(5)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직권으로 활동한다.

1. 하나의 매체물이 이미 목록에 등재된 매체와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2. 매체물의 목록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이 제18조 (7)항 첫번째 문장에 의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3. 목록 등재가 제18조 (7)항 두번째 문장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만 계속 목록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해 있는 경우

(6) 텔레매체물의 목록 등재에 대한 결정에서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된 청소년매체보호 중앙감독기관에 해당 텔레매체에 대한 즉각적인 소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판정을 하는데 있어 이러한 소견을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요청한 지 5일(평일기준) 이내에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된 청소년보호중앙감독기관의

소견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소견서가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저작권자 또는 이용권자 그리고 텔레매체의 경우 사업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8) 매체물의 판정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1. 일반매체물의 경우 저작자 및 이용권자
2. 텔레매체의 경우 저작자 및 사업자
3. 심의를 신청한 관청
4.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주의 청소년담당 최고관청,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된 청소년매체보호 중앙감독기관에 송달돼야 한다. 청소년매체보호 중앙감독기관은 해당 결정에서 파생되는 배포 및 광고의 제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송달해야 한다.

(9)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주정부간 협의로 설치된 청소년매체보호 중앙감독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10)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구(FCM)는 2004년 1월 1일부터 (7)항에 언급된 주체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고 다음 각 호의 하나를 판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반 경비(비용과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매체물과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매체물
2.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매체물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담은 법령을 통해 수수료 의무가 있는 구성요건과 수수료 요율을 상세히 정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행정비용법이 적용된다.

제 22 조 정기적인 일반매체물 및 텔레매체의 등재

(1)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반매체물은 12개월 이내에 두개 이상이 목록에 등재된 경우 3개월에서 12개월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이는 일간신문과 시사잡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텔레매체는 12개월 이내에 두개 이상이 목록에 등재된 경우 3개월에서 12개월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아울러 (1)항의 두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제 23 조 절차의 간소화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위원장 그리고 제19조 (2)항 1-4호에 언급된 그룹에 속한 위원 1인을 포함한 두명의 위원이 출석하는 간소화된 절차에서 만장일치의 형태로 매체물이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발달 내지 교육에 분명한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전원 출석(제19조 (5)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

(2) 제22조에 따른 목록 등재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다.

156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3)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해당자(제21조 (7)항)는 결정 송달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이 전원 출석 하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매체물이 목록에 등재된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은 제21조 (5)항 2호의 전제하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목록에서의 삭제를 의결할 수 있다.

(5) 일반매체물 또는 텔레매체가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판매, 배포 또는 이용에 제공될 위험이 있으며 목록에 최종적인 등재가 분명히 예상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목록 등재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2)항은 준용된다.

(6) 이러한 가처분 조치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목록에서 삭제되는데, 가처분의 효력 발생기한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첫 문장에서 언급한 기한은 만료되기 전에 최장 한달간 연장될 수 있다. (1)항은 준용된다. 가처분이 연방공보에 공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연장시에도 적용된다.

제 24 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표 운영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2) 목록에의 등재 또는 목록에서의 삭제 결정은 지체없이 목록표에 반영돼야 한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결정이 폐기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목록표는 지체없이 수정돼야 한다.

(3) 일반매체물이 목록에 등재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결정을 적시해 연방공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문제의 매체물이 단지 텔레매체에 의해서만 유포되는 경우 또는 이를 공시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에 손상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청소년유해매체 목록표의 B부분과 D부분에 등재되는 매체물의 경우 위원장은 이를 당해 형사소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에 의해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상 관련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매체물은 목록표의 A부분 내지 C부분에 등재될 수 있다. 위원장은 매체물이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새로운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5) 텔레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고 이러한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원장은 텔레매체 영역에서 이용자 자율의 여과프로그램에 등재될 수 있도록 텔레매체 영역에서 인정받는 자율규제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이용자 자율의 여과프로그램 등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25 조 법적 소송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결정 또는 목록 삭제 신청에 대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거부 결정에 대한 소송으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2)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간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거부 결정 그리고 절차의 중단에 대한 신청을 제기한 기관은 행정소송의 형태로 제소할 수 있다.

(3) 소송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은 연기적 효과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절차 단계에서 추가적 심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23조에 의한 간소화된 절차에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이 제19조 (5)항에 따른 출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5장 법규의 위임

제 26 조 법규의 위임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령을 통해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본부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제 6장 위반행위 처벌

제 27 조 처벌 규정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부과된다

1. 제15조 (1)항 1-5호 또는 6호에 위반되고, 아울러 (2)항과 연계되기도 하며, 일반매체물을 제공, 양도, 이용에 내어주는 것, 그리고 전시, 게시, 진열, 도입, 예고 또는 찬양하는 경우

2. 제15조 (1)항 7호에 위반되고, 아울러 (2)항과 연계되기도 하며, 매체물을 제작, 구입, 공급, 보관 또는 도입한 경우
3. 제15조 (4)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을 인쇄하거나 공표한 경우
4. 제15조 (5)항에 위반하여 상업적 광고에서 이를 적시하는 경우
5. 제21조 (8)항 첫번째 문장 1호에 따른 시행 가능한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행사주최자 또는 업소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1. 제28조 (1)항 4-18호 또는 19호에 명시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적어도 과실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윤리적 발달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 경우
2. 영리 추구의 목적에서 제28조 (1)항 4-18호 또는 19호에 명시된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하거나 계속 반복하는 경우

(3)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즉

1. (1)항의 1호
2. (1)항의 3호, 4호 또는 5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4) 친권자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매체물을 제공,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3)항의 1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친권자가 이러한 매체물을 제공,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된 양육의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된다.

제 28 조 벌과금 규정

(1) 행사주최자 또는 업소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질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제3호 (1)항에 위반하여 업소설비 내지 행사와 관련된 규정을 공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또는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 (2)항 첫문장에 위반하여 표시를 한 경우
3. 제3조 (2)항 두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적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또는 적기에 적시하지 않은 경우
4. 제3조 (2)항 세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영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예고하거나 영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광고를 하는 경우
5. 제4조 (1)항 또는 (3)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接客업소출입을 허용한 경우
6. 제5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공중에서의 댄스행사참석을 허용한 경우
7. 제6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공중의 도박장 또는 (1)항에 언급된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8. 제6조 (2)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사행성 도박행위 참가를 허용한 경우
9. 제7조 첫번째 문장에 대해 이행 가능한 처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10. 제9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내주거나 마시게 한 경우
11. 제9조 (3)항 첫 문장에 위반하여 주류를 유통하는 경우, 11a 제9조 (3)항 첫 문장에 위반하여 주류를 자동기계장치에 제공하는 경우
12. 제10조 (1)항에 위반하여 담배를 내주거나 어린이 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흡연을 허용한 경우

13. 제10조 (2)항 첫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담배를 자동기계장치에 제공한 경우
14. 제11조 (1)항 또는 (3)항을 위반하고, 아울러 제4조(2)항과 각각 연계되기도 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공중에서의 영화상영, 영화상영 전에 등장하는 광고 또는 부속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14a. 제11조 (5)항에 위반하여 광고영상물 또는 광고프로그램을 상영한 경우
15. 제12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영상물을 이용에 내어준 경우
16. 제12조 (3)항 2호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제공 또는 양도한 경우
17. 제12조 (4)항 또는 제13조 (2)항을 위반하여 자동기계장치 또는 화상게임기를 설치한 경우
18. 제12조 (5)항 첫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한 경우
19. 제13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화상게임기에서 게임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20. 제15조 (6)항에 위반하여 지적을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또는 적기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질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제12조 (2)항 첫번째 문장 1호에 위반하고, 아울러 (5)항 세번째 문장 또는 제13조 (3)항과 연계하기도 하며,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또는 규정된 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제12조 (2)항 두번째 문장에 의한 시행 가능한 처분에 대해, 아울러 (5)항 세번째 문장 또는 제13조 (3)항 또는 제14조 (7)항 세번째 문장과 연계하기도 하여,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3. 제12조 (5)항 두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규정된 방법으로 또는 적기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4. 제14조 (7)항 첫번째 문장에 위배하여 영화 또는 비디오물, 게임물에 <정보제공프로그램> 또는 <학습용프로그램>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고의로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질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제12조 (2)항 세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또는 규정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 (5)항 두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통보를 한 경우

(4)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1)항 5-8호, 10호, 12호, 14-16호 또는 19호, 제27조 (1)항 1호 또는 2호에서 언급한 금지 사항 내지 제12조 (3)항 1호에 적시된 금지사항 또는 제7조 첫번째 문장에 의한 이행 가능한 처분을 통해 저지해야할 행위를 하도록 유도 내지 조장한 18세 이상의 성인은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러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만 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 7장 종결 규정

제 29 조 경과 규정

기존의 법률에 의해 <18세 미만 이용 불가>라는 표시가 이루어진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2)항 1-5호> 대신에 <제14조 (2)항 1-4호>가

되는 것을 준칙으로 하여 제18조 (8)항 첫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제 30 조 발효, 효력상실

(1) 이 법률은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정부간 국가협약(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와 병행하여 1985년 12월 15일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15일 제8a조에 의해 개정된 <공중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과 1985년 7월 12일 공포되었고 2001년 12월 15일 제8b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청소년유해인쇄물 및 매체물 배포에 관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이 법률의 효력 발생일을 연방관보에 공포한다.

(2) 제10조 (2)항과 제28조 (1)항 13호는 (1)항의 첫번째 문장에서 벗어나 200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2.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

2002년 9월 10-27일 제정

2004년 10월 8/15일자 제8차 방송법개정 국가협약에 의한 최종 개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아란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및
튀링겐주는

다음의 국가협약을 체결한다.

제 1장 총 칙

- 제 1 조 국가협약의 목적
- 제 2 조 적용 범위
- 제 3 조 정의
- 제 4 조 허용되지 않는 제공물
- 제 5 조 발달 저해적 제공물
- 제 6 조 광고와 텔레쇼핑에서의 청소년보호
- 제 7 조 청소년보호담당

제 2장 방송분야 규정

- 제 8 조 방송시간의 확정

제 9 조 예외 규정

제 10 조 방송예고와 표시

제 3장 텔레매체 분야 규정

제 11 조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제 12 조 표시 의무

제 4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제공자를 위한 소송

제 13 조 적용 범위

제 14 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

제 15 조 주미디어관청 설치 위원회의 협력

제 16 조 KJM의 관할

제 17 조 KJM 의 절차

제 18 조 청소년보호네트 'jugendschutz.net'

제 19 조 자율규제 조직

제 5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사업자를 위한 집행

제 20 조 감독

제 21 조 정보청구권

제 22 조 연방행정법원 상고

제 6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사업자의 위반사항 처벌

제 23 조 처벌 규정

제 24 조 법규 위반

제 7장 종결 규정

제 25 조 여타 국가협약의 개정

제 26 조 유효 기간, 해지

제 27 조 통지

제 28 조 효력 발생, 새로운 공표

제 1장 총 칙

제 1 조 국가협약의 목적

이 국가협약의 목적은, 전기 정보통신 매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또는 교육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제공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나 여타 형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제공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적용 범위

(1) 이 국가협약은 전기 정보통신매체(방송과 텔레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텔레매체란 방송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서비스를 말하는 것-역자)

(2) 이 국가협약은 1996년 7월 25일 제정되었으며 2002년 6월 21일자 제17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통신법 제3조에 의한 통신사업과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7년 7월 22일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14일자의 법률 제1조에 의해 최종 변경된 <텔레서비스법>(정보통신서비스법) 및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체결되었고 2001년 12월 20-21일 제6차 <방송법개정국가협약> 제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매체서비스-국가협약>은 이 협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정 의

(1) 이 국가협약에서 말하는 어린이라 함은 만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이지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이 국가협약에서

1. <텔레매체>라 함은 텔레서비스법(정보통신서비스법)상의 텔레서비스, 그리고 방송국가협약에서 방송이라고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매체서비스-국가협약> 상의 매체서비스를 말한다.
2. <제공물>이라 함은 방송물 또는 텔레매체의 내용물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방송사 또는 텔레매체 사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허용되지 않는 제공물

(1) 형법상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공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형법 제86조의 의미에서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거나 민족간 사상적 이해를 부정하는 내용의 선전수단을 묘사한 것.
2. 형법 제86(a)조에 따라 위헌적인 단체의 표지물을 사용한 것
3. 국민의 일부 또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풍속적으로 특정한 그룹에 대한 증오심을 충동하고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조장하거나 일부 국민 또는 앞에서 언급한 특정 그룹을 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 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인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
4. 국제형법 제6조 (1)항과 제7조 (1)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국가사회주의(나치) 통치 하에서 저질러진 행위를 공공의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
5. 인간에 대해 가해지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잔혹한 측면 내지 비인간적 측면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 이는 시각적 표현에도 적용됨.
6. 형법 제126조 (1)항에 언급된 위법 행위를 유도하는 것
7. 전쟁을 찬양하는 것
8. 특히 죽어가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에 처한 사람을 묘사하면서 굳이 이러한 형태로 표현, 보도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실제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9.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자연스럽게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로 묘사하는 것, 이는 시각적 묘사에도 해당됨.
10. 음란한 내용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사람과 짐승간의 성행위(수간)를 내용으로 한 폭력 행위, 이는 시각적 묘사에도 해당됨.
11.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록에서 B와 D부분에 등재된 것 또는 이 목록에 등재된 것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것

1호-4호 그리고 6호의 경우에는 형법 제83조(3)항이 또한 적용되며, 5호의 경우에는 형법 제131조(3)항 또한 적용된다.

(2) 아울러 형법적인 책임과는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공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여타 음란한 내용의 것
2.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록에서 A와 C 부분에 등재된 것 또는 이 목록에 등재된 것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것
3. 파급적 매체가 갖는 특별한 효과를 감안할 때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또는 교육에 심각한 침해를 가할 소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텔레매체의 경우는 (1)항과는 달리 문제의 제공물이 사업자측에 의해 단지 성인들에게만 접근(이용자 그룹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일단 한 제공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의한 목록에 등재되면, 내용 면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1)항과 (2)항에 따른 금지는 유효하다.

제 5 조 발달 저해적 제공물

(1) 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공물을 유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경우, 각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제공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170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2)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제공물은 (1)항의 의미에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1)항은 이러한 평가를 받은 제공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제공물에도 적용된다.

(3)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하나를 취할 경우 (1)항의 의무에 부합할 수 있다.

1. 기술적 수단 또는 여타 수단을 통해 각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제공물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본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
2. 제공물의 유포 내지 접근 가능 시간을 각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선정하는 경우

(4) (1)항의 의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는 제공물을 단지 23시에서 6시 사이에 유포하거나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면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와 16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발달을 저해하는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제공물이 22시에서 6시 사이에 유포되거나 접근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소년보호법 제 14조(2)항에 따라 12세 이하에게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는 방송시간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5) 어린이에 한해서만 (1)항의 의미에서의 발달 저해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텔레매체 사업자는 문제의 제공물을 어린이를 위한 제공물과 분리시켜 유포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면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6) 방송에서의 뉴스, 시사적 사건에 대한 방송물 그리고 텔레매체에서의 유사한 제공물은 이러한 형태로 제시하거나 보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광고와 텔레쇼핑에서의 청소년보호

(1) 표시가 되어 있는 제공물의 광고는 해당 제공물의 배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청소년보호법 제18조)은 광고의 목적으로 유포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광고에서는 제공물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한 매체물을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의한 목록에 등재시키는 사안과 관련된 소송이 미결이었다(미결이다)는 점을 적시해서는 안된다.

(2)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광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

1.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미숙한 분별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직접적인 구매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
2.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 또는 제3자를 통해 광고된 물품 내지는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직접 호소하는 것
3.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부모, 교사 또는 신뢰할만한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특별한 신뢰감을 이용하는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것

(3)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물과 격리되어야 한다.

(4) 어린이 또는 청소년층도 겨냥한 광고이거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광고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이들의 미숙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주류 광고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겨냥해서도 안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히 호소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해서도 안된다. 이는 텔레매체에서의 담배 광고에도 해당된다.

(6) (1)항에서 (5)항의 규정은 텔레쇼핑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텔레쇼핑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매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청소년보호담당

(1) 주 단위 경계선을 넘어서는(전국적인) TV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청소년보호담당을 두어야 한다. 이는 발달 저해적 내용물 또는 청소년 유해 내용물을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텔레매체의 사업자는 물론 검색엔진 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2) 50인 이하의 직원 또는 월평균 1천만 이하의 접속건수를 가진 텔레매체 사업자 및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 TV방송사는 해당 사업자가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고 이 조직이 청소년보호담당의 과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나아가 (3)항에 따른 참여와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보호담당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청소년보호담당은 이용자를 위한 대화 창구이며,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제공물의 제작, 구입, 기획, 형

성 단계에서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 있어 청소년 보호담당이 적절하게 그리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청소년보호담당에게 각 제공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담당은 사업자에게 제공물의 제한 또는 변경을 제언할 수 있다.

(4) 청소년보호담당은 자신의 과제 이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은 자신의 활동에 있어 지시에 구속받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담당은 자신의 과제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소년보호담당은 자신의 과제 이행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은 자신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과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작업 성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5)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담당들은 정기적으로 경험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장 방송분야 규정

제 8 조 방송시간의 확정

(1) 독일공영방송연합체(ARD: 제1공영방송)에 가입한 각 주단위 방송공사, 독일제2공영TV(ZDF),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 또는 이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율규제단체는 지침의 형태로 또는 개별적인 형태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 TV에서 특히 시리즈물로 영화가 방영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간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여타 형태의 방송에 대하여 (1)항에 언급된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방송물의 방송이 주제, 주제의 취급 방식, 방송물의 형태, 제시 방법

17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등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시간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 9 조 예외 규정

(1) 공영방송사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공영방송(ARD)에 가입한 주단위방송사, 독일라디오방송, 제2공영TV(ZDF)의 각 당해 기구, 그리고 민영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 또는 인정받은 자율규제단체는 각각 지침의 형태로 또는 개별적인 형태로 제 5조(2)항에 따른 추정과는 다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심의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제공물에 해당된다. 다른 심의결과가 나올 경우 각 주의 청소년최고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각 주의 미디어관청들은 디지털 형태로 유포되는 민영TV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가 이러한 방송물에만 적용되는 단독의 기술을 동원해 방송물을 암호화하거나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어떤 조건에서 제 5조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일치된 정관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방송사는 시청자에 의한 방송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해당 방송물 또는 영화가 방송되는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주미디어관청은 (1)항에 따른 정관에서 특히 효과적인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암호화와 사전 차단에 있어 어떤 요구가 제기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10 조 방송예고와 표시

(1) 제5조 (4)항과 (5)항은 암호화되지 않고 사전에 차단되지 않은 동영상의 프로그램 예고물에도 준용된다.

(2) 어린이 또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효과가 우려되는

방송물은 청각적 표시에 의한 예고가 이루어지거나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체 시간대에 걸쳐 시각적 수단을 통해 해당 연령층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3장 텔레매체 분야 규정

제 11 조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1) 텔레매체 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는 내용의 제공물에 대해서는 문제의 제공물이 적정성을 인정받은 이른바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온라인에서 유해사이트 사전 차단 소프트웨어-역자)에 맞게 프로그래밍하거나 문제의 제공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제5조(3)항 1호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은 적정성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를 통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당해 주미디어관청이라 함은 적정성의 인정 신청이 접수된 주의 미디어관청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은 5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3)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은 연령층에 따라 세분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비교적 절적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인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사라지는 경우 인정은 취소될 수 있다.

176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5) 사업상의 목적에서 또는 대규모로 텔레매체를 보급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제공물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고 과도한 비용이 초래되지 않은 범위에서 인가된 <청소년보호프로그램>에 맞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6)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LM)는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을 인가하기에 앞서 청소년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 예방 조치 또는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한시적 모델실험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2 조 표시 의무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등급)표시가 되어 있거나 각 해당 연령층에게 이용이 허용된 영화 및 게임이 녹화된 비데오테이프 그리고 유포에 적절하며 화상기에 재생 또는 작동이 가능한 프로그램된 여타 매체물과 전적으로 내지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텔레매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표시를 자신의 제공물에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제 4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사업자를 위한 소송

제 13 조 적용 범위

제14조-제21조 및 제24조(4)항 6번째 문장은 주단위를 넘어서는 제공물에만 적용된다.

제14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

(1)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이 국가협약에 따른 사업자 관련 규정이 준수

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이 국가협약의 규정을 의거해 결정을 내린다.

(2) (1)항에 따른 과제의 이행을 위해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가 설치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각 당해 주미디어관청이 (1)항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기구이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당해 주미디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지역적 공공물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다. (5)항은 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다음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1. 각 주미디어관청의 합의로 임명되는 주미디어관청 국장급 인사 6명
2. 청소년보호 담당 주의 최고관청 인사 4명
3. 청소년보호 담당 연방의 최고관청 인사 2명

각 위원은 (2)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한 명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과 대리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재임이 허용된다. 4명 이상의 위원 내지 대리인은 법관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미디어관청의 국장급 인사가 맡는다.

(4) 유럽연합(EU)기구, 연방헌법재판소, 주헌법재판소 소속 인사, 제1공영방송(ARD), 제2공영TV(ZDF), 독일라디오방송, 유럽문화채널 ARTE, 민영방송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인사, 텔레매체 사업자 내지는 <방송국가협약> 제28조의 의미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각 심의위원회에는 적어도 (3)항 1-3호에 적시된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위원 내지 대리인중 한명이 참여해

야 한다. 각 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일 경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심의 절차의 분배를 확정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사무규정에서 정한다.

(6)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이 국가협약에 따른 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지시에 구속받지 않는다. <방송국가협약> 제24조에 따른 비밀준수의 규정은 청소년매체위원회 구성원들과 주미디어관청들의 협의로 구성되는 다른 기구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7)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구성원은 필요한 비용과 경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주의 미디어관청이 일치된 정관을 통해서 규정한다.

(8) 주미디어관청들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을 제공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경제성과 절약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한다.

(9)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위한 제반 비용은 <방송재정국가협약> 제10조에 따른 비율로 각 주의 미디어관청이 부담한다. 각 절차에 참여한 인사들은 당해 주미디어관청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주의 미디어관청들이 일치된 정관을 통해 규정한다.

(10)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위치는 주총리들이 일치된 결의를 통해 정한다.

제 15 조 주미디어관청 위원회의 협력

(1)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는 주미디어관청들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대표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주미디어관청들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의 대표가 원칙적인 사안들, 특히 정관과 지침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2)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미디어관청의 기구들은 이 국가협약의 실행을 위해 일치된 정관과 지침을 공포한다. 당해 주미디어관청 기구들은 제1공영방송(ARD) 가입 방송사들과 제2공영TV(ZDF)의 행동양식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사 및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와 함께 청소년매체보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공동의 경험 교환을 실시한다.

제 16 조 KJM의 관할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는 이 국가협약에 의한 제공물의 최종적 심의를 담당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인가된 자율규제단체와는 상관없이 이 국가협약에 따라 첫번째 문장의 범위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이 국가협약 규정들의 감시
2. 자율규제단체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3. 제8조에 따른 방송시간의 확정
4. 제9조에 따른 예외규정의 확정
5. 암호화 및 사전 차단기술의 심사 및 인가
6.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7.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에서의 표시 신청에 대한 소견 제시
8. 이 국가협약에 따른 법규위반에 관한 결정

제 17 조 KJM 의 절차

(1)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는 직권으로 활동한다. 즉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주의 미디어관청 또는 청소년최고관청의 신청에 있을 경우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법정 구성원의 다수결로 사안을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이 결정권을 갖는다. 의결은 이유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유서에서는 실질적이고 법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의결은 당해 주미디어관청의 다른 기구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의결은 다른 기구들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2)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3)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2년부터 매 2년마다 주미디어관청들에 의해 설치되는 각 위원회, 주의 청소년보호 담당 최고관청에 이 국가협약상의법규 시행과 관련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8 조 청소년보호네트 <jugendschutz.net>

(1) 주의 청소년 최고관청들에 의해 공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사이트 청소년보호네트(jugendschutz.net)는 조직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연계되어 있다. 이 보호네트의 재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미디어관청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주정부에 의한 재원부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주정부 청소년보호 담당 장관들이 의결 조례를 통해 확정한다. 이 조례는 아울러 청소년보호네트의 전문성과 예산상의 독립성을 규정한다.

(2) jugendschutz.net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와 각 주의 청소년

최고관청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3) jugendschutz.net는 텔레매체 제공물을 검사한다. 아울러 jugendschutz.net는 텔레매체에서의 상담과 교육의 과제도 담당한다.

(4) 이 국가협약의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jugendschutz.net는 사업자에게 이를 지적하고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 19 조 자율규제단체

(1) 자율규제단체는 방송과 텔레미디어 분야에서 구성될 수 있다.

(2)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는 정관상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영역의 범위에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국가협약의 규정 및 이를 위해 공포된 정관과 지침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이 국가협약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임명된 심의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특별한 방식으로 청소년보호 문제를 다루는 사회그룹 대표자들의 참여가 배려된 경우
2. 다수의 사업자에 의해 합당한 설비가 보장된 경우
3. 실제로 효과적인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를 보장하는데 적절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자를 위한 판정 기준이 마련된 경우
4. 방송사의 경우 사유서 제출의무를 포함한 심의 규모 및 가능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주법률상 특정한 청소년지원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심의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절차상의 규정이 마련된 경우

5. 결정에 앞서 당해 사업자가 진술할 기회를 갖고 해당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사유를 밝히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 경우

6. 이의신청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당해 주미디어관청이라 함은 자율규제단체가 본부를 두고 있는 주의 미디어관청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의 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주미디어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자율규제단체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인가 조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인가는 4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5) 추후 인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거나 조직의 실제 판정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인가의 취소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의 보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6)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들은 이 국가협약의 적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제 5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사업자를 위한 집행

제 20 조 감독

(1)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어떤 사업자가 이 국가협약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방송사에 대해서는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

해 주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모든 결정을 내린다.

(3)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서 한 방송사가 이 국가협약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가했는데, 당해 방송사가 문제의 방송물을 방송하기 이전에 인가된 자율규제단체에 제출했으며 그 지침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방송사의 청소년보호 규정 준수와 관련된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조치는 인가된 자율규제단체의 결정 또는 결정 부작위가 법적인 판결 재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출이 가능하지 않은 방송물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의해 제4조 (1)항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제외한 청소년보호 위반 주장이 있을 경우 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당해 방송사가 가입한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가 이를 심의한다. 여기에는 첫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결정의 경우에도 첫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4) 텔레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주미디어관청이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해 <매체서비스국가협약> 제22조(2)-(4)항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린다.

(5) 텔레매체 사업자가 이 국가협약의 의미에서 인가된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해 있거나 인가된 자율규제단체의 정관을 준수한 경우에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의해 제4조(1)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청소년보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우선은 당해 자율규제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1)항에 따른 조치는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에서 내리는 결정 또는 결정 부작위가 법적인 판결재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6) 당해 주미디어관청이라 함은 방송사의 인가를 내어준 주 또는 텔레매체 사업자의 본부, 거주지 또는 지속적 체류지가 있는 주의 미디어관청을 말한다. 이에 따른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행위의 계기

가 생겨난 주의 미디어 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7) 주정부는 이 국가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3년후 특히 제17조(3)항에 따른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인가된 자율규제 조직 및 주 청소년최고관청의 소견서를 토대로 (3)항과 (5)항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제 21 조 정보청구권

(1) 텔레매체 사업자는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에 제공물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의 목적으로 제공물에 무상 접근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감시, 위반사항의 추적 또는 감독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제공물의 요청 내지 이용은 무상이다. 사업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요청 내지는 인지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제공물을 차단하거나 이용 내지 인지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 연방행정법원 상고

사법적 절차에 있어 연방행정법원 상고는 문제의 판결이 이 국가협약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내려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제 6장 공영방송을 제외한 사업자의 위법사항 처벌

제 23 조 처벌 규정

제4조(2)항 첫번째 문장 3호와 두번째 문장을 위반하여 유포 매체의 특별한 효과를 감안할 때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발달 내지 교육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명백한 제공물을 유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자는 최고 일년의 징역형 내지 벌금형에 처한다. 범행자가 과실로 행동한 경우에는 6개월 징역형 내지 180일간의 벌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24 조 법규 위반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1. 다음과 같은 제공물을 유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 ① 제4조 (1)항 1호에 위반해 형법상 의미에서 선전수단을 묘사하는 것
- ② 제4조 (1)항 2호에 위반해 위험적인 단체의 표지물을 사용한 것
- ③ 제4조 (1)항 3호에 위반해 국민의 일부 또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풍속적인 면에서 특정한 그룹에 대한 증오심을 충동하고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조장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국민 앞에서 언급한 특정한 그룹을 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 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인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
- ④ 제4조 (1)항 4호에 위반해 국제형법 제6조 (1)항과 제7조 (1)항에서 언급한 것으로 국가사회주의(나치) 통치 하에서 저질러진 행위를 공공의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
- ⑤ 제4조 (1)항 5호에 위반해 인간에 대해 가해지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폭력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잔혹한 측면 내지 비인간적 측면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 이는 시각적 묘사에도 해당됨
- ⑥ 제4조 (1)항 6호에 위반해 형법 제126조 (1)항에 언급된 위법 행위

를 유도하는 것

- ⑦ 제4조 (1)항 7호에 위반해 전쟁을 찬양하는 것
 - ⑧ 제4조 (1)항 8호에 위반해 특히 죽어가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에 처한 사람을 묘사하면서 굳이 이러한 형태로 표현, 보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실제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 ⑨ 제4조 (1)항 9호에 위반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자연스럽게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로 묘사하는 것, 이는 시각적 묘사에도 해당됨
 - ⑩ 제4조 (1)항 10호에 위반해 음란한 것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사람과 짐승간의 성행위(수간)를 내용으로 하는 폭력 행위, 이는 시각적 묘사에도 해당됨
 - ⑪ 제4조 (1)항 11호에 위반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의한 목록에서 B부분과 D부분에 등재된 것 또는 이 목록에 등재된 작품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것
- 2. 제4조 (2)항 첫번째 문장의 1호와 두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여타 음란한 내용을 담은 제공물을 유포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경우
 - 3. 제4조 (2)항 첫번째 문장의 2호와 두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록에서 A와 C 부분에 등재된 것 또는 이 목록에 등재된 것과 전적으로 내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제공물을 유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 4. 제5조 (1)항에 위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임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격체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공물을 각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제공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려하지 않고 유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 5. 제6조 (1)항 첫번째 문장과 (6)항에 위반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제공물을 광고나 텔레쇼핑에서 유포시키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경우
 - 6. 제6조 (1)항 두번째 문장과 (6)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을 유포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7. 제6조 (1)항 세번째 문장과 (6)항에 위반하여 언급된 사항을 적시한 경우
8. 제7조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담당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9. 방송물 형태를 제8조 (2)항에 따른 방송시간 제한을 위반해 유포시킨 경우
10.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 또는 이를 위해 인가받은 자율규제단체가 제9조 (1)항의 첫번째 문장의 추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5조 (2)항에 의한 발달 저해적 방송물을 유포한 경우
11. 제10조 (1)항에 위반하여 동영상의 프로그램 예고물을 적절한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암호화하지 않고 유포시킨 경우
12. 제10조 (2)항에 위반하여 청각적 표시가 없이 방송물을 예고하거나 방송물이 방송되는 전 시간에 걸쳐 시각적 수단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방송물을 유포한 경우
13. 제12조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고 제공물을 유포한 경우
14. 제20조 (1)항에 의한 당해 감독관청의 집행 가능한 처분을 무시한 경우
15. 제21조 (1)항에 위반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 제21조 (2)항 세번째 문장에 위반하여 당해 감독관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공물을 봉쇄한 경우

(2) 나아가 고의적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제11조 (5)항에 위반하여 텔레매체를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것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2. 제19조 (4)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 인정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3)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0만 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규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 1호의 의미에서 당해 행정관청은 당해 주미디어관청이다. (1)항과 (2)항 1호의 경우에는 방송사 인가를 내어주었거나 텔레매체 사업자의 본부, 주거지 또는 상시 체류지가 있는 주의 미디어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른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행위의 계기가 생겨난 지역의 주미디어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2)항 2호의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의 본부가 위치한 주의 미디어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른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의 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미디어관청이 관할권을 갖는다.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

(4)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소송의 개시에 대해 다른 주의 미디어관청들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상 다수의 주에서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들은 어떤 관청이 소송을 계속 담당할 것인지를 조율한다.

(5) 당해 주미디어관청은, 해당 사업자가 이 국가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리고 (1)항 또는 (2)항에 따른 규정위반 절차에서 내려진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을 해당 사업자의 제공물에 유포시키거나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표의 내용과 시기는 당해 주미디어관청이 직무상의 재량권을 발휘해 확정할 수 있다.

(6) (1)항과 (2)항에서 언급된 법규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한다.

제 7장 종결 규정

제 25 조 여타 국가협약의 개정

(1) 1991년 8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20/21일 제6차 <방

송법변경국가협약>의 제1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방송국가협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목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① 제2①조의 제목은 삭제된다.
 - ② 제3조의 제목은 다음으로 한다: <제3조 일반 프로그램원칙>
 - ③ 제4조의 제목은 다음으로 한다:
<제4조 허가되지 않는 방송물, 청소년보호>
2. 기존의 제2①조는 제3조가 된다.
3. 기존의 제3조는 제4조가 되며, 다음과 같다:
<제4조
허용되지 않는 방송물, 청소년보호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의 방송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4. 기존의 제4조는 삭제된다.
5. 제5조 (1)항의 두번째 문장에서 <(2)항에서 (11)항> 참조는 <(2)항에서 (12)항> 참조로 대체된다.
6. 제7조 (1)항의 두번째 문장과 세번째 문장은 삭제된다.
7. 제16조 (1)항에서 <제3조> 참조는 삭제된다.
8. 제40조 (1)항의 두번째 문장에서 <2004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는 <2010년 12월 31일>로 대체된다.
9. 제46조 첫번째 문장에서의 <제3조> 참조는 삭제된다.
10. 제47조 (1)항 세번째 문장은 삭제된다.
11.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① (1)항 첫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 a) 1호에서 12호는 삭제된다
 - b) 기존의 13호에서 37호는 1호에서 25호로 대체된다.
 - ② (5)항의 두번째 문장과 세번째 문장은 삭제된다.
12. 제49조와 제53①조는 삭제된다.

(2) 1991년 8월 31일자로 제정됐으며 2000년 7월6일-8월7일 제5차 <방송법개정국가협약>의 제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ZDF(제2공영TV) 국가조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목차에서 제8①조의 제목은 삭제된다.
2. 제7조 (1)항 두번째 문장에서 <(2)항에서 (11)항> 참조는 <(2)항에서 (12)항> 참조로 대치된다.
3. 제8조는 다음으로 한다:
<제 8조
허용되지 않는 방송물, 청소년보호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의 제2공영TV(ZDF)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4. 제8①조는 삭제된다.

(3) 1993년 6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7월6일-8월7일의 제5차 <방송법개정국가협약> 제4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독일라디오방송-국가협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8조는 다음으로 한다:
<제8조
허용되지 않은 방송물, 청소년보호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의 독일라디오방송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2. 제34조 (4)항의 후반부 문장에서 <제21조 (6)항 6번째 문장> 참조는 <제21조 (6)항 7번째 문장> 참조로 대치된다.

(4)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20/21일자 제6차 <방송법개정국가협약> 제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매체

서비스-국가협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목차에서 제24①조의 제목은 삭제된다.
2. 제2조 (1)항 두번째 문장에는 <방송국가협약>이라는 말 다음에 <및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이라는 말이 추가된다.
3. 제12조는 다음으로 한다:

<제12조

허용되지 않은 방송물, 청소년보호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의 매체서비스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4.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 ① (1)항은 삭제된다
- ② 기존의 (2)항-(4)항은 (1)항에서 (3)항이 된다.

5. 제2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 ① (1)항은 삭제된다.
- ② 기존의 (2)항과 (3)항은 (1)항과 (2)항이 된다.

6.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 ①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 a) 4호-9호는 삭제된다.
 - b) 10호-16호는 4호-10호로 된다.
- ② (2)항에서는 <1호에서 3호 및 10호에서 16호> 참조가 <1호에서 8호> 참조로 대체된다.
- ③ 다음과 같은 (3)항이 추가된다.

<(3) (1)항에 언급한 법규 위반의 공소 시효는 6개월로 한다.>

7. 제24①조는 삭제된다.
8. 25조 (3)항에는 날짜 <2004년 12월 31일>이 <2006년 12월 31일>로 대체된다.

제 26 조 유효 기간, 해지

(1) 이 국가협약의 유효 기한은 확정하지 않는다. 이 협약을 체결한 각 주정부는 일년의 시한을 두고 당해년도 최종일을 시점으로 국가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가 가능한 첫 시점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협약 관계는 제20조 (3)항 및 (5)항과 관련해서는 2008년 13월 31일자로 처음으로 연말 기준 6개월간의 시한을 두고 해지될 수 있다. 이 시점까지 국가협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시한을 둔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는 주총리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한 주의 해지로 인해 다른 주들의 협약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여타의 주는 해지 선언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의 시한을 두고 같은 시점에 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25조에서 변경된 국가협약들에 대한 해지는 각 국가협약에서 명시된 해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27 조 통지

이 국가협약의 변경사항들은 표준과 기술규정 영역에서의 정보 절차에 관한 지침 98/34/EG 개정을 위한 1998년 7월 20일자의 유럽의회 및 유럽각료회의 지침 98/48/EG 에 따라 통지의 의무가 있다.

제 28 조 효력 발생, 새로운 공표

(1) 이 국가협약은 200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다. 2003년 3월 31일까지 주총리회의 의장실로 모든 비준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국가협약은 무효가 된다.

(2) 주총리회의 의장실은 각 주에 비준서류의 공탁을 통보한다.

(3) 각 주총리실은 <방송국가협약>, <제2공영TV(ZDF)국가협약>, <독일라디오방송국가협약>, <매체서비스-국가협약>의 조문을 이 국가협약의 제25조를 반영하여 새로운 일자로 공포할 권한을 갖는다.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¹²⁾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는 다음의 법률을 의결하고 공포한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KJHG) 시행을 위한 제3차 법률 청소년사업, 청소년 사회사업 및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촉진을 위한 법률 - 아동 및 청소년촉진법 - (3. AG-KJHG-KJFoeG).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사회법전(SGB) 제11조-14조에 기술된 청소년사업, 청소년 사회사업 및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라는 행동 영역의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은 특히 해당 영역의 내용적, 재정적 구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틀에서 이러한 행동 영역의 자립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규정한다.

12)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KJHG) 시행을 위한 제3차 법률: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및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촉진을 위한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촉진법(3. AG-KJHG-KJFoeG), 2004년 10월 12일자

제 2 조 원칙

(1) 아동 및 청소년사업은 적절한 제공물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고려하면서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연대적 협력, 자결적 삶, 생태학적 의식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책임성 있는 행동, 사회적 협력, 민주적 참여,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는 토론,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 및 삶의 양식에 대한 관용의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사회사업은 특별한 사회 교육학적 조치를 통해 특히 개인적, 사회적 불이익을 보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사업은 특히 학교, 학교에서 직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격의 발달을 강화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수한 지원 조치 및 예방적 조치를 제공한다.

(3)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위험과 위협적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문제의 원인과 대결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자립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매체보호의 목적과 과제도 포함해야 한다.

제 3 조 대상그룹, 특수한 생활환경의 고려

(1) 이 법률의 행동 영역에 있어 제공물과 조치들은 특히 6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특별한 제공물과 조치들은 27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한다.

(2) 공공의 청소년 지원기관은 불리한 생활환경에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 및 이주 청소년들의 특별한 요구가 배려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공물과 조치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소외,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장

에 아동과 청소년들도 청소년사업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 4 조 남녀 청소년 지원/성별로 세분화된 아동 및 청소년보호사업

공공 또는 민간 청소년지원조직들은 제공물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남녀의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에 유의해야 한다(Gender Mainstreaming). 공공 및 민간의 청소년지원조직들은 이와 관련해

- 남녀의 성별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배려하고,
- 이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성적 특수성에 따른 불이익과 역할 분담 해소에 기여하며,
- 남녀 아동과 청소년의 동등한 참여와 호칭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이 건설적인 갈등 해결의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하며,
- 다양한 삶의 설계와 성적 정체성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 5 조 문화의 다양성 배려 교육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관용, 상호 존중, 민주주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교육 및 교양이라는 전문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타문화 수용능력 및 상호 존중의 능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1) 공공의 청소년 지원기관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발육 상태에 맞추어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적기에 적절한 형태로 그리고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교육받고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 청소년지원기관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하는 것

196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상담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2)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계획과 결정 및 조치들, 특히 주거환경과 교통계획, 수요에 부응하는 놀이터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공공시설의 건축 계획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주정부는 기획의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가 걸린 경우, 그리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4) 제10조(1)항 1-9호에 따른 제공물의 기획에 있어 공공 및 민간 조직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여타 시설물 및 제공물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특수한 요구를 배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협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 7 조 청소년지원과 학교와의 협력

(1)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기관과 민간 청소년지원조직은 자신들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이들 조직들은 특히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지원 제공물의 경우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2)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기관은 이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사회 공간적, 교육적 활동을 촉진하고 이 사회영역(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위한 법률 및 법규 관보 2004년 10월 27일자 제37호)에서 활동하는 학교들과 인정받은 민간 청소년지원 조직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3)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조직은 통합된 청소년지원 및 학교 발전계획의 틀 속에서 협력의 중점 사항과 협력 분야 그리고 이행 단계들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조율된 구상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기획의 책임

제 8 조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및 청소년지원 기획단계에서의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

(1) 사회법전(SGB) 제8권 80조의 의미에서 청소년지원계획은 지역의 공공청소년지원기관의 상시적 과제이다. 이 계획은 아동과 청소년 및 이들과 가족들의 소망, 이해 및 욕구의 파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들의 생활 환경에 있어 새로운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활동 근거 및 재정적 기획을 이러한 발전 추세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사업, 청소년지원사업 그리고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의 인력 및 재원 확충 그리고 촉진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사회법전(SGB) 제8권 79조와 80조에 따른 기획과 보장의 의무 차원에서 이 법률에 기술된 지원영역에 있어서의 시설물, 서비스와 행사 및 전문 인력의 현황과 수요를 각각 파악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확정한다.

(3) 청소년지원 기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획분야의 목표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관여되는 것인 경우 다른 기획 분야의 목표들과 조율되어야 한다.

(4) 청소년지원 기획에는 인정받는 민간 청소년지원 조직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내용, 목표, 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동반자적인 협력 활동을 기초로 적절한 형태의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9 조 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

(1) 주정부의 소관부처는 매 회기마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주정부 차원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목표와 과제

198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들을 기술해야 하며, 이 법률에 명시된 행동 영역과 관련해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 작성에 있어 소관 부처는 공공 및 민간의 청소년 지원 조직들 그리고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해당 부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가 배려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의 소망, 이해 및 욕구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있어 새로운 발전 추세를 유연성있게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계획은 주의회 회기마다 한번씩 주정부가 작성하는 아동 및 청소년보고서의 결과들을 반영해야 한다.

(4)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주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지원 분야

제 10 조 아동 및 청소년사업의 중점

(1) 아동 및 청소년사업의 중점 사항은 특히 다음을 포함된다.

- 1) 정치적, 사회적 교육: 이 교육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조기에 형성시키고, 정치적 과정과 갈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하며,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격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학교와 조율 하에 교육학적 측면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교양,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제공물을 제공해야 한다.
- 3) 문화적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문화적 형태 차원에서의 창의성

과 미적 감수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공물을 포괄하고, 인격의 발달에 기여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의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를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청소년 예술 및 창의성 학교도 속한다.

- 4) 스포츠 및 여가 중심의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스포츠와 놀이, 여가 활동에 수반되는 건강, 교육 및 사회적 기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격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5) 아동 및 청소년 휴양: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과 휴가 조치들은 휴양과 긴장 해소, 자아실현과 자아 발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신과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며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 6) 매체 관련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매체의 사용 능력 습득, 특히 새로운 매체 이용에 대한 비판적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7) 다중 문화적 아동 및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중 문화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8) 성적 차이를 고려한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특히 기회의 균등을 촉진하고 성에 대한 편견 해소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9) 국제적 청소년 사업: 이 사업은 국제적 의사소통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평화의 보장에 기여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민간 청소년 지원 조직들은 이러한 역점 사항들의 범위에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떠맡는다. 민간 청소년지원 조직의 활동에서 중요한 기본 원칙은 복수성과 자율성, 가치 지향성, 방법상의 다양성 및 개발성, 참여의 자발성이다.

제 11 조 청소년단체 사업

청소년단체 사업은 청소년들에 의해 스스로 조직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청소년 단체들과 이들의 연합체는 자기 책임적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명예적 참여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 사업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제 12 조 공개적 청소년사업

공개적 청소년사업은 특히 시설물과 조치들, 프로젝트들, 자발적 그룹들, 기동성 있는 제공물의 형태, 모험적 활동 및 놀이터 활동의 형태로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상호 협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한 대상 그룹을 위해서는 특수한 지원과 예방의 제공물을 제공한다.

제 13 조 청소년사회사업

청소년사회사업의 과제는 특히 사회 교육학적 상담, 학교 및 직업 교육의 동반과 촉진,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교육 및 직업에의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 관련 제공물도 속한다.

제 14 조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을 위협한 영향력, 물질, 행동으로부터 예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러한 보호에서는 공공 및 민간의 청소년지원 조직들 특히 학교, 경찰, 행정 관청과 긴밀한 협력을 기해

야 한다. 청소년 지원 조직들은 아동과 청소년 및 양육자들에게 위협이나 이와 연관된 결과들을 적기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교육학적 제공물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직 또는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재교육 및 심화 교육 조치도 포함된다.

제 4 장 보장의 의무, 지원의 원칙

제 15 조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 기관을 통한 지원

(1) 지역의 공공 청소년 지원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사회법전(SGB) 제8권 79조에 따라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 기관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소관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시설물, 서비스, 행사 및 전문 인력이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민간 청소년 지원조직 및 시민단체는 이 법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한은 사회법전(SGB)의 기준 그리고 지역 청소년 지원계획의 내용과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발생하는 인적, 물적 비용에 관한 것이다.

(3) 지역의 공공 청소년 지원기관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은 청소년 지원에 제공되는 전체 재원을 대비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4) 지역의 공공 청소년 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원계획을 근거로 대표단이 선출될 때마다 확정되는 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02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제 16 조 주정부의 지원

(1) 소관 부처는 예산의 기준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을 근거로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지원한다.

(2)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은 이 법률의 영역에서 주단위 차원에서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 지원 조직, 주단위 본부를 둔 기존의 민간 청소년 연합체 및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괄해야 한다.

(3)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 기관은 지역 차원의 조치를 위한 지원금 또는 자체의 기부금을 확보하는 경우, 주정부의 지원금에 적절한 비율로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정부의 재원이 조직의 예산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직의 조치들이 지역 청소년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4)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지원인 경우, 주정부의 소관 부처는 개별적인 경우 이러한 지원을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과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지원 조직이 효율성의 토론이라는 형태로 서비스의 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처가 행정 규정에 의거해 재무부측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17 조 민간 청소년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

(1) 민간 청소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은 특히 지자체의 청소년지원계획 또는 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에 수용된 시설물, 제공물 및 프로젝트의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원은 전체 비용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2) 민간청소년지원조직의 주 단위 중앙조직에 대한 지원의 경우, 주 단

위 중앙조직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및 물적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3) 민간청소년지원조직들의 주단위 연합체는 주정부 소관 부처의 양해 하에 이러한 연합체가 형성된 경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항의 두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4)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의 행동 구상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주단위에서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조정하고 각종 위험 및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개발하는 주단위 조직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단위 조직체는 특히 공공 및 민간 청소년지원조직, 학교, 경찰, 행정당국 및 아동, 청소년보호 분야의 다른 조직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5) 지원의 내역과 규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가 행정 규정을 통해 정한다.

제 18 조 명예직 활동에 대한 지원

명예직 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다. 지역의 공공 청소년지원 기관과 주정부의 소관 부처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주정부의 소관 부처는 다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1) 명예직으로 아동 및 청소년사업을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재교육 및 심화 교육

(2) 1974년 7월 31일자로 제정되고 2001년 9월 25일로 개정된 명예직 청소년지원 활동가의 특별 휴가 보장에 관한 법률(특별휴가법)에 따른 명예직 청소년사업 종사자들

제 19 조 서비스의 발전, 시범사업 지원

아동 및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및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있어 제공물과 구조에 대한 성찰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주정부의 소관 부

204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처는 특히 다음을 지원한다.

- (1) 주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상 중요한 행사, 출판 및 연구 활동
- (2) 목표 설정, 내용, 시행 방법 면에서 새로운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데 적합한 미래 지향적 활동들에 대한 검증 조치들
- (3)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이 다른 정책 분야와 중첩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들 그리고 취학의무 연령의 아이들, 특히 10세-14세 연령층의 아동을 위한 전일제 제공물을 창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들

제 5 장 종결 규정, 발효

제 20 조 시행 규정

- (1) 이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은 사회법전의 규정 - 행정절차(SGB 10장)를 따른다.
- (2) 소관 부처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 규정을 마련한다.
- (3) 이 법률에서 말하는 소관 부처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문교, 청소년 및 아동부를 말한다.

제21조 경과 규정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인프라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도 ‘아동 및 청소년계획’은 이 법률에서 규범화된 지원의 원칙들이 고려되고 청소년지원 조직들의 활동이 계속 제한받지 않도록 작성한다.

제 22 조 발효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첫 번째 문장과는 달리 제15조, 16조, 17조는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뒤셀도르프, 2004년 10월 24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 페터 슈타인부뤼크 총리
- 내무 및 재무장관 : 프리츠 베렌스 박사
- 보건,사회,여성 및 가족부 장관 : 비르기트 피셔
- 문교, 청소년 및 아동부 겸 경제노동부장관 : 우테 셰퍼

Ⅲ. 프 랑 스

1. 프랑스 법무부 청소년보호실 및 기초
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조직과 기능
2. 청소년 보호정책 방향
3. 청소년 보호담당자의 신분규정

III. 프랑스

1. 프랑스 법무부 청소년 보호실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보호 조직과 기능¹³⁾

1) 프랑스 법무부 청소년 보호실

(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1) 임무

① 청소년과의 사회적 관계 재정립

각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 청소년 비행과의 전쟁,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동화를 돕기 위한 청소년 변화에 대한 관심은 모두 오늘날 청소년보호실이 직면한 과제이다.

② 교육 우선의 법칙

정부는 직접적으로(공적 부문) 혹은 인가받은 단체를 통하여 판결의 대상이 되는 비행 청소년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사회생활에 다시 동화하도록 도와줄 임무가 있다. 판결과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는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이는 가정환경에 개입 및 조사, 교육 기관에 배치, 기숙기관이나 보호가정에 숙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13) (출처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et d'études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2004).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 Une administration, des missions, des services.)

(2) 제도적 틀

미성년 청소년을 위한 특수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생겨났다. 이는 청소년보호실의 관리 하에 있는 전문 서비스 기구들을 통한 청소년의 교육적 보호에 기초하고 있다.

→ 비행 아동에 관한 1945년 2월 2일자 명령은 형사처벌보다 교육적 조치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비행 청소년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형무 행정 서비스인 비행 청소년 교육은 1945년 9월 2일자 명령에 의해 전면적으로 법무부의 한 실로 편입되었다. 이 기관은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 활동도 청소년이 사회에 다시 동화하는 것을 돕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 1958년 12월 23일자의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명령은 청소년의 건강, 안전, 정서가 위험에 처하거나 청소년의 교육 조건들이 상당 부분 위협 받는 경우에까지 아동판사와 청소년보호실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감독 교육부는 청소년보호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3) 다양해진 청소년 보호 조치

청소년보호실은 비행 청소년의 보호, 정신적 육체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보호, 판결에 의해 상당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성년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청소년보호실은 청소년들을 조사, 구분하고 이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공적 부문이나 인가받은 단체 부문에 속한 구조 속에서 사회 내 청소년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임무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보호실은 청소년을 위험에 처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사회 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성년이 된 청소년 등, 3개 범주의 청소년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① 위험에 처한 청소년

→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법률적 지원

민법 375조에서 375-8조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 안전 혹은 정서가 위험에 처하거나, 이들의 교육 조건이 상당부분 위협을 받은 경우, 교육 지원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 명령 될 수 있다(민법 제375조)” 또한 다음의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판사는 청소년이 각 가정 내에서 보호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가족들이 시행되는 조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비행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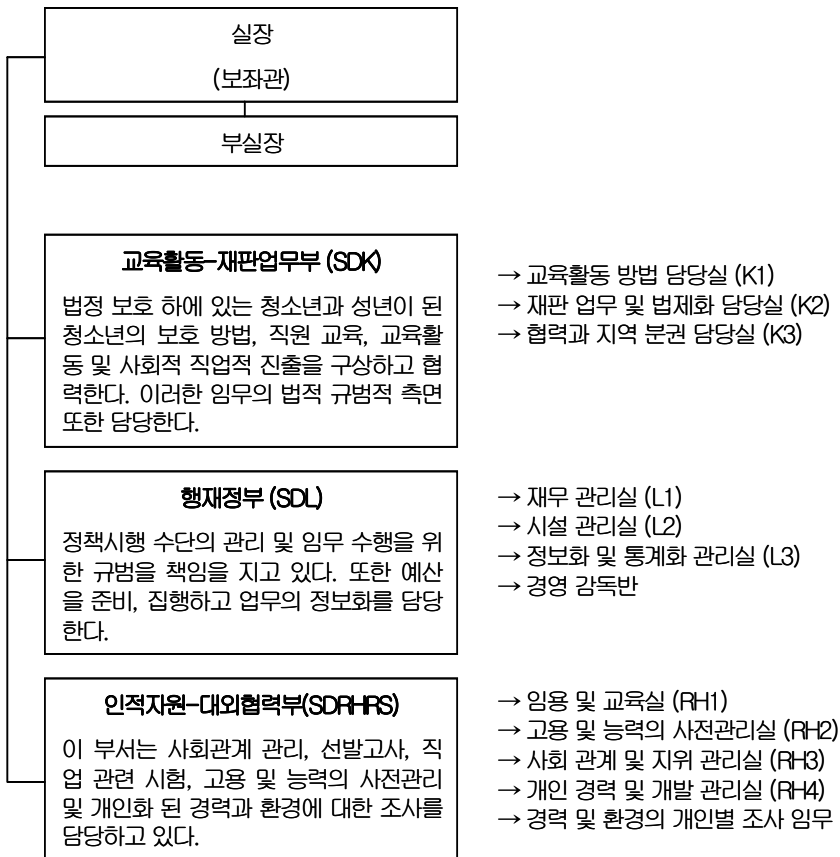
→ 청소년에 관한 형사 재판의 법칙

모든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인정되는 시기부터는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 있다. 1945년 2월 2일자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책임 감각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재판소는 우선적으로 교육적 조치를 선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상황과 인격에 따라 최소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교육적인 처벌이,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미성년의 최고형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최고형의 절반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하며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제외될 수 있다. 1945년 이후 다양한 법들이 초기 법안(재판을 위한 방향과 계획 법 참조)의 개정을 야기했다.

③ 성년이 된 청소년

1975년 2월 18일자 법령은 성년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1974년 7월 5일자 법령의 일부 효력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 동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세 이하 청소년들이 아동 판사에게 법적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소년의 동의를 받는다. 판사가 결정한 조치들은 청소년보호실이나 정부에 의해 인가 받고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단체 부문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④ 조직도



2)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보호 활동의 조직

L'Organisation départementale

(1)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계획

2001년 5월 15일 자 법무부 부령¹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별 기능을 초월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과 각 서비스 간의 강한 연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을 세우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청소년의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다음 두 개의 기본 방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교육적 기능 지향
- 가장 효율적인 지역화 활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을 형식화하는 문서이다. 계획에서는 해당 부문(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과 지역적 배경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청소년 보호 방침들을 시행하는 조건들을 명시한다. 이 계획은 몇 년에 걸친 중단기 계획이다. 또한 방향, 조직 그리고 방법에 관해 각 기초자치단체별 전망을 세운다.

기초자치단체별 계획의 구상은 청소년보호실 행정 활동의 연장이다.

- 비행 청소년 교육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1983년 4월 11일자 부령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목표와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계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정책 구성의 과정을 형식화하도록 요구한다.

14) 2001년 5월 15일 자 방침 공문은 도차원의 업무 조직에 관한 것이다 (NOR JUS F 01 500 69 C)

- 기초자치단체 계획과 관련된 1990년 6월 21일자 부령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이 제정된 후 만들어진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와의 협력업무를 중시한다.

오늘날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새로운 교육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지며,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인가받은 단체)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계획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①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교육적 기능을 지향한다.

이는 각 교육적 기능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인가받은 단체 부문과 다른 협력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해결책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하며, 직업인들의 작업장을 개방하는 교류 조건들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각 기능에는 사법적 처분, 즉 직업적 혹은 교육적 사회 진출, 개방 환경의 교육활동, 조사, 법원 산하 교육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다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 교육 계획들과 보호의 질적인 보장
- 공적 부문 서비스 간의 상호보완성 확보
-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간 협력
-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각 사회분야의 관계자들과 청소년보호실 산하 서비스들 간의 보충관계 구축

② 각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교육활동을 지역화한다.

이 계획을 통해 이용자와 청소년보호실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기초자치단체 기관

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각 서비스들이 지역 공공정책과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법적, 행정적 지역이나, 지역별 고용 정책 구역, 생활 구역, 지방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 사법적 보호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청소년 보호 정책 대상 청소년에 관련하여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공정책(도시 정책, 지역 안전계약, 정부-광역자치단체 간 정책계획 등)¹⁵⁾과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활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한다. 이러한 지역별 참여는 청소년보호실의 서비스와 그 전문가들의 기능을 더욱 확실히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신뢰를 공고히 하도록 한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단위, 서비스, 기구로 구성된다.

교육 단위(unité)는 청소년 보호 현장을 일컫는다. 모든 단위는 서비스장의 감독 하에 있다. 또한 서비스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각 서비스 책임자가 각 단위를 이끈다.

서비스(service)는 청소년보호실의 가장 하위 단위의 서열을 이룬다. 각 서비스에는 서비스장이 있으며, 각 서비스장이 서비스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각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단위로 구성된다.

기구(dispositif)는 실제적인 위계상의 조직이라기보다 기능적 조직으로서 교육 활동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구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일련의 교육 단위들을 그룹으로 묶는다.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각 서비스를 지지하고 지원하며, 활동을 관리 평가하기 위한 조건들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능과 촉진 정책 역할을 한다. 각 계획은 단지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 방식의 향상

15) 국가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결정된 정책을 포함함.

과 청소년보호실 임무 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로도 수행된다. 조직과 관리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들로서, 각기 다른 관계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리, 추진 업무 및 기관을 제도화함으로써 각 직책 담당자가 함께 수행하는 계획을 기초로 하여 보호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단위의 계획

서비스의 계획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 부장이 구상하고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이 인가한다. 서비스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근대화 및 개편을 위한 의지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실에서는 1993년 8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러한 계획 수립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실의 모든 기관들, 즉 기숙시설, 교육활동센터, 법원산하교육부, 주간센터(centre de jour) 등과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세우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다.

서비스의 계획은 각 서비스의 임무, 조직, 기능, 업무 프로그램 및 연간 평가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구적인 요소와 비 항구적인 요소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서비스 업무상대에게 제공되는 보고 문서의 역할도 한다. 서비스의 계획은 적법성에 부합되어야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방향의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직원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통해 서비스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이들은 서비스의 개인 및 전체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직과 업무방법 그리고 이론적 참고 사항들을 명시하게 된다. 정책의 방향, 일반적인 목적, 서열간의 규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율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계획은 사법질서 및 행정질서 안에서 각 서비스가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측면도 만들어낸다.

1993년 8월 30일자 공문은 각 서비스 계획의 핵심 기본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 활동의 임무와 일반적 범위
 - 구조 내 책임의 일반적 원칙
- 사법 및 행정적 범위
 - 방침 본문, 부령, 기초자치단체 법령
 - 기초자치단체 계획에 기재
 - 서비스의 역사적 요소 및 지리 사회학적 환경 요소
 - 보호 인구, 법적 지위 및 안내 방식
 - 물적 인적 수단: 건축 범위, 직원, 노동 시간, 예산, 다양한 수단 등
 - 법원과의 관계
 - 서비스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 이론적 참고 사항 및 교육적 선택사항
 - 교육활동은 공통된 교육적 참고사항 및 선택사항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서비스 계획은 사용하는 교육 매체(les mdias ducatifs)들을 명시해야 한다.
- 서열 및 기술적 조직
 - 현재 조직도
 - 기능 및 직위별 업무 정의 : 업무표, 회의, 집단 모임(청소년, 부모들과의 만남 등등)
 - 예산 수립 및 집행

■ 청소년 생활 수칙

- 수용, 체류, 외출, 학업 및 직업 활동,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부모와의 관계, 내규 등등
- 1993년 8월 30일자 공문은 논의와 협상을 통해 세워진 생활수칙이 교육활동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와 자유 이행의 조건들로부터 규칙을 준수하면서 사회화 및 시민성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 연간 업무 계획

- 보건 관련 업무, 특수 서비스와의 협력, 스포츠 활동의 시행, 학업 지원 등의 특별 목표는 매년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다. 연간 업무 계획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며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계획은 연간 활동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다. 또한 서비스 구조 속에 일어난 변화나 초기 이론적 선택 사항들 중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고려하여 변경되고 보충될 수 있다.

(3)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보호실의 서비스 조직 및 인력

청소년보호실은 공적 부문의 기관들을 관리하고, 법무부가 인가한 단체의 1,184개의 기관들과 서비스들을 감독한다. 청소년보호실은 시도 담당실과 기초자치단체 담당실¹⁶⁾로 구성되며, 이 담당실들은 상당부분 지역화된 공적 부문 서비스들에 대해 서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인가받은 부문의 기관 및 서비스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보호실 산하에는 다음의 기관들이 있다.

16)* 프랑스 행정구역 *région*과 *département*은 우리나라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15개 청소년보호실

- 비행 청소년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평가한다.
-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조화를 꾀한다.
-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에 자금을 배분하고 재정 관리를 감독한다.
- 사법 당국에서 위임한 청소년 보호를 담당할 정신적 육체적 관리 인력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도지사를 대신하여 통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재정적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도지사 단독이나 혹은 도의회 의장들 간에 협의된 의견을 통해 결정된 위의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체계를 세우는 일에도 협력한다.

② 100개의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보호실

-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분의 감독 및 업무 추진을 담당한다.
- 인건비 및 예산을 관리한다.
- 시·도 담당실과 연계하여 단체 부문에 대한 관리 및 설비작업 감독에도 참여한다.
- 정부의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공공정책의 시행을 돕는다.

(2003년 1월 1일 기준) 327개 기관, 즉:

- 75개 교육활동 기숙시설
- 5개 숙박시설
- : 8개 집중교육센터
- 22개 사회동화를 위한 교육활동센터를 포함한 199개 교육활동센터
- 43개 임시 쉼터
- 10개 법원산하교육부

③ 서비스

2002년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은 27,598명의 비행 청소년과 9,424명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 964명의 성년이 된 청소년을 보호하였다.¹⁷⁾

■ 법원산하교육부 (SEAT)

이 기관은 아동재판소가 있는 상위 법원에 속해 있다. 주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고(범죄행위 후 경찰당국의 요청으로 검사실에 출두한) 다양한 부류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방침을 세우고, 구치를 대신할 대안책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형무 행정 내 사회교육서비스와 연계하여 투옥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한다. 또한 다른 기관들처럼 보호감찰, 법적 관리, 사회봉사명령, 교정 또한 드물지만 개방형 교육지원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활동 기숙시설 (FAE)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가정에 머물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이들을 보호한다. 이곳에 배치한 조치는 개인 발달에 적합한 생활의 틀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기숙시설은 종종 기관 외부, 즉 원룸,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보호 가정에서 이루어지나, 서비스 계획에 따라 항상 담당실장 및 교육팀 책임하에 있다.

대부분은 도시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적 자원인 학교, 사회교육기관, 문화 스포츠 시설 등을 이용한다. 한편 문화 스포츠 활동은 기숙기관 내부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 학업 및 직업 준비를 위한 주간 센터

여기에서는 과거 어려운 환경을 이유로 모두의 권리인 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사회동화훈련 및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17) 출처 : 2003년도 사법부 통계.

여기에서는 문맹을 퇴치하고자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재교육활동을 실시하며 다양한 교육적 매체(정보화 시설, 연극, 운동 등)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업체나 봉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개방형 교육활동

개방형 교육 서비스들은 대부분은 각 청소년의 생활 환경, 즉 대부분은 가정에 맞추어 진행되는 교육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교사는 각기 다른 방식과 활동(학업, 직업세계에 편입, 문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돕게 된다. 교사의 업무는 또한 부모들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도와준다. 개방형 교육 서비스들은 교육방향과 조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개방형 교육지원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면서 또한 보호감찰, 법적관리, 사회봉사명령, 교정 등의 조치도 실시할 수 있다.

■ 집중교육센터

이 기관은 몇 개월의 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분리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수용한다. 교사들은 이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하게 된다. 다양한 활동(스포츠 활동, 봉사 활동 준비, 야외 활동 등)을 통해서 이들은 사회활동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 및 타인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집중적이며 개인화 된 보호를 통해 수용된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재사회화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임시 쉼터

이곳에서는 약 3~4개월의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수용한다. 임시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분리될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다. 방침을 세우고 평가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교육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

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직업인들로 구성된 팀이 조직한다. 모든 활동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외출은 금지되어, 외부에서 이동할 때에는 감독관이 함께 동행한다.

■ 폐쇄교육센터(소년원)

이 기관은 보호감찰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적 관리 하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한다. 이 청소년들은 매일 감독, 관리, 조사되며 교사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집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따르게 된다. 이 곳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사들이 담당한다. 만약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히 센터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구치될 위험이 있다.

④ 인력

청소년보호실은 약 7,753명의 공무원(그 중 4,000명은 교사)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양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 및 서비스는 담당실장의 권한 하에 다양한 전문인들이 모인 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비서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문인이 바로 청소년보호실의 특성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만들어 냈으며, 각 전문인들의 활동을 존중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보호실장

이들은 법적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행 청소년,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성년이 된 청소년의 수용, 조치 방침 및 보호를 담당하는 공적 부문의 기관 내 교육 및 행정을 담당한다. 이들은 시도 담당실장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 청소년보호실 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며, 교육 센터의 경영, 교육, 교육자문의 업무도 담당한다.

■ 에듀까뽀르 : 교육서비스 장

이들은 사법당국에서 위탁한 청소년들과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수용, 체류, 조사, 방침, 사회 및 직업 생활에의 편입 등)를 담당한다. 이들은 숙박 담당 서비스, 개방형 교육공간, 주간 센터, 임시 쉼터, 집중교육센터에서 이러한 교육 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법원산하교육부(SEAT)에 위임한 임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일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센터에서 교육 및 교육활동의 진행도 담당한다. 교육부 책임자들은 교사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

이들은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임무(사회 조사, 상담조치 참여, 법원산하교육업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일부 교육적 조치(공개적 관찰 및 공개 교육 지원)에 대한 조사를 책임지기도 한다.

■ 심리학자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속하여 전문적 방법을 사용하고 교육을 통해 얻은 자격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청소년보호실에 위탁된 청소년의 교육에 참여한다. 이들은 특히 특별조사나 상담에 참여한다.

■ 기술교사

이들은 청소년보호실 교육센터 내에서 교육이나 교육활동 진행 업무를 담당하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진로지도, 평가를 통한 직업교육과 사회동화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시도 담당실과 기초자치

단체 담당실에 속하여 업무 책임자, 직업교육과 사회동화의 문제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기술 자문의 역할도 한다.

■ 간호사

이들은 일상적인 치료를 넘어서 각 개인의 건강 자료와 관련된 임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보호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건강 교육 방침들을 조직하고 진행한다.

■ 교육관련 기능직

교사팀에 속하여 교육활동을 도우면서, 특히 기숙시설에서 야간 교육을 담당한다. 청소년과 성년이 지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진행을 돕는다.

■ 서비스인력

요리사, 세탁담당자 : 기숙시설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행정인력

- 보좌관, 비서직

보좌관은 전반적인 기능의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실의 시·도 담당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 및 서비스들의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들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행정 비서직은 행정적으로 적용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적인 법문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며 문서화, 회계,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보호실의 행정 비서직은 행정 및 재정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모든 행정인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특히 청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전적으로 교육적인 임무에도 참여한다.

■ 노동직

- 기술직

노동직과 특수요원들은 청소년보호실 내 기관 및 서비스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 운전기사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청소년보호실의 기관 및 서비스의 업무를 돕기도 한다.

2. 청소년 보호정책 방향(1999년 1월 24일자 법무부령)¹⁸⁾

1999년 1월 24일자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법무부령¹⁹⁾
(Circulaire d'orientation du 24 février 1999 relative à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NOR JUS F 99 500 35 C)

1990년대 초 이후 청소년 관련법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아동법원에
고발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여 1994년 31,000명에
서 1997년에는 49,500명의 청소년이 법원에 고발되었다. 1970년 초부터
줄어들었던 아동에 관한 사회 보호 조치를 받았던 청소년의 수가 생활 여
건이 불안정한 인구들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1993년까지는 연간 92,000에서 100,000명이었던 것이 1997년
에는 154,437명, 1998년에는 171,787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청소년 비
행도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 타인에 대한 폭력과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
에 대한 파괴행위가 상당히 늘어났다. 동시에 대도시 도심에서 일어나는
소요나 집단 폭행 사건들의 비중은 여전하다. 한편 지역 내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암거래에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소위 동화(intgration)
범죄의 증가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기반과 형태를 흔들어 버린 프랑스 사
회 변동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확대되는 실업문제, 상당수의 국민이 겪
고 있는 불안정한 생활 여건 등은 사회 동화의 구조에 대해 재고하도록 한

18) 출처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et d'études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2004).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 Une
administration, des missions, des services.

19) 1999년 1월 27일에 열린 치안위원회(conseil de securit intrieure)에서 정부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개발하며,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을 확대하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법무부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은 이러한 틀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다. 이제 모든 청소년들에게 경제활동에 편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특히 15, 16세에 학업을 중단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미래가 불투명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사회·경제적인 탈락 및 사회 계층 측면에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회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족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입법부가 양 부모의 동등한 권한 인정의 법칙을 채택함으로써 생겨난 부부간의 평등, 세대간의 관계, 이혼의 증가 및 동거 커플의 자녀 수 증가 등도 그 동안 일어난 큰 변화들이다. 이 모든 변화들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 관련 공공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업 세계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매개체들에 의한 오늘날의 사회 동화는 이전과 같이 확고하지 않아서 이제는 사회 동화도 상당 부분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큰 변화이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사회적 연대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

위와 같은 사회 동화와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은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행 청소년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사법 당국이 결정한 조치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각 서비스에 위탁된 일들이다.

청소년 관련 법안의 변화는 일부 보고서를 재작성 하게 하였다.

- 1998년 1월에 제출된 집중교육관리를 담당하는 단위에 대한 감독 보고서
- 1998년 4월에 제출된 국회의원 라제르주(Lazerges)와 발뒤크(Balduyck)가 주재한 청소년 범죄 처리 관련 부처간 업무 보고서
- 1998년 5월 8일에 채택된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 속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제 사회 위원회의 보고서

위의 보고서들은 모두 오늘날 정부와 지역공동체 간 업무협력이 필요한

행정적 상황 속에서 모든 관련 사회 관계자들의 활동을 결집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고 앞선 사회적 개입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리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들과 행동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생활 규칙을 훈련할 수 있는 처벌을 권장한다.

1998년 6월 8일에 정부는 청소년 범죄 관련 방침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모든 제시된 해결책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고 경찰과 사법기관 이외에도 모든 사회 요소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조직할 필요성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그리고 법원의 방침 결정 기능과 관련 청소년 보호 관련 공적 부문의 임무와, 비행 청소년 및 위험에 처한 유·청소년 보호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전문화, 지역화된 공공정책과 강한 연대에 대하여 재규정하고 있다.

위의 방침들은 1999년 1월 27일 치안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사회에서는 50여 개의 임시 쉼터를 설립하고, 집중교육센터 및 단기 교육도 확대하도록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청소년보호실에게 예전에 없었던 지원을 결정하였다. 2001년까지 1,000명의 교사를 임용하고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부문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앞으로 언급하게 될 조직의 재구성을 가져올 것이다. 오늘날 직원들의 일상 업무로 증명되는, 현 상황에 맞춘 교육 방식의 기관별 시행 능력은 과거보다 더욱 이러한 업무 수행을 좌우하게 된다.

본 부령의 목적은 청소년보호실의 방향을 결정하고 동시에 업무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기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부록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위탁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각 서비스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의 세가지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적 지원을 위한 교육 활동 방법을 새롭게 한다. 이러한 방향은 특히 판결에 의해 위탁된 비행 청소년이

나 위험에 처한 유·청소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과 관련이 된다. 공적 부문의 이러한 임무를 도우면서 판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인가받은 단체 부문은 단체 본래의 조직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비행 청소년을 보호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변화에 따르면 이는 가장 우선적인 업무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범위 안에서 교육적인 개입의 특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정 활동의 지역화를 추구한다. 청소년보호실은 오늘날 지방 분권화에 맞추어지며,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서비스 조직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구 혹은 단체 관계자들과의 유기적 관계는 아직도 발전되어야 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인 것은 지역적 차원에서 적절한 인적 자원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교육활동 방식의 혁신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에서 보호대상이 되었던 청소년에 관한 최초의 역학적 분석은 1998년 9월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고 심각하며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명 중 1명은 해체된 가정에 살고 있고, 10명 중 1명은 한 부모와 함께 산다. 평균 15세 반에 학업을 그만두고, 여학생들의 경우 자살 시도의 비율이 국민 평균의 비율보다 높다. 그리고 술, 담배, 약품, 마리화나를 일찍부터 소비한다. 또한 폭력을 당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위의 연구는 청소년에게 가족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수년 전부터 교육기관에 위탁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의 확인과 분석에 의해 분석 내용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으로 점철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증언하고 분

석했었다. 청소년보호실의 전문가들 또한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 발달의 증인들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사회 및 가족 환경에서 이러한 폭력 행동을 발견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였던 구조 속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접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 내며, 이는 항상 반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에서는 자신들이 조사한 국민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처하는 자신들의 활동 능력 및 대책의 적절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청소년의 새로운 사회, 경제, 가족적 환경을 통해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고,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교육적 개입을 생각하게 된다. 교육적 개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은 각기 다른 보호방식을 통해 지속되는 교육적 지원의 시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1)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식적 도구의 보유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도록 도와주며, 청소년보호실은 이를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교육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역학적 연구의 결과는 모든 교육 계획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령, 성별, 행동, 지역적 배경 및 법관에 의해 제소된 이유에 따라 대상별로 각기 다른 교육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식은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추어 축적되어야 한다.

교육 계획은 각각의 청소년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어려움을 알고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건강 상태, 학업이나 능력

수준, 마약 복용여부, 위험 행동, 폭력 피해 정도 등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제간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대상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기도 하다.

②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

각 서비스들은 조사 방식, 해당 지역 청소년의 생활 조건을 통해 중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 정책 수립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전문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보호실 내 서비스들의 전문적인 업무들은 오늘날 특히 도시 정책이라는 범주 안에서 유사한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 기능은 보통 안전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계약과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도 향상되어야 하는 점이 많이 있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어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도구나 단순히 지식을 공동 구축 방식 등을 고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와 도의회 서비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관찰 방식은 적절한 듯 보이며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적인 교육지원의 시행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이 직면한 새로운 어려움과, 나아가 사회적 편입과 동화를 돕는 환경의 잠재력의 감퇴는 교육 지원의 방식을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회 재편입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방법 중 교육이 보장하는 사회와의 중계 기능은 가족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에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각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이를 위해 어른들이 교육 진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수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① 부모들이 교육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 몇 개월 간 실시되어 곧 발표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관들이 교육 정책 초기에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중 이루어지는 업무방법과는 또 다르다. 일부 서비스는 과도한 업무를 지적하고, 또 다른 서비스에서는 수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교육활동을 통해 부모들이 순조롭게 교육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며,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 전반에 부모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에게 판결을 내릴 때, 부모의 권한을 행정기관에 양도하지 않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사법상으로는 가족에게 자문과 도움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형사상에서는 민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모든 소송단계에 출두해야 한다. 부모들은 1998년 7월 15일자 형사정책과 관련된 부령에서 규정한 교육적인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지르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에 대한 보호대상 청소년의 특징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지도할 때, 이혼한 가정의 경우 아버지나 친가 가족과의 관계 유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명 중 한명은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이며(국민평균 다섯명 중 한명),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의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청소년이나 외국 출신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사의 문화적 배경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동화를 도울 때 종종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 확대되는 경우 마다 관련된 교육적인 자원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공적 부문이나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많은 서비스들에 의해 부모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작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런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보호 미성년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강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비행 처리와 보호에 관한 보고서들은 청소년의 새로운 요구들과 그 해결책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과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실시되었던 해결책이기에 현대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들은 또한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의 증가를 계획하고 청소년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거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교정된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비판하고, 관련기관 및 심지어 동일 기관 내 서비스 간 충분한 정보교환의 부재도 문제 삼고 있다.

교육서비스에 의해 조사된 대부분의 청소년은 어른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 이들의 존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재편입하는 것은 우선 각 개인의 모든 것을 재결집하고 인격을 재구성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한다(동기부여 작업, 계획, 자기 평가, 타인 존중 등).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재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육전략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재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집중적인 차원의 교육지원은 청소년의 환경적 배경에 존재하는 연계를 동원하고 활동 매체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이행하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의 재정비를 전제로 한다.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것은 각기 다른 교육 기능에 따라 쇠퇴될 수도 있다.

개방공간의 교육활동에서 전문가의 개입은 청소년의 환경을 고려하고 공통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방법을 전제로 한다. 개인에게 맞추어진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의사교환의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는 관리서비스 담당자들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집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숙박시설에서의 전문가 개입은 기관 고유의 수단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기관과 협력기관의 자원에 도움을 받은 주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협력 기관은 일상생활 속의 교육지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매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른 요소들은 본 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③ 교육 협력기관의 발달

교육활동은 일부분 교육기관 외부의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약 500여 개의 기관들은 현재 법적 보호 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 및 직업 생활의 편입을 돕고 있다. 그 분야로는 스포츠, 학업, 건강, 문화, 직업 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교육적인 해결책을 다양화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확대하며 청소년들이 지역 기관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적 작업은 청소년들의 건강, 학업, 교육이나 고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 연구를 중요시해야 한다.

국민의 변화에 따라 다음 세가지 분야에서 개입이 우선적으로 여겨지는데, 즉 교육시설의 보급, 보건,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직업적 동화가 바로 그것이다.

■ 취학

교육서비스에서 관리되는 청소년들 상당부분은 사회동화를 위한 기초적

인 조건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조건은 사회역할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결과 사회에서 한 위치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때 이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과거보다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미래에 자신을 투영하려는 욕구마저도 좌절되고 있다.

학교는 기초적인 학습과 교육 시설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이며 종종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법칙, 기준, 실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육부의 책임 하에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1985년 8월 25일 자 교육부 및 사법부 부령을 적용으로 이 두 행정기관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되며 다양화되고 있다.

다음의 활동들은 앞으로 추구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 청소년보호실의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적합한 교육적인 해결책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해서 장학관들과 도 의회와 협력 하에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각 서비스들은 청소년들을 결집하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 및 교사와 연계하여 학습 조사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의 조정은 서비스의 교육적 목표 중에 속해야 한다. 학습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 일부는 등교도 하지 않고, 일부는 학교기관에 속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칙들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교육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우선은 이들에게 청소년보호실 직원의 실질적인 참여나 이들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한 보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 점에서 1999년 1월 27일 치안위원회에서는 2000년까지 250개의 연계학급(classes-relais)을 설치하였고, 특히 위험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부 산하 기숙사 설립을 결정했다.

■ 미성년 청소년의 건강

국제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과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의 상태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들, 특히 국립경제통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청소년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및 위험한 품행 및 행동(폭력 및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은 교육 활동 중 핵심을 이룬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은 다양하며, 스포츠, 보건 위생, 식품, 백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처럼 건강도 교육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보호실과 보건 당국의 협력 하에 실시된 조사는 다양한 보건 관계자 특히 유아-청소년 심리학과와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상황은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지역별 실장들은 사회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실장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관계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실장들이 시·도 보건 회의나 기초자치단체 정신 건강 위원회와 같은 실력 있는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건 관계자들의 조직망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조직망은 소아과 전문의 및 정기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일반 의사 협회 및 유-아동 정신과와의 학제관계를 아우르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 업무를 돕는 간호사 및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협력관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의 활동 프로그램은 1999년 제 1분기 말까지 발표될 것이다.

■ 취업

보호하는 청소년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서비스의 목표 중 하나이어야 한다. 시·도 담당실장들은 가장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시·도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정부-지방 계획 시행 계약을 위한 협상 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시·도 담당실장들은 특히 공동 권리 수호를 위한 기관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 활동이나 직업 세계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직업 세계 이행 지원은 다양한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역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협력기관들에는 기업연계조직(피고용인 지역 연계망의 설립, 경제적 요소에 의한 지역 동화 계획이나 동화를 위한 구조에 도움요청), 지역적 임무와 P.A.I.O.²⁰⁾, 지역고용사무소, 직업교육협회, TRACE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을 하는 기구들 등이 있다. 일부 협력기관의 활동은 유럽사회기금과 함께 공동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적 연대활동은 도시-생활-휴가 계획의 틀 안에서 협력을 위해 사무국의 공동 재정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관계는 개인 자원 봉사자들이나 협회들에 의한 후원활동과도 관계가 있다. 협회들은 교육 및 사회 동화 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기업 세계에 익숙하여 지도로 돕기도 한다. 그 예로는 1998년 9월에 서명된 협정으로 시작된 아지르-에비씨디(Agir-abcd), 세계 퇴직자 협회가 있다.

(3) 각 교육활동 중 지속되는 교육적 지원의 시행

① 개방공간에서의 교육 활동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각 서비스들은 몇 가지 중재 방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개인화 된 관계의 설립, 치료적 접근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 매체의 활용 등으로, 활동 매체에는 적절한 학습수준에 맞춘 재교육, 건강 관련 업무 및 문화 스포츠 활동 등

20) 주로 취약지역에 설치된 진료, 정보, 안내를 위한 상시 운영 기구

이 있다.

관리하는 청소년들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계획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지도하는 어른들과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룹 속에 관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많은 서비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시행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서비스들은 시·도·군 주간 수용 기관과의 관계 및 더 나아가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연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과 인력들(공공 서비스, 협회,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서비스들간에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리되는 청소년들의 재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공교육 서비스, 효율적인 보호와 조사를 위해서 보건 서비스, 그리고 직업세계의 동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단과 연계해야 한다.
- 업무의 지역화는 중재 배경에 대한 지식 습득, 협력기관과의 업무, 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 혹은 자원 봉사자들의 동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업무 방식에 대해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법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처음 개입하는 몇 달 동안은 매주 여러 번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들의 배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오늘날 공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기관들에서도 허술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다. 다른 기관들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들, 늘어나는 폭력 행동, 인력관리와 관련된 공적 부문만

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이다.

과거 기숙시설만 전적으로 이루어졌던 주간 활동은 다른 기관들에 위임되었으나, 이 기관들 중 대부분이 더 이상 담당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배치된 일부 청소년들은 다른 기관의 주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것도 대부분 최소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가능하지 않다. 배치 결정의 대상이 된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일상생활 속의 교육 지원 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배치된 청소년을 위한 활동계획의 시행

배치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공동권리를 위한 기관들에 속하는 것은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화에 대한 기대 속에, 배치된 청소년들은 일상 교육활동, 과외 활동, 직업 편입을 위한 활동, 혹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해야 하며 또한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서비스 계획들은 서비스 내부 및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및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간 활동의 내용의 조직을 규정하여야 한다.

지역 담당자들은 공적 부문에 있어서 협력기관이나 외부 유력 인사들처럼 주간 수용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서비스 계획 속에 명시 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 부문과 인가된 단체 부문간의 협력 활동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정부에 의한 젊은 인력 고용결정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을 위한 주간 활동(스포츠, 문화, 예술활동, 학업 지속 등)이 교육 담당자의 책임 하에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 임시 배치의 조직

청소년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특별한 개입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관찰과 평가 시간을 통해 수용된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과 필요한 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계획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워져야 한다.

공적 부문, 인가된 단체부문 및 아동의 사회적 지원 기구를 연합하는 수용 기관의 조직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실의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1998년 6월 8일 치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법당국과의 협의 하에 우선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정실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조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임시 배치하는 특별한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을 불문하고 임시 쉼터는 중장기적 쉼터와 분리될 수 없다. 즉 방향 결정을 위한 평가를 위해 청소년을 수용하고 아동 법원 산하 교육서비스들과 강한 연대를 가져야 하는 시군 조직이다.

■ 배치 방식의 다양화

청소년의 배치는 연령, 개인적 성장환경, 기숙기관에 보호하는 목적 등 아주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위급 상황에 따른 수용과 일정 기간의 보호, 위기 상황과 개인적인 사회 편입 계획과 같은 각기 다른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어린 청소년들과 직업활동이 없는 거의 성인이 된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해결책들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관할지역이나 혹은 대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은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과 단체 부문간 협력을 통한 일련의 적절한 대응책을 관련 사법당국과 정기적인 협의 하에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각 지역 담당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 쉼터 및 계획 수립에 의한 해결책 외에 기숙학교, 개인적 숙박, 보호가정에서의 배치 등의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위의 수용 방식들은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행동변화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숙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은 가능한 경우 다른 거주지로 옮기거나 보호가정에 거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계망은 일정 기간 청소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③ 주간 활동 담당 기구

주간 수용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사회 및 직업세계에의 편입을 위해 청소년들을 재결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은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른 서비스들이 개입할 수 있다. 청소년과 함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특히 사회화, 청소년의 관계설정 능력, 기초 능력 개발, 기초 지식의 획득 및 재교육, 직업적 실습 수행 및 공동 권리를 위한 기관에 참여와 같은 목적을 설정하면서 도울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항은 1994년 사회 및 직업세계에의 편입에 관한 국가 동수 기술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 혹은 스포츠 활동들은 더욱 전문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혹은 단체 활동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다양화된 교육을 개발하고, 기업이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계망과 같이 청소년들에 대해 원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적극적인 협력기구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과 가족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내 일련의 다양한 해결책을 이루는 활동 매체 전반은 가장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간 수용의 임무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수단들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공적 부문에서 주간센터는 개입정책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계획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주간 교육보호를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센터에서 개발한 활동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의 협력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된 수용기관은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으로 제공한다.

2) 비행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기의 비행은 최근 몇 년간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여 정부는 1998

년 6월 8일과 1999년 1월 27일에 열린 치안위원회를 통해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동원하는 대책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각 부처들의 동원은 청소년보호실에 비행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상 교육활동의 특성, 비행 청소년의 배치, 구금된 청소년에 대한 조사, 법원산하 교육서비스는 네 가지 발전 요소이다.

(1) 형사상 교육활동의 특성

1945년 2월 2일자 명령(ordonnance)은 청소년에 대해서 경감되고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는 형사상의 책임 원칙을 발표하고, 모든 처벌에서 청소년 교육과 교육적 차원의 연구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활동은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및 가정 배경에 따른 특수한 성장과정을 인식하고 또한 인정하는 동시에 범죄의 경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개인화별로 적용된 활동을 구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임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는 형사상 교육적인 활동이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실시되는 활동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이 제한되고 금지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교육적인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교육활동은 또한 법적으로 결정된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처벌과 교육이 상반되지 않으며 또한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경우 지원과정이 교육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반면, 형사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와 권한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 모든

242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자료집

교육과정은 가치와, 금지 사항 그리고 의무에 대한 부분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법적인 틀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 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계획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는 목표이며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적 개입의 이러한 특성은 형사상 선고된 조치 및 형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기관에 배치되고, 구금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교육 활동의 연장이라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① 1945년 2월 2일자 명령에 의거하여 선고된 조치 및 형의 시행

교정(rparation) 조치의 개발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적 이익은 분명하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부모는 이러한 조치 수행에 협조한다. 희생자와의 중재도 이루어 질 수 있다. 한편 교정 조치들은 그 집행을 위해 대중교통 회사, 숙박업체, 지역 공동체, 학교 등 다양한 중재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교정 조치는 지역 안전계약에 명기되고, 범죄 방지를 위한 읍, 면, 동회에서 논의될 대상이기도 하다.

시,군,구 담당실장들은 사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적부문과 인가받은 협력부문을 연계하며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업무는 교정 조치의 내용, 조치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추진력, 사회 환경과의 관계 재정립을 돕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최근에는 보호감찰과 같은 교정 조치에서 충분히 인정받은 교육적 접근은 법적 관리 조치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중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법적 조치가 결정한 의무사항과 교육내용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

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구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업무는 전문가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 감찰과 함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지속적인 청소년 교육과정의 구성

청소년 비행은 동일인물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재범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보고서들은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의 단절과 그 결과 생겨난 일관성 없는 활동의 위험을 강조한다. 교육과정 단절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생겨난다. 개방형 교육 담당 서비스가 사용하는 교육활동의 길잡이의 역할은 다른 보호 시설로의 이행이 실패의 나열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비행 청소년이 새로운 판결의 대상이 될 때마다 초기에 지명된 서비스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중심 서비스가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산하교육부와 개방공간의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각 단계에서 이러한 목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조사해야 하며, 법원들도 이러한 과정에 참여 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리 판결이 났을 경우, 중심 서비스에서는 지속적인 청소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실 범죄 행위의 경중이나 그 피해 상황이 가져온 청소년에 대한 단절이나 분리 판결은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명령 되어진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면서 일관성 있는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비행 청소년의 배치

비행 청소년의 배치 결정의 특징은 상당 부분 긴급한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야간에 심문 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의해서, 검사가 청소년의 법원 소환결정을 내린 뒤에는 아동법원 판사나 교육담당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임시 수용 장소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그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판사는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따라 청소년을 범죄위원회가 열린 지역이나 거주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배치되게 할 수 있다.

① 임시 쉼터

1999년 1월 27일에 열린 치안위원회에서 정부는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엄격하게 관리될 50개의 임시 쉼터를 설립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쉼터는 긴급 수용을 위해 건립한 10여 개의 전문 기숙시설에 지난 몇 년간 얻어진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우선적으로 1945년 2월 2일자 명령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판사가 배치한 청소년들을 기한 없이 수용하는 임무를 가지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게 하는 평가, 즉 심리, 학습, 직업, 가정환경, 건강과 관련된 평가를 약 3, 4개월에 걸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심단계에서 배치된 비행 청소년들은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는 쉼터 관리자들의 허가나 관리 없이 쉼터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인력 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쉼터는 위에서 규정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협력 기관에 속해야 한다. 임시 쉼터의 개입 행동 방식을 규정한 매뉴얼은 현재 작업 중이며 이는 다음 호에 배포될 것이다.

② 일정 기간 동안 단절을 통한 교육활동 계획의 시행

집중교육센터의 수는 내후년까지 약 100여 군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정책의 핵심 요소인 집중교육센터는 우선적으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다. 이 정책의 원칙은 우선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데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생활 리듬을 겪을 수 있도록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새로운 행동 방식들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감독관들이 청소년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계획은 아주 다양할 것인데, 새로운 보호 매뉴얼에 규정될 목표들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미 오늘날에도 다양한 계획을 선보이고 있다. 단절이 지리적인 분리를 의미할 때, 관련 청소년이 거주했던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수용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작업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돕고, 특히 청소년이 살던 곳이 수용 장소가 되는 경우, 수용지역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이다.

(3) 구금된 청소년의 조사

한 청소년이 유치될 경우, 청소년보호실의 서비스들은 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중심 서비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정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전의 청소년 교육지원을 담당했던 서비스가 선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실 서비스들은 우선은 기관적인 차원과 구금된 청소년들의 개인적 조사 차원의 두 차원에서 구금 위원회 및 형벌 적용 위원회에 참여한다. 후자의 경우는 형벌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경우로서, 청소년 수감 서비스 계획에 협력하여 기본 방침을 나타낸다. 유치 조건과 구금된 청소년 조사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각 개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 관리를 통해 이루어졌던 행동의 뒤를 잇게 될 서비스들, 즉 사회 편입기구, 교육 담당부, 사회 및 보건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이들의 출소를 준비하고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 업무들은 모든 부문에서 형사 행정 서비스들과 협의된다.

(4) 법원산하 교육서비스의 역할

법원산하 교육서비스는 특히 형사판결을 실시하는 경우 법원과 다른 모든 서비스들과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법원산하 교육서비스의 가장 우선적인 업무이다. 시·도 담당실장들은 청소년 수용 기관들 간의 연계를 담당한다. 이 기관들은 지역 내 수요가 많거나 시설자원이 부족한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간 구금영장의 시행을 위해 이용된다. 시·도차원의 기관은 특히 일-드-프랑스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담당 실장들은 구금을 대신할 적절한 해결책들을 판사에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내 이용 가능한 수용 인원을 매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행방식을 결정하고 특히 서비스간, 즉 법원산하 교육부와 다른 서비스간의 연계를 보장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의 업무이다.

그럼에도 각 교육서비스가 직면하는 문제들과 이들이 시행하는 각기 다른 조치들의 진행 상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군 별 정책들 안에서 각 서비스에 귀속된 임무들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의 재정의를 통해 법원산하 교육부를 위한 전체 정책들이 청소년보호실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 업무들은 이미 청소년보호실의 서비스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업무의 완성으로 이 주제에 관해 열리게 될 1999년 국가 동수 기술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다.

3) 청소년보호실 활동의 지역화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방침들은 지역적 배경에 따른 적절한 시행,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공적 부문과 단체 부문의 더욱 확대된 수단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1) 지역적 배경에 적합한 공공 정책의 시행

청소년보호실은 법무부장관의 권한 하에 있는 법무부 행정 서비스이다. 법무부장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비행 청소년, 위험에 처한 청소년,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 관한 판결 시행을 위한 방식의 구성을 담당한다. 이러한 판결은 지방 분권화 된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에 의해서 시행된다. 오늘날 이러한 개입은 특히 사회적 활동과 직업 교육 부문에서의 지방 분권화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인가 받은 단체부문의 확대된 참여와 정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행정 당국 및 지역 공동체와의 정기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다.

① 법원과의 연계 강화

아동 보호를 위한 프랑스 기관은 민형사상 동일한 법원 내 전문화 법칙과 법 차원과 교육적 차원간의 상호활동 위에 기초하고 있다. 법 차원과 교육적 차원은 그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며 서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판사와 선고된 조치를 시행하는 전문가 간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활동의 일관성과 기초자치단체 별 아동보호 기구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게다가 각 지역 담당자들은 1988년 1월 14일 자 법령의 적용에 따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부문과 인가 받은 단체부문의 활동의 조화를 이루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 평가하며, 공적 부문의 서비스 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사·도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검사실과 같은 사법 기관들과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1998년 7월 15일자 부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내 법원장 및 검사들, 청소년 담당 판사, 청소년 담당 검사, 아동 법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기초자치단체 계획 수립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 수행 및 이를 위한 작업모임의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일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면 사법 기구의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만 효율적인 업무 제안이 가능하다. 이는 임시적인 수용의 구성이나 청소년 구금 방지 및 적절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업무들은 각 지역 형무행정 책임자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단체 부문의 참여 촉구

인가받은 단체부문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판결을 수행한다.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위에서 규정한 방침들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 방식의 혁신을 위해 실시된 작업은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기관 및 서비스 책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전문적인 작업 변화를 따라가고 두 부문의 수단과 능력에 대한 연계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 단계에 적합한 협의 방식을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지역 책임자에게 달려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교정 조치를 수행하고 비행 청소년을 확대 수용하기 위해서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 인가 과정을 통해 규정된 방침에 대한 단체들의 개입 영역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정 속에 단체들의 활동 및 조직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③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관계 개발

청소년보호실의 외부 서비스는 도지사의 권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도지사가 마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업무 담당자와의 회의에는 지역 담당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도시 정책이나 정부와 지역간 계획의 계약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내 비행방지전략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방으로 분산된 서비스들이 도시 정책의 각기 다른 방침 속에 청소년보호실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처리를 위한 지역 정책을 규정하는 기구들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법원과 지방으로 분산된 서비스들의 활동을 연계시키는 사법-도시팀(cellules justice-ville)도 특별히 중요해 질 것이다.

반면 청소년보호실의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은 모든 협의 기관 내에 위임을 통한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지시들이 서비스장들에게 위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담당실장들은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위한 다른 서비스들과의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인가된 사람들이다.

④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협력 하에 기초자치단체 계획 수립

사회 활동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화에 관한 1986년 1월 6일 자 법에 명기된 기초자치단체 공동 계획을 위한 과정은 아직까지도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5% 미만 만이 이 계획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법률상 규정이 불충분하고, 몇 년에 걸친 계획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중재자들의 분석을 대조하여 공통된 제1의 문제를 찾아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면서 조치들을 합리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특히 위의 작업의 진행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획 없이 작업들은 특수 활동과 관련된 협정이나 의정서를 만들

게 될 수도 있다.

도의회 의장단 총회와 노동부 장관과 함께 약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진단 및 평가작업이 있었다. 이 작업은 비행의 특성, 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협력기관 간의 협조, 기초자치단체 계획 및 직업 추천으로 이어지는 비행 방지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3월 30일에 발표되어 일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2) 기초자치단체 정책 시행

교육활동의 일관된 정책의 수립은 바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보호실의 업무 계획에 관한 1990년 6월 22일자 부령에 따르면 공적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1990~1993년에 마련된 지표들은 재조사되어 현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새로운 지시사항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역 담당자들이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통해 위에서 규정한 공적 부문의 우선적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부문과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각 서비스들 간 업무 협조와 각 지역 내 적합한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능력을 교환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①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교육시행

지속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은 오늘날 청소년보호실에 위임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활동 방식의 변화는 보호 방법의 개인 맞춤화와 교육활동의 지역화에 근거하여 더욱 다양해지는 해결책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맞춤화와 지역화는 직업 세계에의 편입, 적절한 학습 수준에 맞춘 재교육, 문맹퇴치, 숙박, 건강 및 문화, 여가 스포츠 표현활동 등과 관련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혁신적인

교육 매체를 동원시킨다.

이러한 교육적 해결책과 그 시행 장소의 다양화 및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분리로 인해 분명한 교육계획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분할과 개입 당사자들이 분열될 위험이 만연하고 있다. 사실 지속적인 교육 책임을 위해 보충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해결책을 세우면서, 각기 다른 해결책들을 연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교육계획이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들은 협력과 협조를 통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해결책들을 연계망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활동간의 협력을 돕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지역화된 기구를 관리한다. 기초자치단체 계획 속에 존재하는 해결책들의 연관관계를 발견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기관 및 서비스를 연결시키면서 또한 역내 공적 부문 서비스 간 수단과 활동을 교환하는 것이 이들 책임 하에 있다. 각 청소년 마다 정해진 중심 서비스는 청소년 관리 과정의 각 단계마다 지속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교육적 진행방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직업 활동과 관련된 숙고 및 구상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한 심화의 시간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의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 기관과 같은 서비스들과 기구들의 인력을 동원하여 재원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이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들, 특히 단체 부문의 기관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립 교육연구센터는 확대되어야 하는 서비스간 협조를 위한 개입 능력을 개발했었다. 이 센터는 서비스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될 인력 센터를 개발할 임무를 맡았었다. 이는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직업 상황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직원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서비스간 업무의 지역화

서비스 간 개입을 위해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과 가족의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지역적 자원의 도움으로 구성된 교육적 보호의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해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개입하는 서비스만이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시행은 서비스 활동의 지역화와 관련 협력 단체와 서비스장과 교사 간의 개인화되고 지속적인 관계의 성립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의 행정적, 경제적 협력 순환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실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공적 부문의 서비스 활동 추진

■ 서비스 계획을 중심으로 한 참여 방식의 시행

몇 개의 지침이 기초자치단체 계획 및 기관 내 서비스 계획과 관련되어 이미 발표되었다.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 서비스들을 위한 계획 시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 계획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결정하고, 특히 법원관련 교육활동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변동 가능한 문서로서 매년 현실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각 직원이 기관 내 자신의 지위, 업무, 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방식의 도움을 얻어 전체 직원을 공통된 계획에 따라 동원하고 연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공적 부문의 모든 서비스들이 1999년 말까지 문서화되고, 각 서비스와 시·도 책임자에 의해 인가되며, 매년 현실에 맞추어 변동되고, 지방 법원에 제출되는 서비스 계획들을 개발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업무 수행 시, 사·도 담당실장을 위해 중앙 행정, 또한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을 위해 사·도 담당실장이 임무 계획서를 작성하는 원칙은 서비스장들에게도 일반화 되어야 한다.

■ 관리인단(collge de direction)의 구성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시행은 공적부문의 인력 전체와 관련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장들은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는 각 서비스의 특성을 뛰어 넘어 서비스 활동 장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 담당실장들은 서비스장들이 한 구조 속의 책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서비스장이 기초자치단체 계획 자체와 관계가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적 조직을 이용하여 서비스 간 연대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방식은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틀을 재구성하는 관리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교육서비스장의 업무에 대한 재규정은 고용 진출표(carte d'implantation des emplois)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관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비스의 규모는 부장의 영향력과 여러 업무를 관리하는 교육활동센터 내 서비스간 연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3) 지역차원에 적합한 인력 관리

① 인력 관리의 지방분권화 결정

위에서 언급한 방침들은 그 시행을 위해서 지역 책임자들이 특히 필요한 자원을 역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된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지방분권화는 이미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 졌다.

- 서비스 기능을 위한 자금 대부분에 대한 예산 관리로, 이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위한 서비스 예산과 개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가받은 단체 부문의 설립, 비용 결정 인가 과정.

이 분야에서는 청소년보호실 시·도 담당실과 기초자치단체 담당실 간의 능력의 배분은 각 도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 간 설비의 차이, 또 지역 간 관례의 차이로 설명된다. 업무의 실제적인 배분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입의 공동 범위에 대한 재정의와 관계될 것이다.

이후에는 기구 및 서비스의 교육적, 행정적, 재정적 관리의 업무는 시·도 담당자에게 위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청소년 보호의 조건들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임무는 각 시·도에서 더욱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모든 지침들의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인력 관리를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보호실의 중앙정부 및 지역의 책임자들을 연계한 업무팀은 능력 차원(중앙정부,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행동 배분의 법칙을 정한 조치 마련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제안을 만들도록 조직되었다. 또한 고용 방식의 향상 및 특히 일부 공채의 지방에의 위임에 대해서는 더욱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들은 1999년 1/4분기 말까지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의 지침은 상당히 많은 수의 기관과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청소년보호실의 조직처럼 지역화된 조직 속에서 핵심을 이루게 된다. 위의 기관과 서비스들 중 상당 부분은 인적자원(다기능 교육활동센터 요소, 부록, 법원산하 소교육부 등등)의 차원에서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 지방분권화는 현존하는 자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할 것이다.

자원의 상호부조는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 간에서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작업은 서비스를 조직하고 각 지역 차원에서 재배치와 관련된 1988년 1월 14일 법령의 개혁을 야기할 것이다.

② 관리 기능의 강화

앞서 이루어진 지방분권화 방식에 미루어 보아 관리 기능은 또한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1992년과 1998년에 관리 당국에서는 지위 및 고용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개혁이 있었다. 청소년보호실의 서비스장들의 업무를 역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책임지는 차장 산하에 이동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조화하게 될 것이다. 지역 담당자와 관련된 개혁은 정부 행정부처 내 이러한 행정업무의 지위를 강화한다. 서비스장 관련 개혁은 기관의 책임자 조직 제1단계를 구조화 하도록 하였다.

외부 인사들에 대한 개방은 내부 승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동등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인력 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장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지역 책임자들을 위한 과정도 마련될 것이다.

지역 관리실의 경우 각 지역마다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 업무 한정 및 관리팀에서 필요로 하는 보강요소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활동 진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장의 업무는 특수 업무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술 및 교육활동 진행업무와 청소년보호실 행정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의 시행은 지역 정책과 그 수행의 구성요소가 된다. 동수로 구성된 기구들은 정부,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으로 법문에 의해 규정된다. 교육활동의 관리 및 서비스 조직과 관련된 문제 처리를 위해서 이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또한 매년 청소년보호실 시·도 담당자들은 이듬해의 기초자치단체 계획과 그 해 실시된 업무의 평가를 위한 직원 총회에 참여해야 한다.

본 부령에서 정한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위험에 처하거나 비행한 아동의 사법적 보호의 임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동원

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방침들은 교육적인 개입을 위한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동원과 구성의 두 과정은 지역 담당자의 책임 하에 판사와 인가된 단체 부분의 도움을 얻어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동 방식에 따라 이 부령에서 설명했던 세 개의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업무 실시를 의미한다. 사실 이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가들에게는 만남을 주선하고, 업무 방법과 도구를 교환하며, 이를 심화하여 결국 상호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주며,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부터 청소년보호실의 공적 부문에서는 예외적 수단의 도움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이 방침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현 법령 수행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실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실장

실비 페르드리올(Sylvie PERDRIOLLE)

3. 청소년 보호담당자(educateurs)의 신분 규정(2004년 1월 5일자 개정안)²¹⁾

1992년 3월 27일자 92-344호 법령

청소년 보호담당자(Educateurs)의 특별 신분 규정

1994년 4월 15일 94-313호 법령과 2004년 1월 5일 2004-19호 법령에 의해 개정됨.

민법 375~375-8조, 형법, 비행청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자 명령 및 공무원 의무와 권리에 관한 1983년 7월 6일자 83-634호 개정법과 정부 공적 기능에 관한 자격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자 개정법 84-16호 전체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과 함께(재정 부문) 국무 회의에서 인정된 다음의 법령을 공포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위에서 언급한 1984년 1월 11일자 법 제29조에서 제시한 범주 B에 분류된 청소년보호실의 교사집단을 창설한다. 본 교사집단은 7등급으로 나뉘는 제1 직급 교사와 연수 등급 및 10등급으로 나뉘는 제2 직급 교사의 두 직급을 포함한다. 제1 직급 교사의 인원은 교사집단 전체 인원의 25%로 정해져 있다.

제 2 조 청소년보호실의 교사들은 청소년과 성년이 지난 청소년들에 대

21) 출처 : Centre national de formation et d'études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2004).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 Une administration, des missions, des services.)

하여 법원에서 언도한 민·형사상의 판결을 준비하고 시행한다.

교사들은 사법적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행 청소년, 위험에 빠진 청소년과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조사, 관찰 및 사회동화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과 성년이 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구성하고 시행하는데도 참여한다. 이들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안내하고 수용하는 것을 담당한다.

한편 교사들은 교육 업무 및 교육 활동 진행을 담당한다. 배치된 청소년 보호실 내 기관과 서비스 책임자들의 권한 하에 교사들은 법무부의 모든 법원, 조직, 기구 및 서비스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는 공공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용

제 3 조 청소년보호실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임용된다.

I. 외부 공채에 의해서 임용된다. 응시자 자격은 고사 실행연도 12월 31일 현재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혹은 다음의 학위 소지자

- ①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사 학위나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동 부령에 의해 작성된 목록에 수록된 제Ⅲ 단계와 동등한 학위의 소지자.
- ② 혹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 공간에 관한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부여한 학위 소지자. 본 법령의 적용을 위해 위의 ①에서 언급한 학위와 동일시되는 학위는 공무원 공채자격을 위해 유럽공동체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 공간에 관한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부여된 학위와 동일시되는 학위 관련 1994년 8월 30일자 법령

94-741호에서 언급된 위원회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2° 혹은 본 조 1°의 ①에서 언급한 학위와 동등한 직업 경험이 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경우. 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동 부령에 의해 결정된다. 직업 활동은 교육, 사회, 스포츠 및 문화 분야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일반 고등학교나 전문 고등학교 졸업 수준과 동등한 학위를 소유한 것이 인정되는 응시자의 경우 직업 경험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에는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고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제한 연령에 이른 외부 공채 응시자는 이듬해 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II. 경력자 외부 공채에 의해 임용된다. 응시자 자격은 고사 시행연도 12월 31일 현재 45세 이하이어야 하며,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사 학위나 유럽 연합 회원국가나 유럽 경제 공간에 관한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부여한 학위 소지자. 본 법령의 적용을 위해 이와 동일시되는 학위는 위에서 언급한 1994년 8월 30일자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경력자 외부 공채는 시험관과의 면접을 포함한다. 선발고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제한 연령에 이른 경력자의 외부 공채 응시자는 이듬해 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III. 정부나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의 공공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공채에 의해 고용된다. 이들은 고사 시행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한 실제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IV. 위의 선발고사 접수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중 최소 5년간

1984년 1월 11일자 법 제19조 3°에 명기된 여러 활동의 수행이 인정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채에 의해 임용된다.

이 활동은 교육, 사회 스포츠 및 문화 분야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 혹은 여러 활동이 동시에 수행되고 그 기한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활동만이 인정된다.

V. 동수 행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작성된 능력표에 등록함으로써 임용된다. 그 인원은 본 조의 I, II, III, IV 항과 뒤의 제22조에 따라 발표되는 임명 및 파견 인원의 1/12로 제한된다. 이 경우 최소 10년 공직에 있었으며, 최소 5년간 청소년보호실의 교육이나 기술 분야 범주 C에 해당하는 기관에 속하였던 사법적 보호실의 공무원들이 능력표에 등록될 수 있다.

제 4 조 1994년 4월 15일 94-313호 법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제 5 조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부령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신적 능력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교사집단에 임용될 수 있다.

제 6 조 경력자 외부 공채로 선발되는 인원은 외부 공채로 임용되는 전체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내부 공채를 통해 임용되는 인원은 내·외부 공채로 선발되는 총 인원의 30% 미만이거나 50%를 넘을 수 없다.

본 법령 제3조 IV항에서 언급한 공채에 의해 선정된 인원은 앞의 3가지 방식의 공채를 통해 선정된 총 인원의 25%를 넘을 수 없다. 각 공채에 부여된 인원이 해당범주의 응시자 임명을 통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그 인원은 다른 공채의 응시자들에게 할당될 수 있다.

제 7 조 각 공채의 일반적인 조직 규칙과 시험의 성격 및 프로그램은 법무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동 부령에 의해 정해진다. 법무장관은 시험의 조직조건과 시험관의 구성을 결정한다.

제 8 조 공채로 임용된 자들과 능력표에 의해 임용된 자들은 연수 교사로 임명되고 교육을 위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 기간은 외부 공채와

내부 공채에 의해 임용된 연수생은 2년, 다른 방식으로 임용된 연수생은 1년이다. 2년의 연수기간을 채운 연수생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법무부장관의 부령은 교육 인가를 위한 조직, 프로그램, 조건을 규정하고 교육이 인가된 연수생들의 구분 및 임명 방식을 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교육기간 초기에 연수 교사들은 임용 후 최소 5년 동안 근무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에 서명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직이 본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법무부장관의 부령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남은 의무 근무기간을 고려한 연수기간 동안의 총 급여나 일부를 정부에 환불해야 한다.

제 11 조 2년의 연수기간을 마친 연수생들은 연수 등급의 1년차와 제2직급 교사의 1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전에 정부, 지역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공공기관의 공무원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졌던 연수 교사는 본래 직업이나 직업 범위의 기관에 배치된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이전 근무했던 기준에 따라 받게 될 임금이나 연수 교사의 임금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전에 정부, 지역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의 공공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연수생은 이전 근무 상황과 일치하는 호봉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은 이들이 제14, 15, 16조의 규정에 맞추어 구분되었을 경우 받게 될 임금 이상을 넘을 수는 없다.

제 12 조 교육이 끝나면, 2년간 교육을 마치고 인가 받은 연수 교사들과 1년간 연수를 마치고 합격점을 얻은 연수 교사들은 동수 행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임명된다.

연수기간 후 임명되지 않은 연수생들에게는 최고 1년간 보충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보충연수가 허용되지 않았거나 보충연수를 마치고도 합격점을 얻지 못한 연수생들은 해고되거나 이전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자신의 이전 위치로 돌아간다.

제 13 조 임명시 연수생들은 뒤의 제14~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직급 교사 2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본 법령 제3조 IV항에 명기된 공채방식에 의해 임용된 연수생은 연수생으로서 임용되기 전 제3조 IV항에서 규정한 활동 수행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추가 근속연수를 받는다. 그러나 추가 근속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 14 조 이전에 정부,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의 공공 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범주 C 혹은 D에 속하는 직업이나 직업 범위에 속했던 연수생은 제2 직급 교사로 임명된다. 또한 제18조에서 각 등급 승진을 위해 규정한 평균 근무 기간에 기초하여 본래 직급 중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등급으로 임명된다. 최초 직급에서의 근속연수는 범주 D의 직급에 대해서는 최고 29년, 범주 C의 직급에 대해서는 최고 32년이라는 한정하에 이 등급에서 얻어진 근속연수만큼 높아진 당사자의 등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대응된다. 이는 범주 C, D에 속한 공무원 경력 구조 관련 1970년 1월 27일자 법령 70-79호의 제2, 3조에 따라 정해진 평균 기간에 기초한다. 이러한 근속연수는 범주 D에 구분된 직급에 대해서는 12분의 3, 범주 C에 구분된 직급에 대해서는 처음 12년간은 12분의 8, 그 후에는 12분의 7의 비율로 유지된다.본 법령에 의해 관리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퇴직을 했었을 경우 제18조에 의해 규정된 진급을 위한 평균 기간을 고려한 경우보다 더 나은 상황을 당사자에게 허락할 수는 없다.

제 15 조 위 제14조에서 언급한 공무원들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들은 이전직업이나 직업 범위에서 받았던 호봉과 동일하거나 바로 위 호봉을 가진 등급의 제2계급 교사로 임명된다. 등급 상승을 위해 제18조에서 요구하는 평균 근속연수의 한도 내에서, 임명으로 인한 호봉 인상이 이전 직업에서 등급 상승이 있었을 경우의 상승정도 보다 낮을 경우, 이들은 이전 직급이나 계급에서 얻어진 등급의 근속연수를 보존할 수 있다. 이전 직급이나 계급에서 최후 등급에 이르렀던 응시자는 임명으로 인한 호봉인상이 등급 상승을 통한 호봉인상보다 낮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제한 속에 등급 근속연수를 보존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경우, 본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에 임명되기 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거나 이전

근무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기관에 임명이 되었을 경우의 상황보다 당사자들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다.

제 16 조 이전에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연수생들은 제18조에서 각 등급 상승을 위한 평균기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한 근속 연수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된 등급으로 제2 직급 교사에 임명된다. 범주 B에 속한 직업에서 수행한 업무가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의 비율로 지속되거나, 범주 C나 D에 속한 직업에서 수행된 업무가 전체 기간 중 절반의 비율로 지속되는 조건이다. 위에서 설명한 규정들의 적용은 당사자들은 이전 직업에서 얻었던 호봉과 동일하거나 바로 위의 호봉을 포함한 등급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없다. 이들은 제 15조의 2,3번째 줄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른 등급 근속연수를 보존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법령 제14~16조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이전 직급에서 얻었던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가진 등급에 속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개인적으로 청소년보호실의 교사집단에서 최소한 동일한 호봉을 얻게 되는 날까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호봉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제 3 장 진 급

제 18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직급의 각 등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직급	등급	기간	
		평균	
제 1 직급 교사	7등급	—	
	6등급	4년	
	5등급	3년	
	4등급	3년	
	3등급	3년	
	2등급	2년	
	1등급	2년	
제 2 직급 교사	10등급	—	—
	9등급	4년	3년
	8등급	3년	2년 3개월
	7등급	3년	2년 3개월
	6등급	3년	2년 3개월
	5등급	2년	1년 6개월
	4등급	2년	1년 6개월
	3등급	2년	1년 6개월
	2등급	2년	1년 6개월
	1등급	1년	1년
	연수생	1년	1년

제 19 조 진급표의 기록에 따라 5등급에 이른 제2 직급 교사들은 청소
년보호실 교사의 자격으로서 업무를 최소 3개월 수행한 뒤 제1 계급의 교
사로 진급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장에 맞추어진 진급은 이전 직급에서 보유했던 호봉과 같
거나 바로 위 호봉을 가진 새로운 직급의 등급으로 발표된다. 바로 위 등
급으로의 진급을 위해 요구되는 평균 기간의 한도 내에서 진급으로 인한
이전 직급의 등급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호봉과 동일하거나 바로 위 호봉
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이전 등급에서 얻어진 근속연수를 보
존한다. 자신의 직급의 마지막 등급에 도달하여 진급한 제2계급 교사들이
임명으로 인해 마지막 등급으로 진급했을 때의 인상분보다 낮은 호봉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제한 속에서 등급의 근속연수를 보존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 규정

제 21 조 청소년보호실의 교사들은 사전 면접 후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획득된 직업적 경험을 명기하며, 더 수준 높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 부령이 정하는 형식에 따른 이러한 평가는 수치화된 점수로 표기되지 않는다.

제 22 조 정부,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속한 공공 기관들의 공무원들만 청소년보호실의 교사집단으로 파견될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범주로 구분된 직업이나 직업범위에 속하여 교육적 사회적 성격을 가진 활동에 최소 5년간 근무한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동일한 직급과 이전 직업이나 직업 범위에서 얻어진 호봉과 동일하거나 바로 한 단계 위 호봉을 포함하는 등급에 구분된다. 새로운 직급의 상위 등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기간에 한계 안에서 이전 직업에서 얻어진 등급의 근속연수를 보존한다. 이는 이 등급이 이전 직업의 최고 등급이었다면, 이전 직업이나 직업 범위에서 등급 상승이 가져오게 될 이익이나 위의 단계에 임명되어 얻어진 이익보다 적은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들은 현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직급과 등급으로의 진급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23 조 최소 2년간 청소년보호실의 교사집단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청소년보호실로의 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임명 시 해당되었던 직급과 등급으로 이직하며 이들이 이전에 축적한 근속연수를 보존할 수 있다.

제 5 장 임시 규정

제 24 조 임시적으로 1994년 7월 31일까지, 제1 직급 교사의 인원은 위의 제1조에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92년 8월 1일부터는 8%, 1993년 8월 1일부터는 15%에 해당한다.

제 25 조 교사집단의 초기 구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실 외부 서비스의 교육인원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하여 1956년 4월 23일자 법령 56-398호에 의해 관리되는 교사들은 1991년 8월 1일자로 위 제1조에서 언급한 제2직급 교사에 속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재 구분된다.

이전 상황	새로운 상황	근속 연수
10등급	10등급	근속 연수 획득
9등급	9등급	근속 연수 획득
8등급	8등급	근속 연수 획득
7등급	7등급	근속 연수 획득
6등급	6등급	근속 연수 획득
5등급	6등급	근속 연수 없음
4등급	5등급	근속 연수 절반 획득
3등급	4등급	근속 연수 절반 획득
2등급	3등급	근속 연수 절반 획득
1등급	2등급	근속 연수 절반 획득
특수 교육 학위를	1등급	근속 연수 획득
보유한 연수 교사		
2년 차 연수 교사	1등급	근속 연수 획득
1년 차 연수 교사	연수 등급	근속 연수 획득

초기 기관에서 비 정규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는 현 법령이 관리하는 교사집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제 26 조 현 법령이 개입하기 전 청소년보호실 교사 임용을 위한 공채에 응시하였던 응시자들 중 연수를 위한 임명은 현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제 27 조 교육인력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동수 행정 위원회는 이전 기관의 동수 행정 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청소년보호실의 교사집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 28 조 민간 및 군인 퇴직연금법 제16조를 적용하면서 동일한 법 제 15조에서 규정된 새로운 호봉을 정하는 것은 위의 제25조의 활동 인력을 위해 정해진 것과 대응되게 될 것이다.

현 법령의 개입 전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권리 소유자들의 연금은 1991년 8월 1일 이후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재정비 될 것이다.

제 29 조 교육인력의 특별 신분 규정에 대한 1956년 4월 23일자 법령 56-398호와 이를 개정한 법령은 1991년 8월 1일 이후 청소년보호실 외부 서비스 교사들에 관한 범위 내에서 폐기된다.

제 30 조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예산기획처장은 각각 관련 분야에 관하여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실리게 될 현 법령의 시행을 위해 책임이 있다.

1992년 3월 27일 파리

수상 EDITH CRESSON,

법무장관 HENRI NALLET

경제예산처 장관 PIERRE BEREGOVOY

정무 및 행정현대화 장관 JEAN-PIERRE SOISSON

예산처장관 MICHEL CHARASSE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창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해영
-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홍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혜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홍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인 쇄 2005년 12월 5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 대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학술센터)

ISBN 89-7816-563-X(93330)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장해영(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머 리 말

이 책은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 및 정책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코넥션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이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넥션즈센터, 개인상담가(PA), 코넥션즈카드, 코넥션즈 디렉트로 표현되는 상담전화 및 웹망, 코넥션즈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PA의 역할, 민간부문과의 협약, 블랙컨츄리의 구체적 운영사례, PA의 인증 및 APIR(육구사정, 계획, 실행, 검토)과정 등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독일은 2003년 4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 주 정부간에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연방과 주 차원의 통일된 미디어 감독체계가 마련되게 되었다. 독일의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한국의 과편화되어 있는 청소년보호관련 미디어 감독체계에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이 강화되어야만 청소년정책의 발전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아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위기청소년 보호정책은 법무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에 소개하는 사례들은 프랑스의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보호행정조직, 보호시설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프랑스의 위기청소년 보호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I. 영국	3
1. 코넥션즈의 개요	3
2. 버밍햄·솔리홀 코넥션즈센터 조직도	19
3. PA의 역할	20
4. 민간부문과의 협약	89
5. 블랙컨츄리 사례	96
 II. 독일	 133
1. 독일 청소년보호법	133
2.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164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	194
 III. 프랑스	 209
1. 프랑스 법무부 청소년 보호실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보호 조직과 기능	209
2. 청소년 보호정책 방향	226
3. 청소년 보호담당자의 신분 규정	258

표 목차

<표 1> 코넥션즈 SMT 핵심사안별 선도과제	126
<표 2> 취약한 상태의 청소년	129

그림 목차

<그림 1> 버밍햄·솔리홀 코넥션즈센터 조직도	19
<그림 2>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역할의 주요 요소	29
<그림 3>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의 기술	30
<그림 4> 코넥션즈 Personal Adviser 개입 수준	33
<그림 5 > APIR 기록관리표	72
<그림 6 > 의뢰접수 흐름도	95
<그림 7 > 블랙컨트리 코넥션즈 공개포럼과정	104
<그림 8 > 블랙컨츄리 코넥션즈 조직구조	120
<그림 9 > 핵심사안별 책임분야에 따라 표시된 코넥션즈 고위관리자팀(SMT)	125